

통계청 용역 연구보고서

#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화지역 설정 연구

A Study on the Delimitation of Urbanized Areas in Korea  
fo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Local-level Data

2004. 12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통 계 청**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귀 청과 계약 체결하여 수행한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  
화지역 설정」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12. 20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규 방

## 연구진

---

연구책임 김광익 연구위원

연구진 최병남 연구위원  
변필성 책임연구원  
주혜영 연구위원

---

## 연구자문

윤주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소진광 경원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채 성결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홍상기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김대영 인하공업전문대학 지형정보학과 교수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금희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재학 통계청 통계연구과 사무관

최봉호 통계청 통계연구과 과장  
박원환 통계청 통계연구과 과장직대  
박승근 통계청 통계연구과

## <제 목 차 례>

<b>제1장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	2
4. 연구의 방법 .....	2
<b>제2장 도시의 개념과 우리나라 도시 현황</b> .....	<b>5</b>
1. 도시의 개념 .....	5
1) 도시의 일반적 개념 .....	5
2)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의 구분 .....	6
3) 우리나라의 도시정의 및 기준 .....	7
4) 세계 각국의 도시정의 및 기준 .....	8
2. 우리나라 도시현황 .....	11
1)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시현황 .....	11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현황 ..	16
3) 인공위성자료에 의한 시가지 분포 현황 .....	20
<b>제3장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b> .....	<b>23</b>
1. 영국의 도시화지역 .....	23
1) 잉글랜드·웨일즈의 Urban Settlement .....	23
2) 스코틀랜드의 Settlements와 Localities .....	30
2. 미국의 Urbanized Area와 Urban Cluster .....	32
1) 설정목적 및 정의 .....	32
2) 도시지역 설정방법 .....	32
3) 설정결과 .....	40
3. 일본의 인구집중지구 .....	42
1) 설정배경 및 목적 .....	42

2) 기본개념 .....	42
3) 설정기준 .....	43
4) 설정결과 .....	44
5) 인구집중지구 보고서의 출간 .....	47
4.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	48
1) 설정목적 .....	48
2) 원칙적인 설정기준 .....	48
3) 보완적인 주관적 설정기준 .....	50
5. 소결 및 시사점 .....	51
1) 요약 .....	51
2) 시사점 .....	51
<b>제4장 도시화지역 설정기준 및 현황 검토 .....</b>	<b>55</b>
1.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 검토 .....	55
1) 도시화지역 설정의 최소공간단위 검토 .....	55
2) 도시화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검토 .....	55
3) 도시화지역 구획방법의 검토 .....	57
4) 도시화지역 최소 인구규모의 검토 .....	57
5) 설정 검토 요약 .....	58
2. 사례지역의 선정 및 일반현황 검토 .....	59
1) 사례지역의 선정 및 일반현황 검토 .....	59
2) 사례지역별 인구변화 .....	59
3) 사례지역별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현황 검토 .....	61
3.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현황 검토 .....	74
1)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지표의 기준 검토 .....	74
2)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지표의 분포패턴 검토 .....	76
4.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의 종합적 현황 검토 .....	93
1) 검토기준 .....	93
2) 검토결과 .....	93

<b>제5장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및 최종안 검토</b> .....	<b>101</b>
1.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검토 .....	101
1) 도시화지역 설정대안의 기준 검토 .....	101
2)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	102
2. 도시화지역 설정 최종안 검토 .....	109
1) 도시화지역 설정 최종안의 기준 검토 .....	109
2) 사례지역별 도시화지역 최종안 검토 .....	112
<b>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b> .....	<b>125</b>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125
1) 결론 .....	125
2) 연구의 한계 .....	127
2. 정책적 제언 .....	127
1) 도시화지역 설정의 활용방안 제고 .....	127
2) 기초단위구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	129
<b>참고문헌</b> .....	<b>131</b>
<b>부록 1 광주광역시 동별 도시화지역 최종안</b> .....	<b>133</b>
<b>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화지역</b> .....	<b>136</b>
<b>부록 3 영국 남동지역의 도시화지역</b> .....	<b>141</b>
<b>부록 4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 현황</b> .....	<b>155</b>

## <표 차례>

<표 1> 세계 각국의 도시정의 .....	8
<표 2> 전국 시지역의 유형과 인구규모 현황 .....	12
<표 3> 전국 시지역의 인구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	13
<표 4> 전국 읍지역의 유형과 인구규모 현황 .....	14
<표 5> 전국 읍지역의 인구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	15
<표 6> 전국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 .....	16
<표 7> 광주·전남지역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 .....	17
<표 8> 광주대도시권 도시계획구역 현황 .....	18
<표 9> 수도권 시·군에서의 시가지 비율 변화 .....	21
<표 10>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인구규모별 도시취락 .....	27
<표 11> 스코틀랜드의 인구규모별 취락(Settlements) .....	31
<표 12> 일본의 인구집중지구 현황 .....	44
<표 13> 일본의 동경도 인구집중지구 현황 .....	46
<표 14> 도시화지역 설정의 해외사례 비교 .....	52
<표 15> 인구 및 토지이용 지표 검토 및 선정 .....	56
<표 16> 지표 검토 내용 .....	58
<표 17> 광주광역시 인구변화 .....	60
<표 18> 순천시 인구변화 .....	60
<표 19> 영암군 인구변화 .....	61
<표 20> 기초단위구의 토지특성분류 .....	62
<표 21>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	63
<표 22>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	63
<표 23>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	66
<표 24>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	67
<표 25>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	70
<표 26>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	71
<표 27> 도시화특성 지표의 검토기준 .....	75
<표 28>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	76
<표 29>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	77
<표 30>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	77
<표 31>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	81

<표 32>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	82
<표 33>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	83
<표 34>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	87
<표 35>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	88
<표 36>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	89
<표 37>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에 의한 기초단위구 검토 현황 .....	93
<표 38> 광주광역시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	95
<표 39>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	95
<표 40> 순천시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	97
<표 41> 순천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	97
<표 42> 영암군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에 의한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	98
<표 43> 영암군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	98
<표 44>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검토 .....	101
<표 45>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광주광역시 .....	103
<표 46>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순천시 .....	105
<표 47>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영암군 .....	107
<표 48>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안의 일반적 기준 .....	110
<표 49>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안의 기타 검토사항 .....	112
<표 50>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4
<표 5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4
<표 52>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4
<표 53>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7
<표 5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7
<표 55> 광주광역시 연합도시화지역 설정안 .....	120
<표 56> 순천시 도시화지역 최종안 .....	121
<표 57> 영암군 도시화지역 설정안 .....	123
<표 58> 미국 도시화지역 설정과 관련부처의 활용사례 .....	128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흐름도 .....	4
<그림 2>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의 비교 .....	6
<그림 3> 광주대도시권 도시계획구역 현황도 .....	19
<그림 4> 수도권 시가지의 분포 변화 .....	22
<그림 5> 도시용토지와 도시취락 구분 .....	25
<그림 6>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 도시취락 .....	26
<그림 7>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 도시취락과 코벤트리(Coventry) 도시취락 .....	26
<그림 8> 인구 1,000명 이상의 도시취락 .....	28
<그림 9> 중도시지역 도시취락 설정결과 예시 .....	29
<그림 10> 소도시지역 도시취락 설정결과 예시 .....	29
<그림 11> 초기핵심지역(1) .....	34
<그림 12> 초기핵심지역(2) .....	34
<그림 13> 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1) .....	37
<그림 14> 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2) .....	40
<그림 15> 샌디에이고 지역의 도시화지역과 도시클러스터 .....	41
<그림 16> Iowa주 Ames 도시클러스터 .....	41
<그림 17> 일본 동경도 인구집중지구별 설정사례 .....	45
<그림 18> 일본 동경도 팔왕자시 인구집중지구 설정사례 .....	45
<그림 19> 일본의 金澤市 인구집중지구 확장사례 .....	47
<그림 20> 광주광역시 용도지역 현황 .....	64
<그림 21> 광주광역시 토지특성 현황 .....	65
<그림 22> 순천시 용도지역 현황 .....	68
<그림 23> 순천시 토지특성 현황 .....	69
<그림 24> 영암군의 용도지역 현황 .....	72
<그림 25> 영암군의 토지특성 현황 .....	73
<그림 26> 광주광역시 인구밀도 분포패턴 .....	78
<그림 27> 광주광역시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	79
<그림 2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80
<그림 29> 순천시 인구밀도 분포패턴 .....	84
<그림 30> 순천시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	85

---

<그림 31> 순천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86
<그림 32> 영암군 인구밀도 분포패턴 .....	90
<그림 33> 영암군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	91
<그림 34> 영암군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92
<그림 35> 광주광역시 현황분석도 .....	94
<그림 36> 순천시 현황분석도 .....	96
<그림 37> 영암군 현황분석도 .....	99
<그림 38> 광주광역시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	104
<그림 39> 순천시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	106
<그림 40> 영암군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	108
<그림 41>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3
<그림 42>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5
<그림 43>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6
<그림 44>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8
<그림 4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	119
<그림 46> 순천시 도시화지역 최종안 .....	122
<그림 47> 영암군 도시화지역 최종안 .....	124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都市地域<sup>1)</sup>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어 통계상, 그리고 정부정책상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市部地域(또는 2만 이상의 읍부 지역을 포함)을 편의상 都市라고 정의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에 기반을 두고 정의된 도시지역은 시가화된 지역에 비하여, 그 공간적 범위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여 운영하는 都市計劃에서는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도시계획구역(시급, 읍급, 면급으로 구분)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市로 승격시켜 별도의 행정구역을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된 都農複合 形態의 市(통상적으로 都農複合市라 칭함)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부지역이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어 시부지역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행정구역과는 별도의 도시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지역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제반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관련 연구자의 수요에 대응해서 이러한 도시지역을 설정해 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도시지역을 공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지역 경계 설정을 통해 여러 정부부처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도시화지역이라는 두 용어를 호환되게 사용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도시화지역 설정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설정기준 및 방법을 검토하여 설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사례지역을 위한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으로 한정한다. 이중 전남지역의 경우 범위가 넓어 도농복합시 1개 지역(순천시), 군 1개 지역(영암군)으로 한정한다.

사례지역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자료의 한계상 다른 지표는 그 지표의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종합정보망의 수치지형도는 제작년도가 2000년 기준이 아니다.

##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그림 1>의 연구흐름도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도시화 지역의 정의, 경계설정 방법 등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외국(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존문헌이나 인터넷자료를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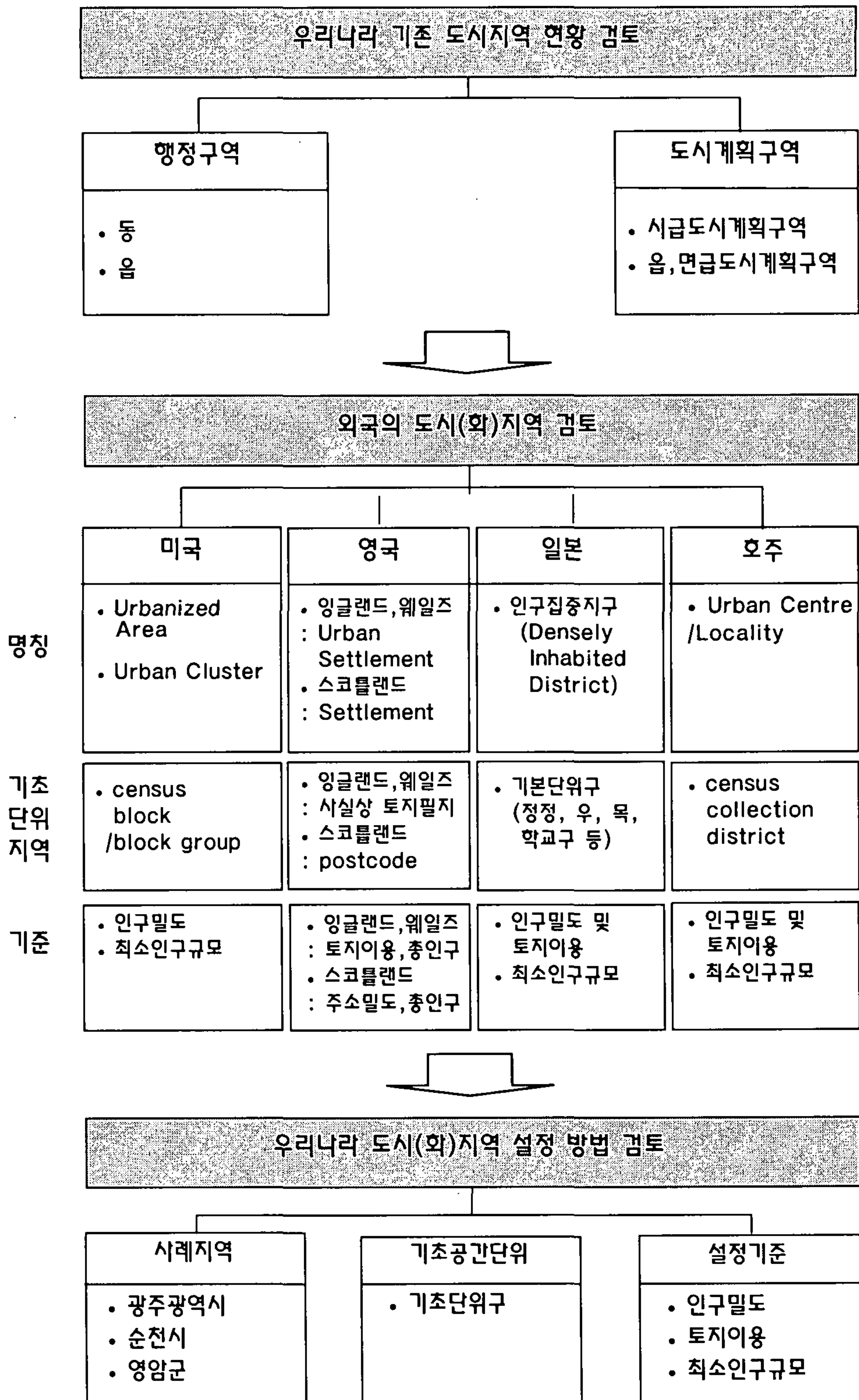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 사례지역을 선정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GIS기법을 활용하여 도시화지역의 경계를 기준안에 맞춰 시범적으로 구획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기준 및 경계설정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해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와의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연구협의회는 2004년도 11월 30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원대의 소진광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간분석의 최소기본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통계청에서 설정한 '基礎單位區'<sup>2)</sup>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화지역은 행정구역상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설정한다. 그리고 시의 경우 洞部지역을 합하여 하나의 공간단위로 간주하며, 읍이나 면지역의 경우 각각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간주한다.

2) 기초단위구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도로, 하천, 철도, 산 등 준항구적이고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구획된다(통계청 내부자료 참조). 읍면동 내에서 주요 지형지물을 토대로 대구역으로 구획한 다음, 명확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소구역으로 나눈다.



<그림 1> 연구흐름도

## 제2장 도시의 개념과 우리나라 도시현황

### 1. 도시의 개념

#### 1) 도시의 일반적 개념

도시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의 어원은 라틴어의 civitas이다. 영어로는 city, 불어로는 cité, 독어로는 Stadt로 표현하며, 지방취락에 비하여 강력한 정치권력과 자유를 지닌 취락지역을 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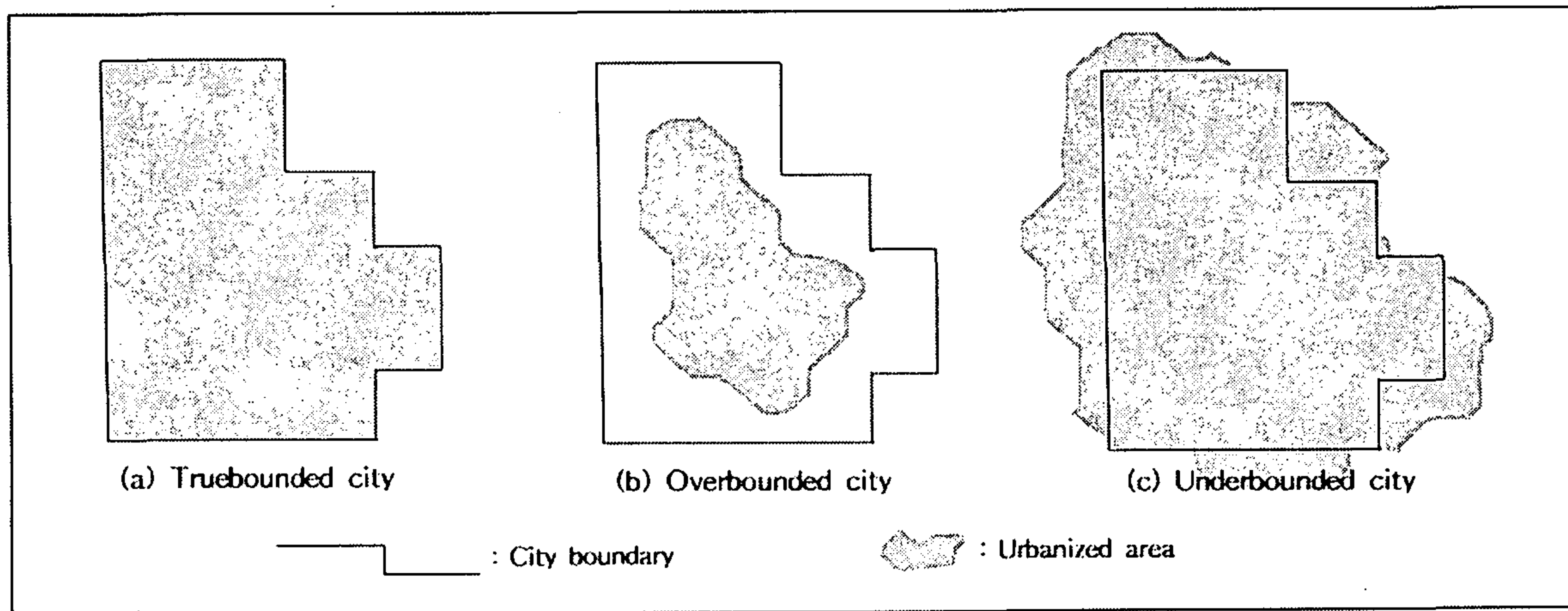
도시는 시, 도회지, 도읍 등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인구학적으로는 일정한 인구규모 내지 인구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도시를 단순히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제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확대시킨다. 이점은 도시와 대칭되는 개념인 촌락과의 대비에서 잘 나타는데, 도시는 주택, 상가, 공장, 관공서, 업무용건물 등이 건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협소한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인 반면, 촌락은 농가, 경지, 산지 등 넓은 공간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공간이다.

한편, 도시지리학에서는 도시를 정의할 때, 도시의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① 다수의 상주인구가 비교적 협소한 지역에 밀집해 있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②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율이 낮는데 반해,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2, 3차의 도시적 산업비율이 높으며, ③ 주변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정의한다.

도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市’가 있다. 시는 특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도시적 취락으로 정의된다. 유럽에서는 보통 주교의 소재지와 대성당이 위치한 곳을 일반적으로 시라 정의하나 현재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적 취락을 시라 정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계층상의 특수한 지역을 시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국가에서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비농업부문 종사자 비율 등 통계자료와 공간적으로 연속된 도시화된 시가지(built-up area) 내지 도시적 기능의 정도를 시의 설정기준으로 활용한다.

## 2)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의 구분

도시(city)는 행정적 도시(legal city)와 실질적 도시(geographical city)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시는 행정적으로 또는 센서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의 도시로 행정적으로 정한 고정된 경계선이 있는, 지역단위의 실체를 의미한다. 실질적 도시는 지리적 도시를 의미하며, 도시로서 공간상에 표현되는데, 시가화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실질적 도시의 경계선이 변화한다.



<그림 2>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의 비교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는 행정적 도시 내외에 있는 연속된 시가화지역의 범위에 의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① 행정적 도시와 실질적 도시의 경계선이 일치하는 경우, 실제경계도시(truebounded city)라고 표현한다. ② 행정적 도시의 경계선이 실질적 도시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 과대경계도시(overbounded city)로 규정된다. ③ 행정적 도시의 경계선이 실질적 도시의 경계선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 과소경계도시(underbounded city)로 규정된다.

대체로 도시는 초기에 과대경계도시로서 나타난다. 도시규모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의 확장으로 인해, 실질적 도시의 범위가 커진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실제경계도시가 성립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제경계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시규모의 증가로 인해, 시가지가 행정적 도시 경계를 넘게 되면 과소경계도시로 변화하게 된다.



### 3) 우리나라의 도시정의 및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시의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협의적으로는 인구 5만 이상의 시지역 이상을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만 이상의 읍지역 이상을 의미하고, 보다 광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읍이상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시의 설치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5만 이상인 지역으로 ①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60%이상이고, ②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이상이며, ③ 1인당 지방세납부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을 시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5만 이상의 시와 군지역을 통합한 지역, ②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③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이상이며, ㉡ 재정자립도가 전국군 평균치 이상인 지역), ④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시의 일부인 지역 등이다.

그리고 읍의 설치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춘 2만 이상 지역으로 ①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이고, ②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이상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②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세계 각국의 도시정의 및 기준

〈표 1〉은 국제연합에서 발간한 인구통계연감상의 세계 각국의 도시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의 상황에 맞춰 설정된 상주인구규모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자체 및 취락으로 대체로 정의하고 있고, ② 법적으로 ‘도시’의 지위가 부여된 지자체로도 정의되며, 그리고 ③ ① 또는 ②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주민의 경제활동 기준(예: 비농업인구의 비중)을 만족시키거나, 지방행정기관이 소재해 있거나 또는 도시적 특성(예: 전등, 상수도, 하수도 등)을 갖춘 취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세계 각국의 도시정의

아메리카 국가	도시 정의
미국	상주인구 2,500명 이상인 취락(places)과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s)
캐나다	상주인구가 1,000명 이상이고 인구밀도가 평방 킬로미터당 400명인 취락(places)
엘살바도르	지방행정구역(municipios)의 행정중심지(administrative centers)
그린란드	상주인구 2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온두라스	상주인구 2,000명 이상이고 도시적 특성을 갖춘 지자체(localities)
멕시코	상주인구 2,5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니카라과	지자체의 행정중심지로서 상주인구가 1,000명 이상이고 도로와 전등을 갖추고 있는 취락
파나마	상주인구 1,500명 이상이고 도시적 특성(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전등)을 갖춘 지자체(localities)
아르헨티나	상주인구 2,000명 이상의 중심지(populated centers)
볼리비아	상주인구 2,000명 이상의 지자체(localities)
칠레	도시적 특성(예를 들어, 공공 및 지방행정 서비스)을 갖춘 인구밀집지
에콰도르	주정부(provinces와 cantons)의 수도
페루	가옥이 100채 이상인 인구밀집지
베네수엘라	상주인구 1,000명 이상의 중심지

유럽 국가	도시 정의
오스트리아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인 지자체(communes)
체코공화국	상주인구가 2,0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프랑스	공간상으로 인접해 있거나 200m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가옥들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0명이상인 지자체; 또한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다수의 지자체가 밀집된 구역(multi-communal agglomeration)에서, 특정 지자체의 인구 대부분이 위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도시로 간주
영국	다음과 같은 지자체가 도시로 정의됨 - county boroughs, municipal boroughs, urban districts 등
아이슬란드	상주인구가 2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아일랜드	교외지역을 포괄해서 총 상주인구가 1,500명 이상인 시(cities)와 읍(towns)
네덜란드	상주인구가 2,000명 이상인 지자체(municipalities, 또는 시정부 관할구역); 2,000명 미만의 지자체(municipalities)라도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20%미만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준도시(semi-urban)'로 간주함. 통근자가 거주하는 지자체도 준도시로 간주함
노르웨이	상주인구가 2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포르투갈	상주인구가 10,000명 이상인 인구밀집지(agglomeration)
스페인	상주인구가 2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스위스	상주인구가 10,000명 이상인 지자체(commune), 교외지역 포함
알바니아	상주인구가 400명 이상인 읍(towns)과 기타 산업중심지(industrial centers)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식적으로 도시라고 지정된 지자체. 보통 그 지정은 인구, 비농업노동자(부양가족 포함)의 수, 그리고 농업노동자 수(부양가족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름
불가리아	법적으로 도시(urban)라고 지정된 지자체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Budapest)와 법적으로 지정된 모든 읍(towns)

아프리카 국가	도시 정의
보츠와나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이고 주민의 경제활동의 75%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밀집지
코모로	지자체의 행정중심지(administrative center)로서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이어야 함
에티오피아	상주인구 2,0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라이베리아	상주인구 2,0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모리셔스	경계선이 법적으로 공시된 읍(towns)
세네갈	상주인구 10,000명 이상인 인구밀집지(agglomerations)
수단	상주인구 5,000명 이상인 지자체(localities); 행정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자체
스와질란드	도시(urban)라고 공시된 지자체(localities)
탄자니아	16개의 공시된(gazetted) 타운십(townships)
잠비아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이고 주민의 대다수가 비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자체(localities)

아시아 국가	도시 정의
바레인	상주인구가 2,500명 이상인 지자체(communes) 또는 마을(villages)
인디아	지방정부기관(municipal corporation, municipal area committee, town committee, notified area committee or cantonment board)이 소재해 있는 읍(towns); 또한 상주인구가 5,000명이상이고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당 1,000명 이상이며 남성 성인 인구의 75%이상인 비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도시적 특성을 갖춘 취락(places)
일본	상주인구가 50,000명 이상이고, 가옥들의 60% 이상이 주요 시가화 지역(built-up area)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부양가족 포함)의 60% 이상이 제조업, 또는 상업 등의 도시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시(市); 또는 현(縣)정부 명령에 의해 정의된 도시시설과 조건을 갖춘 시(市)를 도시로서 간주함
말레이시아	인구 10,000명 이상의 공시된 지역(gazetted areas)
파키스탄	지방정부기관(municipal corporation, town committee or cantonment)이 소재해 있는 취락
베트남	상주인구가 2,000명 이상인 시(cities), 읍(towns), 그리고 구역(districts)
한국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법으로 지정된 시(市)

자료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2, 2000 Demographic Yearbook 52, United Nations: New York.

## 2. 우리나라 도시현황

여기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한 시 및 읍의 설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지역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현황, 그리고 인공위성사진 자료를 통한 수도권외 시가지 분포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시지역 현황

2004년도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 84개의 시로 나타난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1개 지역,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역, 일반시는 수원시 등 25개 지역, 도농복합시 마산시 등 52개 지역이다. 이러한 시지역의 경우 洞들을 합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정하고 도시별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규모를 살펴보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울산을 제외하면 인구 100만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의 경우 5만명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50만을 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주변의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와 지방중심도시인 청주시와 전주시로 나타난다. 그리고 30만을 초과하는 지역도 경기의 광명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으로 나타난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5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으나 5만미만의 지역이 경기의 포천시, 파주시, 화성시, 강원도의 삼척시, 충남의 논산시, 계룡시, 전북의 김제시, 전남의 나주시, 경북의 문경시 등 9개 지역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경북의 포항시, 경남의 창원시, 마산시 등 3개 지역에 나타난다.

〈표 2〉 전국 시지역의 유형과 인구규모 현황

구분		유형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인구	100만 이상	서울특별시 (1)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5)		
	50만 이상 100만 미만		울산광역시 (1)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8)	
	30만 이상 50만 미만			광명시 시흥시 의정부시 (3)	마산시 창원시 포항시 (3)
	10만 이상 30만 미만			구리시 군포시 목포시 오산시 의왕시 제주시 진해시 하남시 (8)	경주시 강릉시 경산시 구미시 군산시 김해시 진주시 천안시 춘천시 순천시 안동시 원주시 익산시 제천시 충주시 평택시 여주시 용인시 (18)
	5만 이상 10만 미만			동해시 동두천시 과천시 서귀포시 속초시 태백시 (6)	공주시 통영시 광양시 김천시 김포시 남원시 남양주시 거제시 밀양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안성시 영주시 이천시 사천시 상주시 양산시 영천시 정읍시 광주시 양주시 (22)
	5만 미만				계룡시 포천시 김제시 화성시 나주시 삼척시 논산시 문경시 파주시 (9)
계		1	6	25	52

주 1) 행정구역은 2003년도 현재 洞部지역을 기준으로 함  
 2) 인구와 인구밀도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市部地域에서는,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패턴을 나타낸다. 84개 시지역의 대다수가 〈표 3〉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대략 이어지는 선상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국 시지역의 인구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구분		인구밀도(명/km <sup>2</sup> )					
		10,000 이상	5,000 이상 10,000미만	3,000 이상 5,000 미만	1,000 이상 3,000 미만	1,000 미만	
인구	100만 이상	서울특별시 (1)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3)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2)			
	50만 이상 100만 미만	부천시 (1)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3)	안산시 청주시 (2)	울산광역시 고양시 전주시 (3)		
	30만 이상 50만 미만		광명시 마산시 (2)	의정부시 창원시 포항시 (3)	시흥시 (1)		
	10만 이상 30만 미만		군포시 목포시 (2)	구리시 김해시 진주시 천안시 춘천시 (5)	강릉시 구미시 순천시 오산시 의왕시 제주시 진해시 평택시 하남시 (18)	경산시 군산시 안동시 의산시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용인시  경주시 (1)	
	5만 이상 10만 미만			통영시 (1)	거제시 광양시 김포시 밀양시 서산시 안성시 이천시 (14)	과천시 김천시 남원시 보령시 아산시 영주시 남양주시  공주시 동두천시 상주시 속초시 영천시 태백시 양주시 (13)	동해시 사천시 서귀포시 양산시 청주시 광주시
	5만 미만				논산시 문경시 파주시 (3)	계룡시 김제시 나주시 (6)	포천시 화성시 삼척시
계		2개	10개	13개	39개	20개	

주 1) 행정구역은 2003년도 현재 洞部 지역을 기준으로 함

2) 인구와 인구밀도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함

〈표 4〉에서는 200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211개 읍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읍지역은 광역시내에 입지하는 읍, 도농복합시에 위치하는 읍, 그리고 군지역에 위치하는 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군지역에 위치하는 읍을 다시 군청소재지 여부에 따라, 두개로 구분할 수 있다. 211개 읍 중 122개(57.8%)가 군지역에 입지해 있고, 그중 79개 읍이 군청소재지에 입지하고 있는데, 2만이상의 읍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26개 읍으로 나타난다. 한편 79개 읍이 도농복합시에 위치해 있는데, 인구 5만이 넘는 읍은 6개로 나타나고, 광역시내 읍은 10개인데 그중 9개읍이 인구 2만을 초과하고 있다.

〈표 4〉 전국 읍지역의 유형과 인구규모 현황

구분	유형				
	광역시 읍	도농복합시읍	군지역 읍		
			군청소재지	비군청소재지	
인구	5만 이상		남양주외부 남양주화도 용인기흥 거제신현 마산내서 양산웅상 (6)		
	2만 이상 5만 미만	강화 기장 달성회원 달성논공 달성다사 울주언양 울주온산 울주온양 울주범서 (9)	평택팽성 용인구성 평택안중 파주문산 파주교하 광주오포 포천소흘 남양주진접 남양주진건 남양주오남 양주백석 파주조리 이천부발 안성공도 화성봉담 화성태안 화성우정 양산물금 강릉주문진 경산진량 경산하양 경주안강 김해진영 양산물금 구미고아 논산연무 창원동 천안성환 천안직산 천안목천 포항영일 포항오천 포항홍해 광양 (34)	여주 양평 옥천 홍천 영월 영동 진천 증평 당진 금산 연기조치원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부안 완도 화순 해남 영광 칠곡왜관 고성(경남) 거창 (23)	북제주애월 청원내수 칠곡북삼(3)
	2만 미만	기장장안 (1)	파주 파주법원 이천장호원 경주감포 경주건천 경주외동 공주유구 군산옥구 나주남평 남원운봉 문경기은 문경 구미선산 밀양삼랑진 밀양하남 보령웅천 사천 김제만경 김천아포 삼척도계 삼척원덕 상주함창 서산대산 아산염치 안동풍산 여수돌산 영주풍기 영천금호 원주문막 익산함열 정읍신태인 제천봉양 천안성거 진주문산 춘천신북 충주주덕 통영산양 포항구룡포 논산강경(39)	연천 가평 보은 정선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간성 양양 괴산 음성 단양 서천 청양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장성 진도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청도화양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함안가야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56)	고성거진 고흥도양 남제주남원 남제주대정 남제주성산 단양매포 당진합덕 무안일로 보성벌교 영암삼호 북제주구좌 북제주조천 북제주한림 서천장항 순천승주 신안지도 연천전곡 영광백수 영광홍농 영월상동 예산삽교 완도금일 완도노화 완주봉동 완주삼례 울진평해 음성금왕 장흥관산 장흥대덕 정선고한 정선사북 정선신동 창녕남지 철원갈말 철원김화 철원동송 청도 태안안면 홍성광천 태안안면 (40)
계	10개	79개	79개	43개	

주 1) 행정구역은 2003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인구와 인구밀도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함  
 3) 읍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시·군 명칭과 읍 명칭을 이어서 사용한 것임(예: 안동풍산, 순천승주). 그런데 읍 명칭이 군 명칭과 동일할 경우, 읍 명칭만 사용함(예: 하동, 영암)  
 4) 진한색은 광역시에 속하는 읍으로서 군청소재지를 나타냄



읍의 경우, 상주인구가 2만 이상이 되는 지역은 전체 읍 211개중 1/3을 다소 넘는 73개로 나타났다(〈표 5〉 참조).<sup>3)</sup> 일부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읍지역은 인구밀도가 1,000명 이상이지만 대체로 1,000명 미만의 인구밀도를 나타낸다. 또한 인구밀도가 3,000명 이상인 읍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 전국 읍지역의 인구 및 인구밀도 분포 현황

구분	인구밀도(명/㎢)		
	3,000 이상	1,000 이상 3,000 미만	1,000 미만
인구	5만 이상	거제신현 남양주와부 용인기흥	남양주화도 마산내서 양산웅상
	2만 이상 5만 미만	금산 달성화원 양산물금 연기조치원 홍성 화성태안 남양주오남 파주조리 안성공도 양산물금 (10개)	강릉주문진 강화 거창 경산진량 경산하양 경주안강 고성(경남) 광양 구미고아 기장 김해진영 남양주진접 논산연무 달성논공 달성다사 당진 부안 부여 북제주애월 양평 여주 영광 영동 영월 예산 옥천 완도 용인구성 울주언양 울주온산 이천부발 진천 창원동 천안성환 천안직산 천안목천 청원내수 칠곡왜관 태안 파주문산 평택팽성 포항영일 포항오천 포항흥해 해남 흥천 화성봉담 화순 울주온양 울주범서 평택안중 남양주진건 파주교하 광주오포 양주백석 증평 포천소흘 칠곡북삼 (57개)
	2만 미만	논산강경	가평 강진 경주감포 경주건천 경주외동 고령 고성간성 고성거진 고창 고흥 고흥도양 곡성 공주유구 괴산 구례 구미선산 군산옥구 군위 기장장안 김제만경 김천아포 나주남평 남원운봉 남제주남원 남제주대정 남제주성산 남해 단양 단양매포 담양 당진합덕 무안 무안일로 무주 문경가은 문경 밀양삼랑진 밀양하남 보령웅천 보성벌교 보성 보은 봉화 북제주구좌 북제주조천 북제주한림 사천 산청 삼척도계 삼척원덕 상주함창 서산대산 서천 서천장항 성주 순창 순천승주 신안지도 아산염치 안동풍산 양구 양양 여수돌산 연천 연천전곡 영광백수 영광홍농 영덕 영암 영양 영월상동 영주풍기 영천금호 예산삼교 예산 완도금일 완도노화 완주봉동 완주삼례 울릉 울진 울진평해 원주문막 음성금왕 음성 의령 의성 이천장호원 익산함열 인제 임실 장성 장수 장흥관산 장흥대덕 장흥 정선고한 정선사북 정선신동 정선 정읍신태인 제천봉양 진도 진안 진주문산 창녕남지 창녕 천안성거 철원갈말 철원김화 철원동송 철원 청도 청도화양 청송 청양 춘천신북 충주주덕 태안안면 통영산양 파주법원 파주 포항구룡포 하동 함안가야 함양 함평 합천 홍성광천 화천 횡성 화성우정 평창 영암삼호 태안안면(137개)

주 1) 행정구역은 2003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인가와 인구밀도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함

3) 읍은 아니지만, 다음의 아홉 개 면들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양주시 별내면과 퇴계원면, 광주시(경기) 초월면과 실촌면, 용인시 포곡면, 김포시 통진면, 계룡시 두마면, 순천시 해룡면, 김해시 장유면.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현황

우리나라 계획시가지라고 볼 수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현황을 보면 2002년말 현재 539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시급 도시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포함한 76개 지역, 읍급 도시계획구역은 169개 지역, 그리고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294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전국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시도명	시급 도시계획구역	읍급 도시계획구역	면급 도시계획구역	계
서울특별시	1	0	0	1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1	1	5	7
광주광역시	1	0	0	1
대전광역시	1	0	0	1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9	21	50	90
강원도	7	23	30	60
충청북도	3	13	29	45
충청남도	6	19	25	50
전라북도	6	12	34	52
전라남도	6	29	48	83
경상북도	10	28	40	78
경상남도	10	16	30	56
제주도	2	7	3	12
계	76	169	294	539

주 : 2002년말 기준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2002년 현재 시급 도시계획구역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목포시 등 7개 지역에, 읍급 도시계획구역은 순천시 승주읍 등 29개 지역에,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순천시 낙안면 등 48개 지역 등 총 84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표 7〉 참조).

〈표 7〉 광주·전남지역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

시군명	시급도시 계획구역	읍급도시 계획구역	면급도시계획구역	개수
광주광역시	광주시			1개
목포시	목포시			1개
순천시	순천시	승주읍	낙안면, 주암면, 황전면	5개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2개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읍		2개
나주시	나주시	남평읍	공산면, 다시면, 봉황면	5개
강진군		강진읍	도암면, 마량면, 병영면, 성전면	5개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포두면, 풍양면	5개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3개
구례군		구례읍	마산면, 산동면	3개
담양군		담양읍	창평면	2개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망운면, 청계면, 해제면, 남악면	6개
보성군		보성읍, 벌교읍	조성면	3개
신안군		지도읍		1개
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4개
영암군		영암읍	서영암면, 신북면, 학산면	4개
완도군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4개
장성군		장성읍	북이면, 북하면, 삼계면	4개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장평면	4개
진도군		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5개
함평군		함평읍	나산면, 월야면, 학교면, 해보면	5개
해남군		해남읍	문내면, 북평면, 송지면, 화산면, 황산면	6개
화순군		화순읍	남면, 능주면, 동북면, 이양면, 춘양면	6개
계	7개	29개	48개	84개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특히, 광주대도시권내 도시계획현황은 <표 8>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시의 경우, 도시화지역으로 볼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인구밀도는 약 15,000명/km<sup>2</sup>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주시, 화순읍, 담양읍 등 광주광역시 주변 시·읍의 경우 주상공지역의 인구밀도가 약 6,000명/km<sup>2</sup>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주상공지역의 인구밀도가 약 2,000명/km<sup>2</sup>에서 6,000명/km<sup>2</sup>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표 8> 광주대도시권 도시계획구역 현황

시군명	도시계획 구역명	도시계획 구역면적	도시계획 구역인구	주거+상업+공업지역면적	주상공 면적비율	도시계획구역인구밀도	주상공 인구밀도
광주광역시	계	744.22	1,414,561	94.07	12.6	1,901	15,037
	동구	48.81	119,556	9.11	18.7	2,449	13,123
	서구	46.80	301,302	18.15	38.8	6,438	16,601
	북구	121.94	475,314	25.80	21.2	3,898	18,423
	남구	60.78	226,454	9.41	15.5	3,726	24,065
	광산구	200.04	262,155	26.28	13.1	1,311	9,975
	장성군*	74.67	7,452	0.78	0.0	100	-
	담양군*	117.68	15,675	2.24	0.0	133	-
	나주시*	42.90	5,721	0.00	0.0	133	-
	화순군*	30.60	932	0.00	0.0	30	-
화순군	화순읍	74.01	43,395	7.22	9.8	586	6,010
	춘양면	2.96	1,083	0.41	13.9	366	2,641
	이양면	2.76	1,036	0.41	14.9	375	2,527
	동북면	2.63	1,264	0.32	12.2	481	3,950
	능주면	2.33	3,295	0.85	36.5	1,414	3,876
	남면	5.20	1,418	0.54	10.4	273	2,624
나주시	나주시	45.24	44,550	7.30	16.1	986	6,103
	남평읍	1.76	4,966	0.76	43.2	2,822	6,534
	공산면	2.03	1,274	0.36	17.7	628	3,539
	다시면	2.18	2,256	0.56	25.7	1,035	4,029
	봉황면	1.18	1,224	0.36	30.5	1,037	3,400
담양군	담양읍	13.15	13,269	2.32	17.6	1,009	5,719
	창평면	0.75	1,739	0.30	40.0	2,319	5,797
함평군	함평읍	9.51	6,930	1.41	14.8	729	4,915
	월야면	3.00	1,769	0.62	20.7	590	2,853
	나산면	3.12	964	0.54	17.3	309	1,785
	해보면	4.45	2,122	0.70	15.7	477	3,031
	학교면	5.02	2,801	1.00	22.1	558	2,801
장성군	장성읍	29.54	15,395	3.93	13.3	521	3,917
	삼계면	4.00	5,972	1.85	46.3	1,493	3,228
	북이면	1.15	1,425	0.24	20.9	1,239	5,938
	북하면	3.01	1,015	0.31	10.3	337	3,274

\*: 각각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장성군, 담양군, 나주시, 그리고 화순군의 일부를 나타냄



<그림 3> 광주대도시권 도시계획구역 현황도

자료 : 2020년 광주권광역도시계획, 2004.2

### 3) 인공위성자료에 의한 시가지 분포 현황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의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서울과 그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수도권 시군에서의 시가지 변화(1981-2000년)는 한국에서 전개된 시가지 면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시가지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1년, 1990년, 2000년 3개년의 수도권 지역 인공위성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가지 면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사공호상 2002)를 인용하고자 한다.

사공호상(2002)에서는 시가지비율은 각 시군의 시가지 면적을 해당 시군의 총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고, 총면적과 시가지 면적은 2000년도 현재의 시군 경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0년도 현재 수도권의 시가지 면적은 총 1,110km<sup>2</sup>인데,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약 20,877천명이다. 수도권 인구가 모두 시가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의 시가지 인구밀도는 대략 18,800명/km<sup>2</sup>가 된다(사공호상 2002년).

수도권의 모든 시군에서 시가지의 비율이 1981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이 전개되었던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안산시, 수원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1년도와 2000년도의 시가지비율 간에 20%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9> 참조).

또한 이상의 논의는 1981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에 서울의 시가지지역이 서울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서울의 대도시권화가 전개되어왔고, 그로 인해 수도권이 서울의 대도시권과 등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가지 및 도시화지역의 확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수도권 시·군에서의 시가지 비율 변화

시군	시가지비율 (1981)	시가지비율 (1990)	시가지비율 (2000)
서울특별시	39.60%	50.84%	55.61%
인천광역시	14.50%	29.67%	45.11%
고양시	1.34%	7.64%	24.37%
과천시	2.54%	13.24%	22.79%
광명시	10.26%	24.88%	35.07%
광주군	0.19%	0.48%	6.08%
구리시	4.60%	15.49%	29.18%
군포시	5.56%	18.29%	32.73%
김포시	0.27%	3.74%	8.22%
남양주시	0.54%	2.17%	5.44%
동두천시	3.55%	7.12%	12.41%
부천시	18.49%	46.55%	60.82%
성남시	5.80%	11.68%	31.96%
수원시	7.95%	27.18%	38.81%
시흥시	0.28%	6.12%	23.37%
안산시	2.31%	31.87%	38.44%
안양시	15.45%	29.78%	40.02%
양주군	0.48%	3.98%	8.56%
오산시	2.49%	7.51%	17.21%
용인시	0.25%	1.32%	7.58%
의왕시	1.75%	9.63%	19.43%
의정부시	6.10%	15.38%	22.72%
파주시	0.91%	3.75%	6.06%
하남시	0.83%	5.29%	12.89%
화성군	0.22%	1.52%	4.54%
계	6.56%	12.48%	19.53%

자료: 사공호상, 2002년,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화지역의 확산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게재된 자료를 사용해서 재구성함



<그림 4> 수도권 시가지의 분포 변화

자료: 사공호상, 2002년,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화지역의 확산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3장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도시화지역을 설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국의 도시화지역

#### 1) 잉글랜드·웨일즈의 Urban Settlement

##### (1) 설정목적 및 정의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도시화지역으로서 urban settlement(이하 도시취락으로 칭함)를 설정·운용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ODPM(부총리실)에서 도시취락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도시취락은 도시용 토지에 기초하며, 행정구역과는 독립적으로 구획된다. 토지가 최소한 20ha이상의 면적이고 인구가 1,000명 이상인 모든 시가화된 취락을 도시취락으로 정의한다.

사용자에 따라 인구규모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계적 목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일 경우, 도시취락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부총리실),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통계청), 그리고 Ordnance Survey(육지측량부)에서는 1991년 도시취락을 변경·갱신함으로써 2001년 도시취락 자료를 구축하였다.

##### (2) 설정과정

도시취락의 설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구역경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이용상황을 토대로 도시용 토지구역(urban land)을 획정한 후, 면적기준(20ha이상)과 인구기준(1,000명 이상)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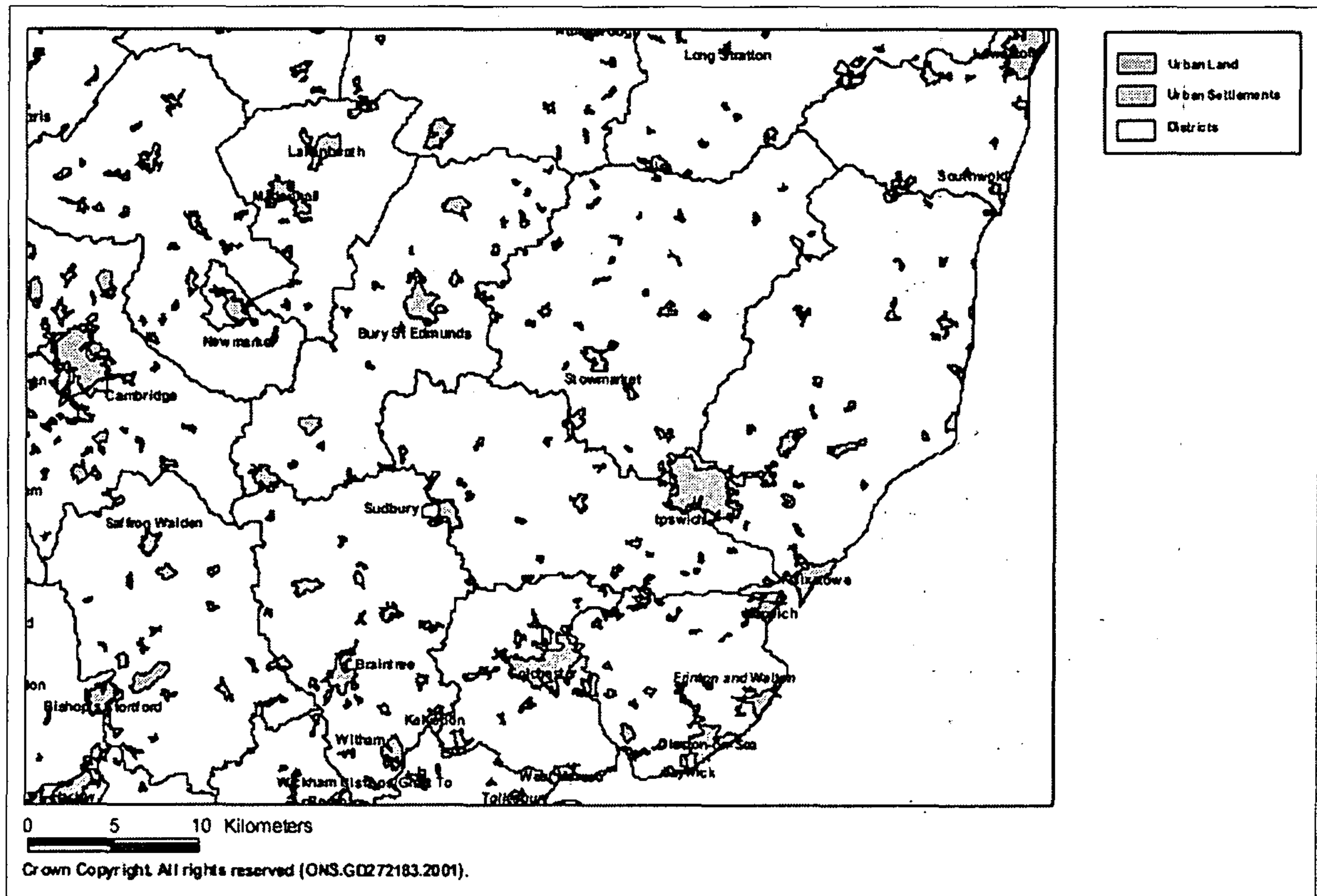
도시용 토지구역은 다음의 지역을 포함하여 구획한다.

- ① 영구 구조물, 그리고 그것이 위치해 있는 필지(built-up site; 기건축토지)
- ② 양 측면 또는 최소한 한 측면에 기건축토지와 접해 있는 교통로(transportation corridors; 예: 도로, 철도, 운하 등), 또는 50m미만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기건축토지를 연결시키는 교통로
- ③ 공항, 비행장(operational airfields), 철도주차장(railway yards), 고속도로 관련시설(motorway service areas), 주차장 등과 같은 교통시설(transportation features)
- ④ 광업용 건물(채굴장과 채석장은 제외)
- ⑤ 기건축토지(built-up sites)로 완전히 둘러싸인 모든 구역
- ⑥ 기건축토지로 둘러싸인 골프장이나 운동장(그렇지 않은 골프장과 운동장은 모두 제외)

그리고 도시취락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설정된다.

- ① 1:10,000의 공식 토지측량자료를 사용해서 도시용 토지구역(urban land)의 범위를 설정한다. 도시용 토지구역이 20ha이상 뺀어 있고, 구역 내 인구가 1,000명 이상일 때, 해당 도시용 토지구역이 도시취락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도시용 토지구역에 대한 인구통계가 보통 없기 때문에, 센서스조사구역(census enumeration districts)<sup>4)</sup>을 활용해서 인구기준(즉, 1000명 이상)을 적용한다.
- ② 센서스조사구역의 중심(centroids)이 도시용 토지구역(20ha 이상) 내부에 있거나 해당 토지구역의 경계로부터 150m이내에 있을 경우, 센서스조사구역이 당해 도시용 토지구역에 할당된다.
- ③ 도시용 토지구역(20ha 이상)에 네 개 이상의 센서스조사구역이 할당되고 할당된 조사구역의 인구총계가 1,000명이 넘을 경우, 해당 도시용 토지구역을 도시취락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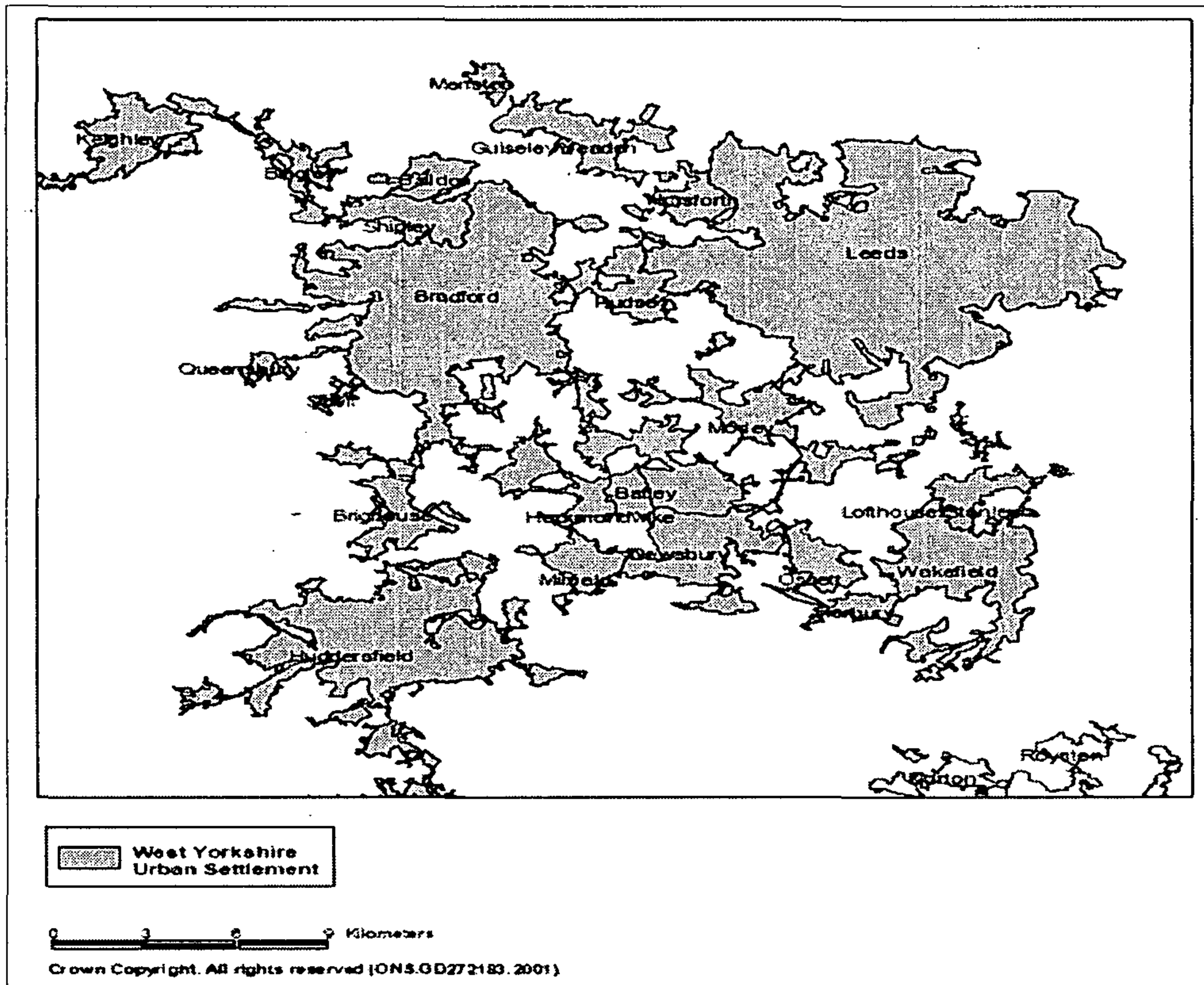
4) 센서스조사구역(census enumeration districts)은 2001년 센서스부터 자료 수집에만 활용된다. 2001년 센서스 이전까지는 센서스 자료 수집과 발간을 위한 공간단위로서 활용되었다. 자료 수집의 요구에 맞춰 그 범위와 형상이 결정된다. 2001년도 센서스와 관련해서, 센서스조사구역은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대략 450명의 인구규모를 갖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각각 730명 정도, 그리고 650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다.



<그림 5> 도시용토지와 도시취락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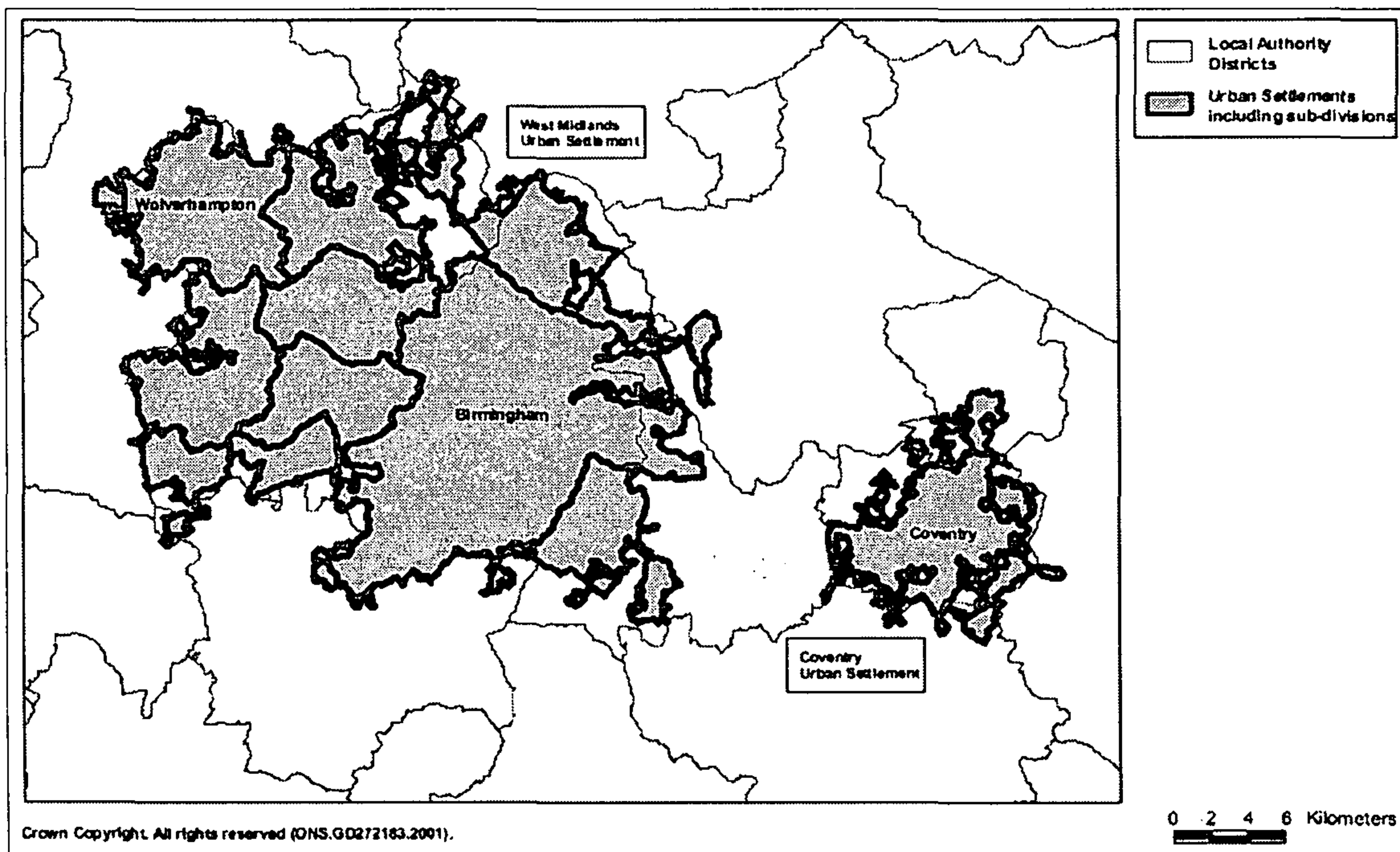
자료: www.statistics.gov.uk

- ④ 20ha이상인 도시용 토지구역들이 200m미만의 거리로 서로 떨어져 있고, 그 구역들에 할당된 센서스조사구역 총수가 네 개 이상이라면, 그 토지구역 모두를 합쳐서 도시취락(contiguous urban settlements)으로 분류한다 — 200m 규칙 (200m contiguity rule). 이와 같은 경우, 도시취락이 도시용 토지구역들로 뒤엉킨 일종의 체인(chain)으로 나타날 수 있다(<그림 6> 참조).
- ⑤ 도시취락이 다핵중심(multi-centre)일 경우(예를 들자면, 200m 규칙에 의해 다수의 도시용 토지구역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도시취락의 경우), 보통 지자체(local authorities)의 행정구역경계에 근거해서 해당 도시취락을 몇 개의 하위지역으로 구분한다(<그림 7> 참조).



<그림 6>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 도시취락

자료: www.statistics.gov.uk



<그림 7>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 도시취락과 코벤트리(Coventry) 도시취락

출처: www.statistics.gov.uk

## (3) 설정결과

2001년 현재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1,859개의 도시취락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도시취락에 총 인구의 90%인 4,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인구밀도의 경우 75만명 이상의 도시취락에서는 4,388명이고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인구밀도가 약간씩 낮아져 1,000명에서 3,000명의 인구규모를 지닌 도시취락은 인구밀도가 2,838명이다. 그리고 도시취락 전체의 평균 인구밀도는 3,891명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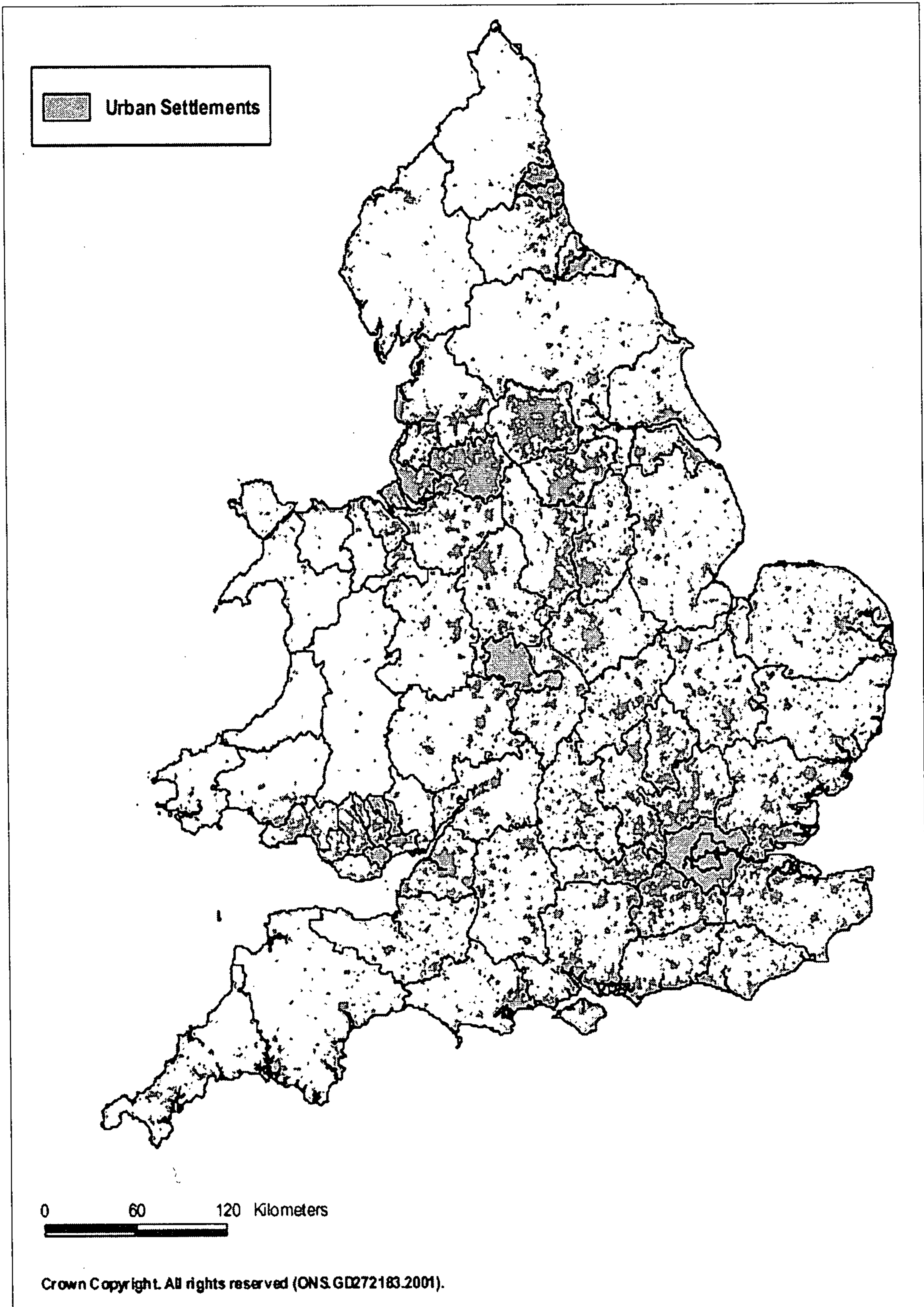
〈표 10〉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인구규모별 도시취락

인구규모	도시취락 수	인구 (천명)	비율(%)	토지면적(km <sup>2</sup> )	비율	인구밀도 (명/km <sup>2</sup> )
750,000이상	6	15,359	34.4	3,500	30.5	4,388
250,000 - 749,999	19	7,020	15.7	1,740	15.2	4,034
100,000 - 249,999	37	5,470	12.2	1,420	12.4	3,852
50,000 - 99,999	61	4,336	9.7	1,140	9.9	3,804
25,000 - 49,999	100	3,439	7.7	940	8.2	3,659
10,000 - 24,999	254	3,923	8.8	1,110	9.7	3,534
3,000 - 9,999	684	3,685	8.2	1,110	9.7	3,320
1,000 - 2,999	698	1,476	3.3	520	4.5	2,838
총 계	1,859	44,744	100.0	11,500	100	3,891

주 : 200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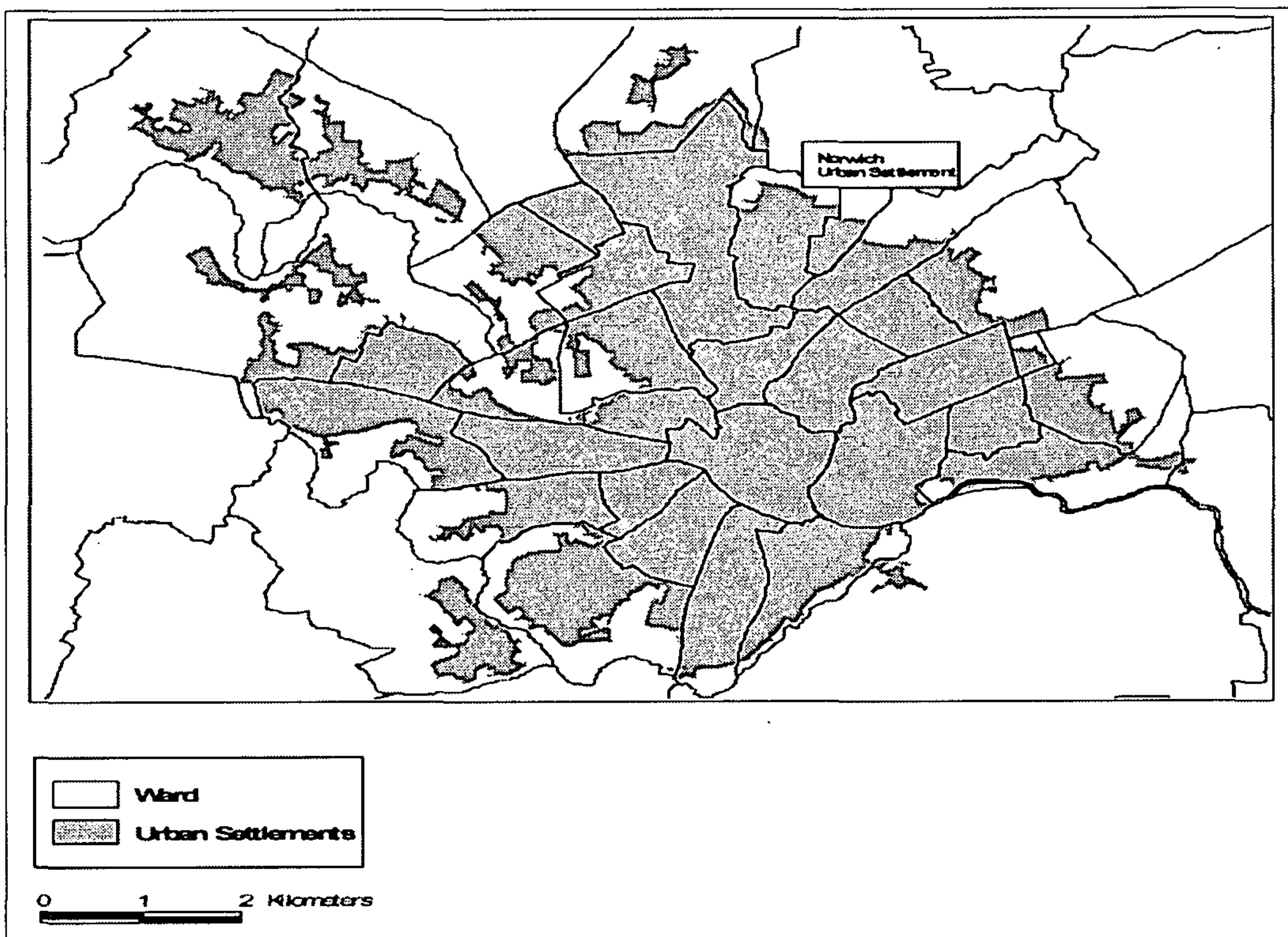
자료 : www.statistics.gov.uk

〈그림 8〉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도시취락분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9〉과 〈그림 10〉은 중소도시지역에서의 도시취락(urban settlement)의 설정결과를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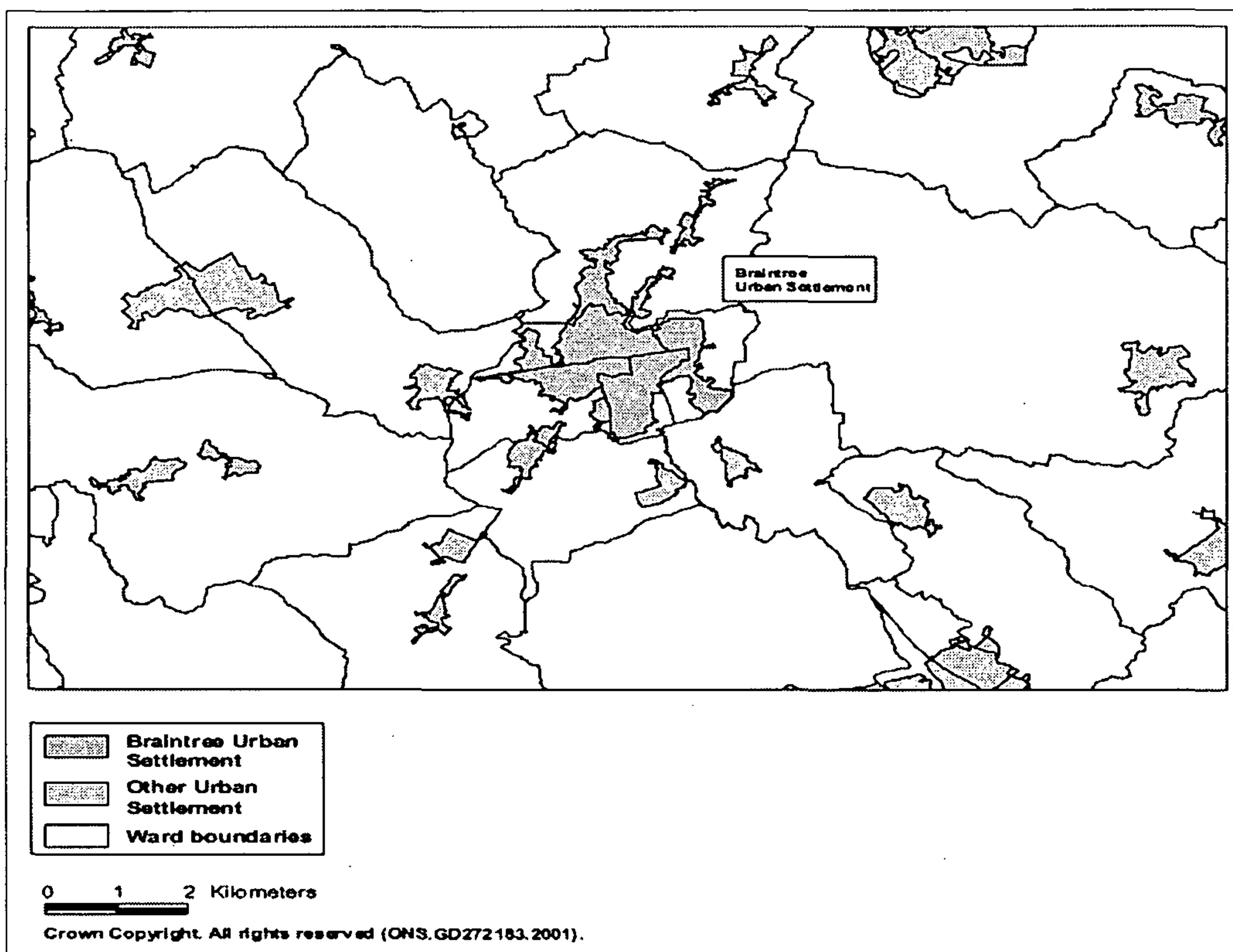
<그림 8> 인구 1,000명 이상의 도시취락

자료: [www.statistics.gov.uk](http://www.statistics.gov.uk)



<그림 9> 중도시지역 도시취락 설정결과 예시

자료: [www.statistics.gov.uk](http://www.statistics.gov.uk)



<그림 10> 소도시지역 도시취락 설정결과 예시

자료: [www.statistics.gov.uk](http://www.statistics.gov.uk)

#### (4) 통계서의 발행

통계청에서 2001년 센서스 별책으로 잉글랜드 및 웨일즈 도시화지역에 대한 주요 통계집을 발행하였다.

2만 이상의 도시화지역에 대한 주요 통계로 인구, 연령구조, 삶의 질, 결혼상태, 출생지, 인종, 종교, 건강, 경제활동, 노동시간, 산업분류, 직업분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분류, 출근시간, 주거공간, 자동차유무, 자가주택여부, 방수, 가구원구성, 인구이동 등을 공표하고 있다.

### 2) 스코틀랜드의 Settlements와 Localities

#### (1) 설정목적 및 정의

스코틀랜드에서는 settlements와 localities를 도시화지역으로 사용하는데, GROS(the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가 시가화구역(built-up area)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지역 정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다.

settlements는 공간상에 연접해 있는 일단의 도시(고밀도) 우편번호구역(urban or high-density postcodes)으로서 저밀도 우편번호 구역 및 수변공간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localities는 인구규모가 큰 settlement를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단체(council areas)의 경계를 토대로 구분한 다수의 하위지역으로서 각 지자체의 총면적 대비 도시화지역의 면적 비율 계산에 이용될 수 있다.

#### (2) 설정과정

settlement 설정의 기초공간단위로서 우편번호구역(postcode)<sup>5)</sup>을 사용하고, 설정 기준으로서 인구밀도와 유사한 주소밀도(1ha당 주소의 개수)와 절대인구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

5) 영국(잉글랜드·웨일즈와 스코틀랜드 포함)의 2001년도 센서스에서는 센서스 통계의 생산단위가 우편번호구역(postcodes)을 토대로 한다(www.statistics.gov.uk 참조).



- ① GROS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우편번호 구역의 경계와 인덱스화일을 토대로, 1ha당 주거지 주소(residential addresses) 개수가 2.1을 넘거나 1ha당 비주거지 주소(non-residential addresses) 개수가 0.1을 넘는 우편번호 구역을 도시 우편번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후자의 기준은 단위 면적의 상주인구 수는 작지만 도시적 토지이용이 우세한 구역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도시 우편번호 구역들이 공간상에 연접해 있고, 이 연접해 있는 우편번호구역 그룹의 총 인구가 대략 500명 이상(210개 이상의 거주지 주소)일 때, 해당 그룹을 settlement로 지정한다. 이때 도시 우편번호구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저밀도 우편번호구역도 settlement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킨다.

### (3) 설정결과

설정결과, 1999년 중반 스코틀랜드 추정인구인 5,119,200명 중 4,648,010명이 514개의 settlement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14개의 settlement는 스코틀랜드 총 육지면적의 2.2%에 불과하다.

〈표 11〉 스코틀랜드의 인구규모별 취락(Settlements)

인구규모	취락 수	인구비율(%)	인구밀도(명/km <sup>2</sup> )
1,000,000이상	1	21.3	3,810
100,000 - 999,999	4	18.4	3,380
10,000 - 99,999	51	29.4	2,880
1,000 - 9,999	311	19.6	2,000
500 - 999	147	2.1	870
도시지역 계	514	90.8	3,230
농촌지역	-	9.2	10

### (4) 통계서의 발행

통계청에서 2001년 센서스 별책으로 스코틀랜드 도시화지역에 대한 주요 통계집을 발행하였다. 도시화지역에 대한 주요 통계로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마찬가지로 인구, 연령구조, 삶의 질, 결혼상태, 출생지, 인종, 종교, 건강, 경제활동, 노동시간, 산업분류, 직업분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분류, 출근시간, 주거공간 등을 공표하고 있다.

## 2. 미국의 Urbanized Area와 Urban Cluster

### 1) 설정목적 및 정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urbanized area(이하 도시화지역이라 칭함)와 urban cluster(이하 도시 클러스터라고 칭함)를 설정한다.

도시화지역이나 도시클러스터 설정의 단위 지역은 평방 마일 당 1,000명 이상의 인구밀도를 갖는 핵심 센서스블록그룹(census block group)과 평방 마일 당 500명 이상의 인구밀도를 지닌 주변 센서스블록그룹 및 블록으로 구성된다.

도시화지역과 도시클러스터의 차이는 총 인구의 하한선에 있는데, 전자는 총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후자는 2,500명 이상 5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갖는다. 이러한 도시화지역이나 도시클러스터 이외의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한다.

### 2) 도시지역 설정방법

#### (1) 기본원칙

미국의 도시화지역과 도시클러스터의 경계설정은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 ①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 당 1,000명 이상이 되는 핵심 센서스블록그룹 또는 센서스블록(core census block groups or census blocks)<sup>6)</sup>과 그 주변에 위치하고 총 인구밀도(overall density)가 평방 마일 당 500명 이상이 되는 상호 인접한 센서스블록그룹과 블록들(census blocks)로 구성된다.
- ② 총인구가 5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도시클러스터의 경우 2,500명 이상 50,000명 미만이어야 함).

6) 센서스블록(census block)은 데이터 집계와 최소 공간단위로서 가시적인 지형지물(features)이나 법적 경계(legal boundaries)에 의해 경계가 설정이 된다. 각 블록은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다. 한편 센서스블록그룹(census block group)은 센서스블록들로 구성되며, 센서스블록들에 부여된 네 자리 번호중 첫 번째 자리수를 공유한다. 센서스 관련 표본 데이터가 구득가능한 최소단위이다. 각 블록그룹은 최적인구로서 1,500명의 인구를 갖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300명에서 3,000명까지의 인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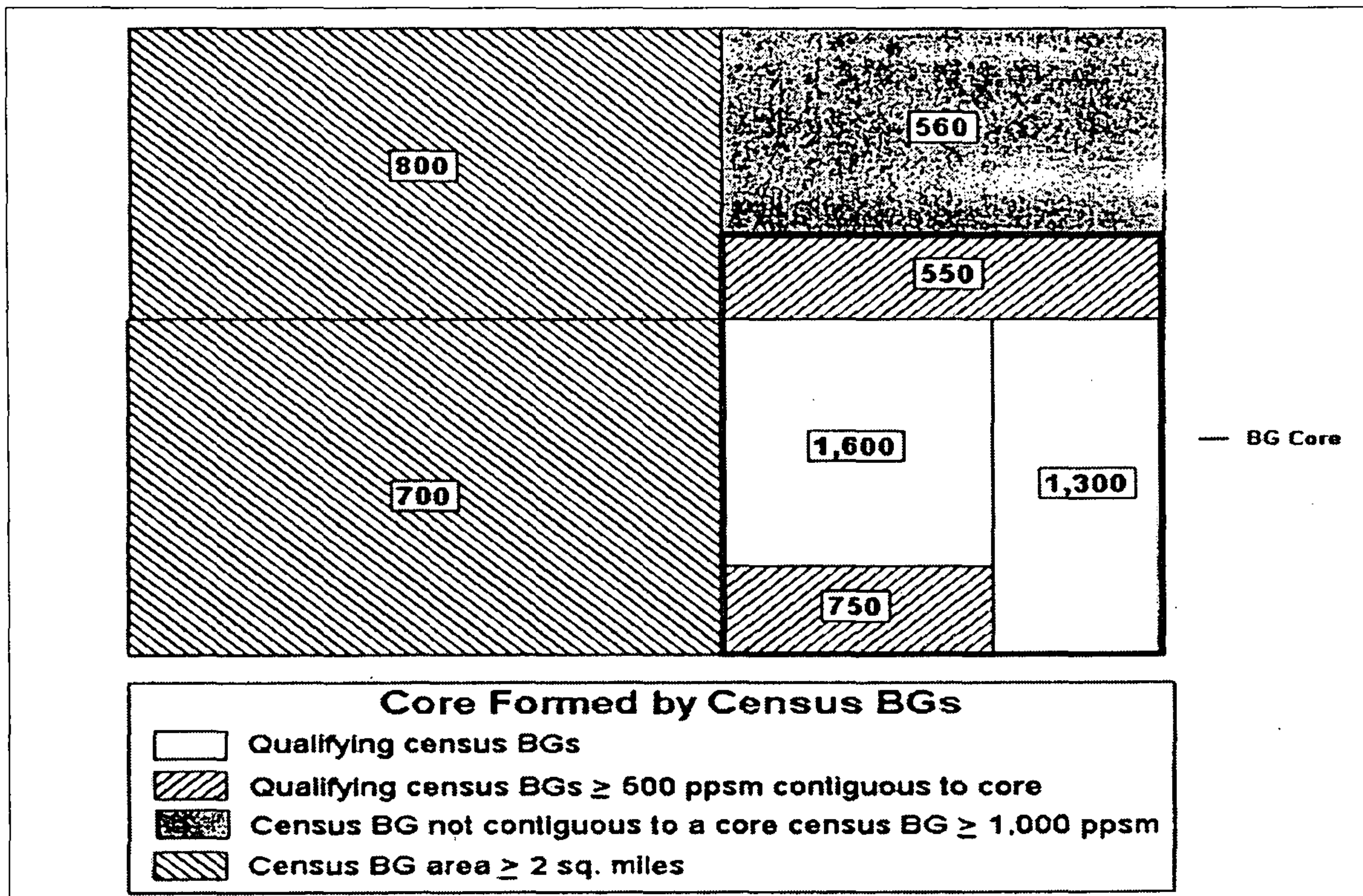
- ③ 모든 인구밀도의 계산에는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 내 토지만을 활용하는데,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내의 호수나 하천 등과 같은 공간은 인구밀도 계산에서 배제된다.

## (2) 초기핵심지역의 설정

도시화지역 및 도시클러스터의 경계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통계청에서 TIGER(topological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database를 기초로 경계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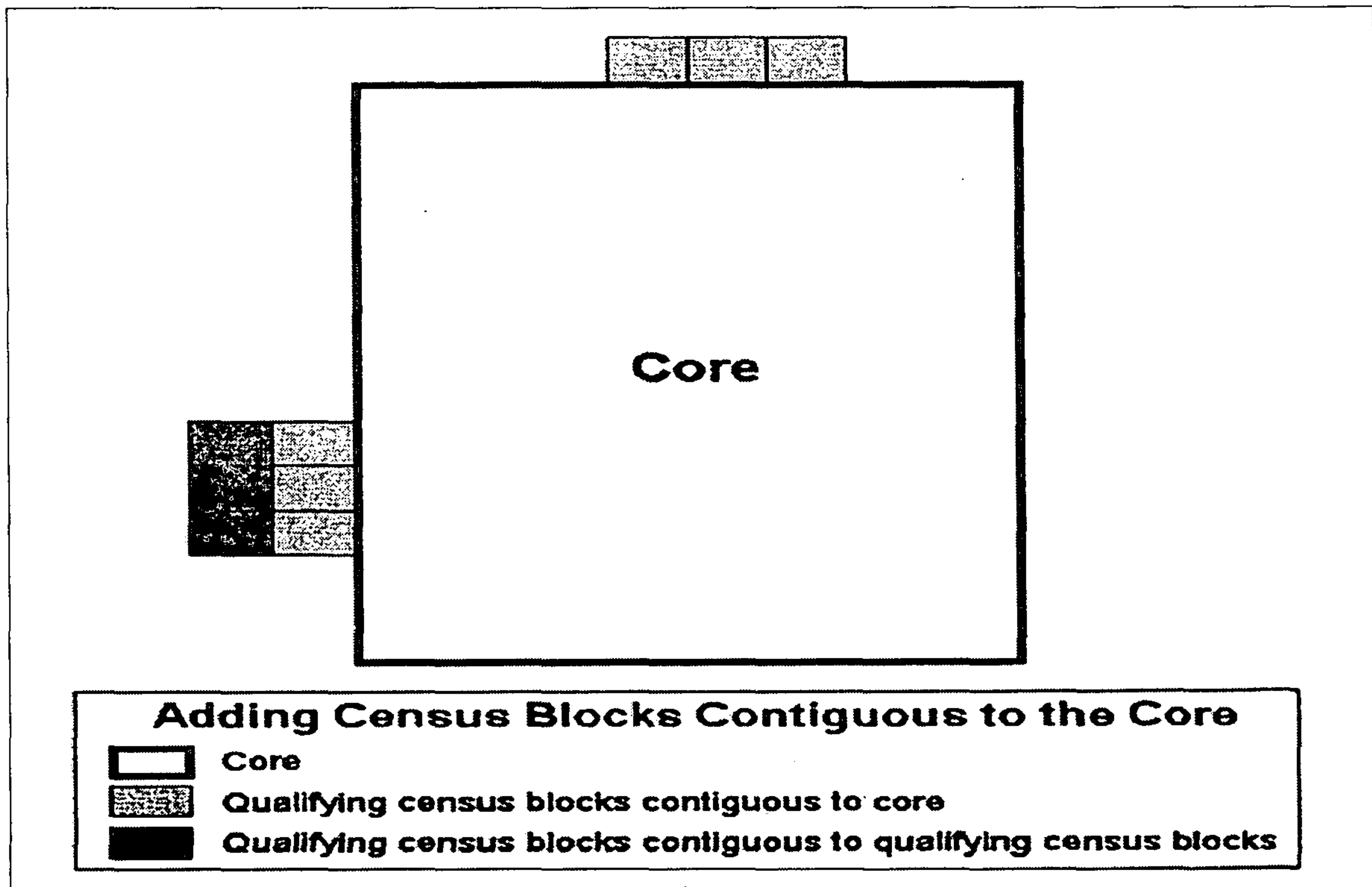
인구가 밀집한 초기핵심지역(initial cores)을 확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도시지역(potential urban area)의 설정을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구역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초기핵심지역을 설정한다.

- ① 하나 이상의 상호 인접한,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 당 1,000명 이상이고 면적이 2 평방마일 미만인 센서스블록그룹(<그림 11>의 백색 부분)
- ② 상기의 센서스블록그룹이 없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간적으로 연결해 있는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 당 1,000명 이상인 센서스블록
- ③ 한 개 이상의 상호 인접한,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 당 500명 이상이고 면적이 2 평방마일 미만이고, ①에 의거해서 확인된 센서스블록그룹에 연결해 있는 센서스블록그룹(<그림 11>에서 백색부분에 인접해 있고 굵은 실선 안에 위치한 사선이 쳐진 부분)
- ④ 한 개 이상의 공간상에 연속해 있는 센서스블록으로 각각은 인구밀도가 평방 마일 당 500명 이상이고, 최소한 그 중 하나의 블록이 ①, ②, 또는 ③의 기준에 의해 확인된 센서스 블록그룹이나 또는 블록에 인접해 있음(<그림 11>에서 연한 회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
- ⑤ 상기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①에서 ④까지의 기준들에 의해 차례로 초기핵심지역에 포함된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5 평방마일 미만인 모든 구역(enclaves)



<그림 11> 초기핵심지역(1)

자료: www.census.gov



<그림 12> 초기핵심지역(2)

자료: www.census.gov

### (3) 잠재적 도시지역의 설정

초기핵심지역(initial cores)이 설정된 뒤에도, 잠재적 도시지역의 설정이 계속해서 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hop connection 방법

ho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초기핵심지역에 주변지역이 추가된다.

추가될 주변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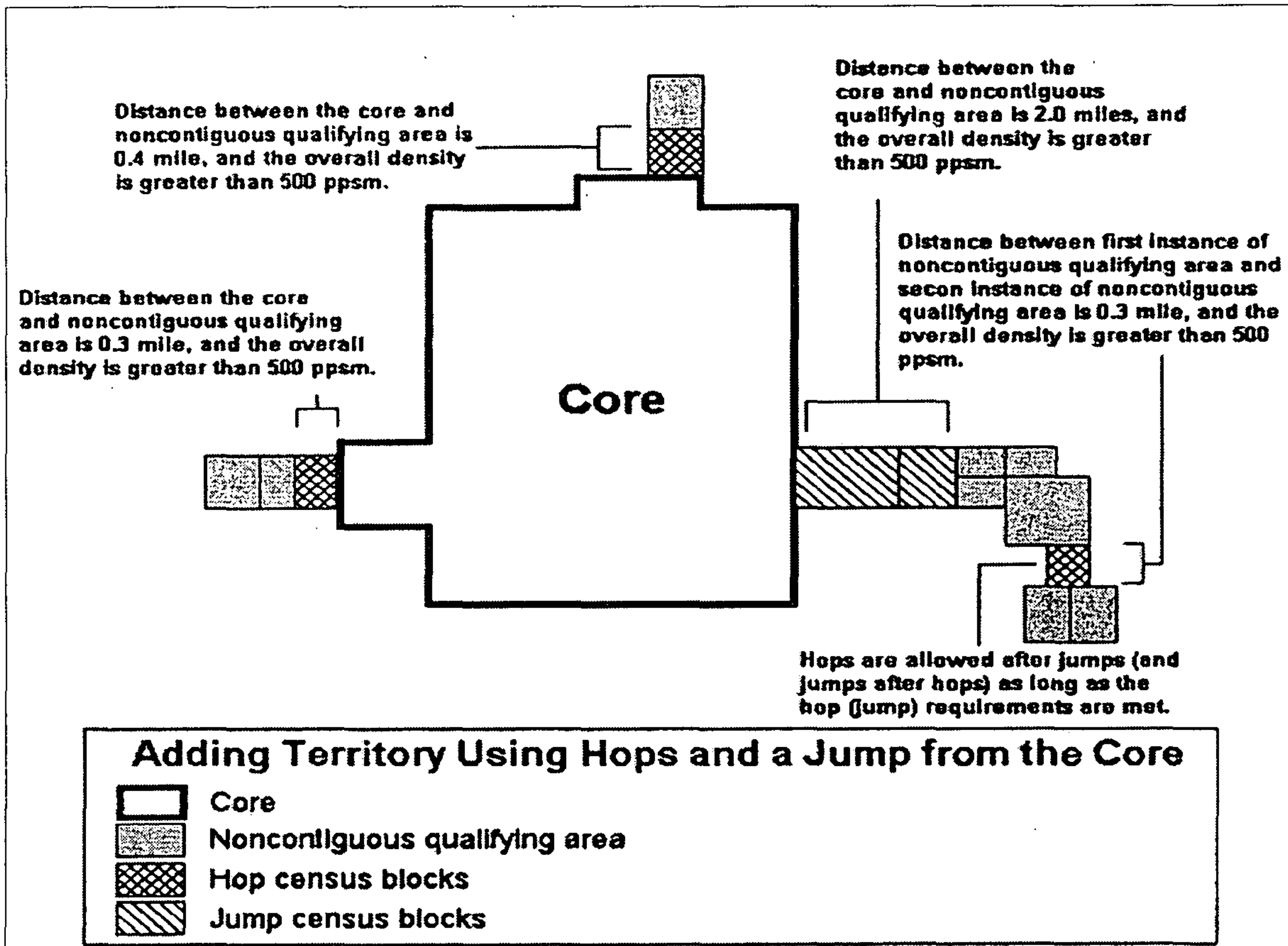
- ㉠ 초기핵심지역에 인접해 있지 않지만 인구밀도와 토지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인접해 있는 센서스블록그룹(인구밀도 500명/sq. mile 이상; 면적 2평방마일 미만)또는 센서스블록(인구밀도 500명/sq. mile 이상)
- ㉡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역을 초기핵심지역에 연결시키지만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인접해 있는 센서스블록(connecting census block(s) 또는 hop block(s); 이하, 연결블록이라 칭함)
- ㉢ ㉠과 ㉡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모든 구역

이러한 주변지역의 초기핵심지역에의 추가, 즉 hop connection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연결블록(hop block(s))이 초기핵심지역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단거리의 도로를 통해 0.5마일 이내로 관통될 수 있어야 한다(<그림 13>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미국 통계청은 다섯 가지의 최단거리의 도로를 시험한다.

- ㉠ 연결블록을 관통하는 도로가 지형지세적 요인이나 토지이용상의 요인으로 인해 거주가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해수, 하천, 호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을 횡단해서는 안되고, 해당 도로의 구간 양측에 위치한 센서스블록의 인구가 모두 0명이서도 안되고, 해당 도로가 최소한 1,000피트 이상의 거리로 해수(또는 호수나 하천)를 횡단해서도 안된다.
- ㉡ ㉠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위에서 기술한 초기핵심지역에 추가될 주변지역의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핵심지역과 인구밀도를 만족시키는 주변 구역 간의 거리가 5마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초기핵심지역으로부터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주변 구역까지 도로가 지나가는 거리 중에서 총 0.5마일 미만의 거리에서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 최단거리의 도로가 관통하는 연결블록은 초기핵심지역에 추가될 연결블록과 기준을 만족하는 센서스 블록그룹 및 블록들에 대한 총 인구밀도를 최대화시켜야 한다.
- ㉣ 연결블록, 기준을 만족하는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 그리고 연결블록 또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역으로 둘러싸인 모든 구역, 즉, 초기핵심지역에 추가될 구역의 총 인구밀도는 500명/sq. mile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을 만족시키는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의 인구총계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3> 참조).

이상의 hop connection을 통해, 조정된 초기핵심지역(adjusted initial cores)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핵심지역에, hop connection방법을 통해, 더 이상 추가될 구역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주변지역의 추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13> 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1)

자료: www.census.gov

② jump connection 방법

ho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주변지역의 추가가 완료되면, 새로운 핵심지역을 얻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인구가 1,500명 이상인 핵심지역(interim cores; 이하 잠정핵심지역)에 대해서는, jum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주변지역의 추가가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먼저 잠정핵심지역을 인구규모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 인구규모가 가장 큰 핵심지역부터 적용된다.

jum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인구가 1,500명 이상인 잠정핵심지역에 추가될 주변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잠정핵심지역에 인접해 있지 않지만 인구밀도와 토지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인접해 있는 센서스블록그룹(인구밀도 500명/sq. mile 이상; 면적 2평방 마일 미만) 또는 센서스블록(인구밀도 500명/sq. mile 이상)

- ㉠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역을 잠정핵심지역에 공간적으로 연결시키지만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인접해 있는 센서스블록(connecting census block(s) 또는 jump block(s); 이하, 연결블록이라 칭함)
- ㉡ ㉠과 ㉠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모든 구역

이러한 주변지역의 잠정핵심지역에의 추가, 즉 jump connection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연결블록(jump census block(s))이 초기핵심지역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단거리의 도로를 통해 0.5마일 이상 2.5마일 미만의 범위로 관통될 수 있어야 한다(<그림 13> 참조). 이와 관련해서 미국 통계청은 다섯 가지의 최단거리의 도로를 시험한다.
- ㉡ 연결블록을 관통하는 도로가 지형지세적 요인이나 토지이용상의 요인으로 거주가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해수, 하천, 호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을 횡단해서는 안되고, 해당 도로의 구간 양측에 위치한 센서스블록의 인구가 0명이어서도 안되며, 해당 도로가 최소한 1,000피트 이상의 해수(또는 호수나 하천)를 횡단해서도 안된다.
- ㉢ ㉡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위에서 기술한 초기핵심지역에 추가될 주변지역의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그림 14> 참조). 첫째,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주변의 구역과 초기핵심지역간의 거리가 5마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초기핵심지역으로부터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주변의 구역까지 도로가 지나가는 거리 중, 총 0.5마일 이상 2.5마일 미만의 거리에서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㉔ 최단거리의 도로가 관통하는 연결블록은 초기핵심지역에 추가될 연결블록과 기준을 만족하는 주변의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들에 대한 총 인구밀도를 최대화시켜야 한다.
- ㉕ 연결블록, 기준을 만족하는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 그리고 연결블록 또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역으로 둘러싸인 모든 구역, 즉, 잠정핵심지역에 추가될 구역의 총 인구밀도는 500명/sq. mile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을 만족시키는 센서스 블록그룹과 블록의 인구총계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4> 참조).

한 방향으로 jump connection 방법이 적용되면, 동일한 방향으로 더 이상의 jump connection의 적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jump connection의 적용 결과로서 추가된 영역이 50,000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잠정핵심지역이었다면, 동일방향의 jump connection은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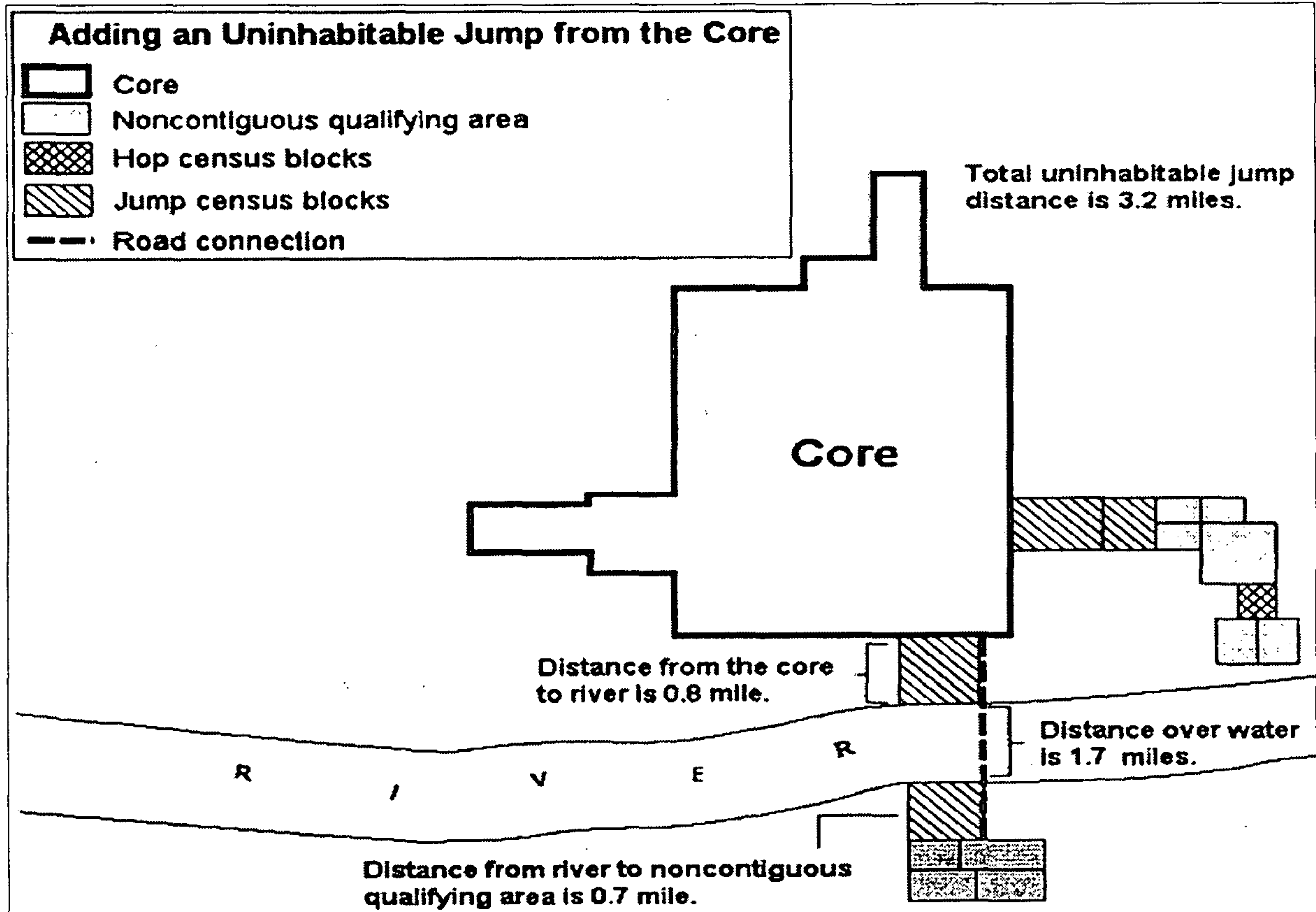
jump connection 방법을 통해 주변지역이 추가된 잠정핵심지역(adjusted interim cores)에도 hop connection 방법을 이용해서 주변지역이 편입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그 주변지역은, 앞서 기술한 hop connection 방법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그림 13>의 “Hops are allowed...are met.” 라는 설명이 들어간 부분 참조).

### ③ 주요공항의 추가 및 요약

jump connection과 hop connection을 통해, 잠정핵심지역에 모든 주변구역을 추가하고 난 뒤, 미국 통계청은 주요 공항에 대략 일치하는 센서스블록들을 추가한다. 이 경우, 해당 공항에 대략 일치하는 센서스블록들 중 최소한 한 개가 잠정핵심지역 안에 위치하거나 잠정핵심지역에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에서 도시화 지역(urbanized area)과 도시클러스터(urban cluster)의 설정은 핵심지역을 먼저 확정하고 그 핵심에 주변지역을 추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설정과정이 기본 공간단위(센서스 블록그룹 또는 블록)에 적용되는 인구밀도 기준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물론 총인구의 하한선이 도시지역(urbanized area와 urban cluster) 지정의 최종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그러한 도시지역의 설정은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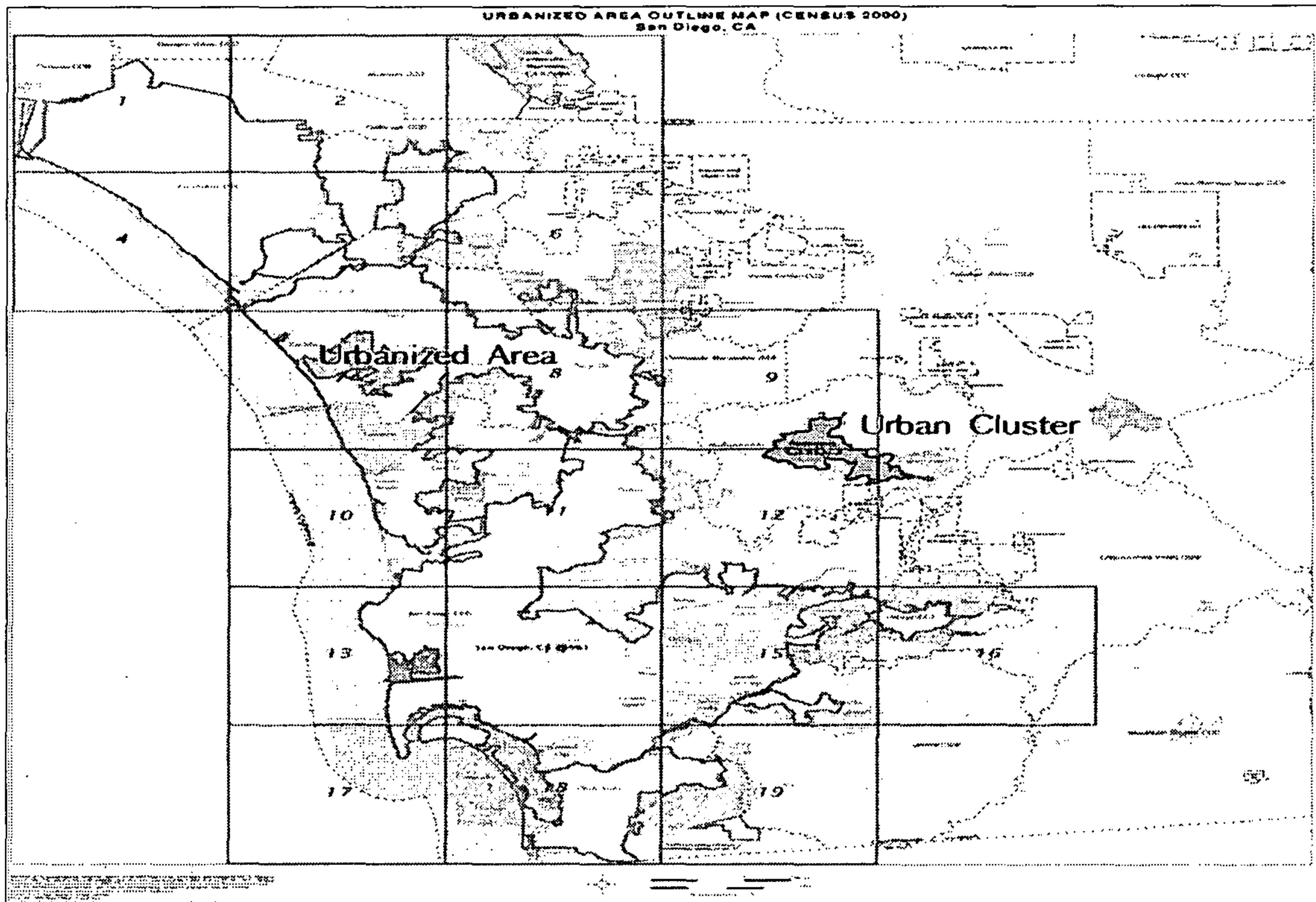
<그림 14> 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2)

자료: www.census.gov

### 3) 설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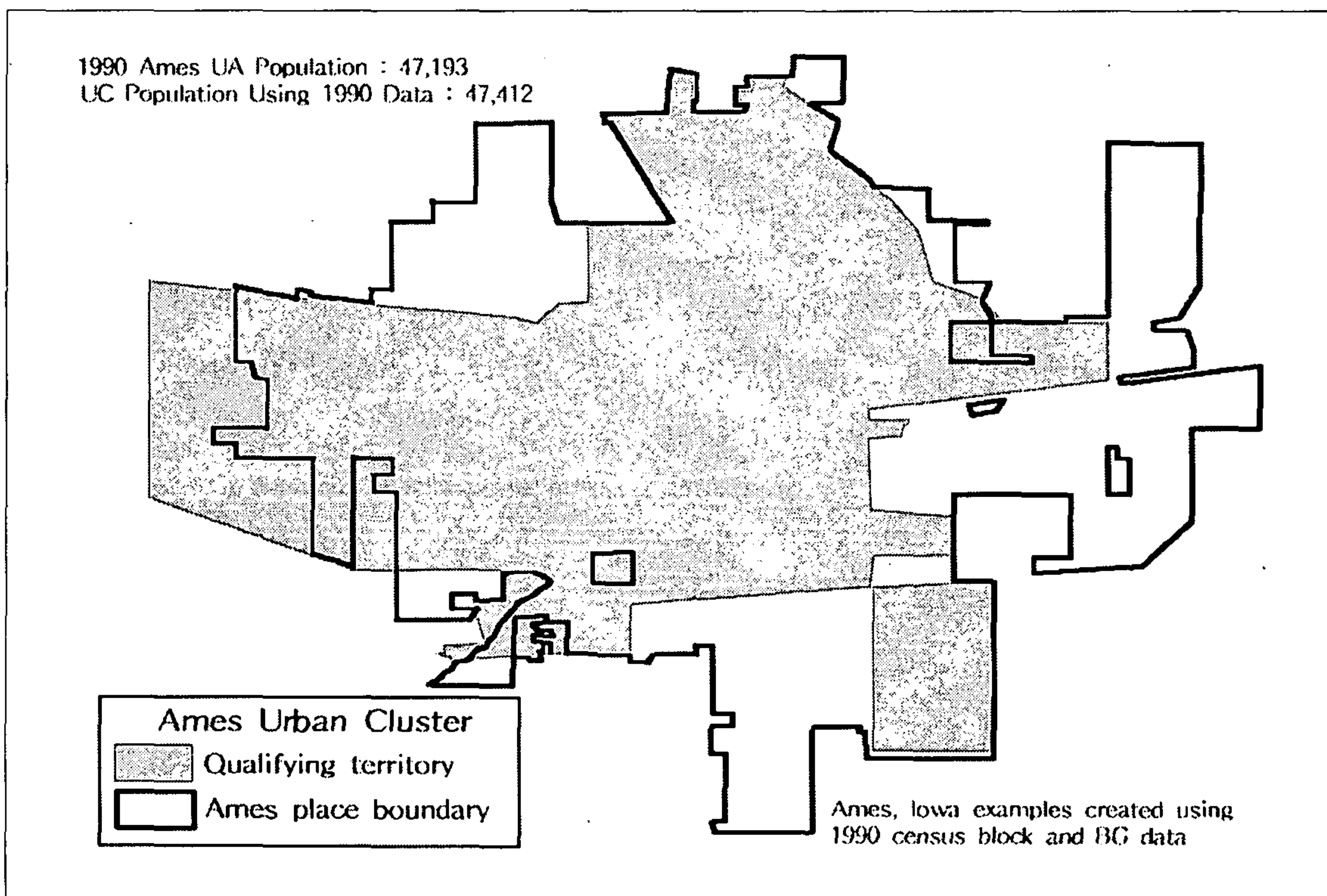
2000년 센서스 결과 미국 본토에 453개, 국외 13개 등 총 466개의 도시화지역이 설정되었는데, 1990년센서스의 405개 지역보다 61개 지역이 증가하였다. 도시클러스터는 3,172개로 나타나, 총 도시화 지역의 수는 3,638개이다.

도시화지역 및 도시클러스터의 설정 결과를 예시하면, <그림 15>, 그리고 <그림 16>과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 도시화지역 및 도시클러스터의 설정 현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15> 샌디에이고 지역의 도시화지역과 도시클러스터

자료: www.census.gov



<그림 16> Iowa주 Ames 도시클러스터

자료: www.census.gov

### 3. 일본의 인구집중지구

#### 1) 설정배경 및 목적

일본의 인구집중지구(densely inhabited district, DID)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다.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인구집중지구를 1960년 국세조사부터 설정해오고 있다.

일본의 국세조사 결과는 주로 광역지자체인 都道府縣 및 기초지자체인 市區町村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되는데, 시 및 구는 주로 시부이고 정 및 촌은 군부로서 시부와 군부 각각은 도시적 지역과 농촌적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1953년 정촌 합병 촉진법 및 1956년 신시정촌 건설 촉진법에 따라 많은 정촌이 시부지역에 포함되면서 농어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까지 시부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시부지역은 그 면적이 확대되는 반면에, 인구밀도는 현저히 낮아져 통계상 도시적 지역이라는 특징이 사라져 통계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총리부 통계국(현 총리성 통계국)에서는 1960년 국세조사에 「도시적 지역」의 특성을 명백히 하는 통계적 지역단위로 인구집중지구를 시구정촌 경계 내에 설정해서 국세조사결과를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집중지구는 해당 지구내 인구실태를 명확히 하는 통계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설정,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시가지재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교통계획, 환경위생대책, 방범·방재대책 및 각종 행정시책, 학술연구 및 시장조사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 2) 기본개념

이러한 인구집중지구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집중지구는 시구정촌의 경계내에 인구밀도가 높은(원칙적으로 4,000인/km<sup>2</sup> 이상) 기본단위구 등<sup>7)</sup>이 연접해서 그 인구가 5,000명이상이 되는 지역이다.

7) 기본단위구 뿐만 아니라, 기본단위구가 다수의 국세조사구를 보유할 경우, 그러한 국세조사구도

둘째, 준인구집중지구는 인구집중지구와 동일한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하는 기본단위구등이 공간상에 연접하고, 그 인구가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셋째, 연합인구집중지구는 13대도시(동경도 특별區部 및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각 구 단위로 설정된 인구집중지구가 각 구의 경계를 넘어서 인접 구의 인구집중지구와 공간적으로 연접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간상에 연접한 인구집중지구를 도시적 지역(시가지)으로서의 일체성, 정령지정도시로 되기 전후의 통계적·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하나의 지역단위를 말한다.

### 3) 설정기준

#### (1) 설정기준

2000년도 국세조사 현재의 인구집중지구의 설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인구밀도가 4,000인/km<sup>2</sup> 이상의 기본단위구 등이 시구정촌 경계 내에 서로 인접해 있고, 이러한 연접한 지역의 인구가 2000년 국세조사 시점에 5,00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인구집중지구 중에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학교, 연구소, 신사, 사찰, 운동장 등), 산업시설(공장, 창고, 사무소 등), 관공서, 그리고 공공·복지시설(병원, 요양소 등)이 있는 기본단위구의 경우, 이러한 시설의 면적을 제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인구밀도를 산출해서 인구밀도 기준을 적용한다.

또 이러한 시설의 면적이 기본단위구 총면적의 1/2 이상을 점할 경우, 해당 기본단위구가 인구밀도 기준을 만족하는 기본단위구 그룹에 인접해 있다면, 그러한 그룹에 편입시킨다.

#### (2) 기본단위구의 설정

기본단위구는 學校區, 町丁, 字 등 시구정촌을 세분한 지역에 관한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1990년 국세조사부터 도입된 지역단위이다.

즉 街區 방식에 따라 주거표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街區로 구 인구집중지구 설정의 기초단위가 된다.

확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街區방식에 준해 도로, 하천, 철도, 수로 등 지리적으로 명확하고 항구적인 시설 등에 따라 구획한다. 기본단위구는 거주표시가 새롭게 되는 지역 이외에는 고정적이다.

1990년부터 기본단위구를 이용한 집계를 하고 있는데, 1985년 이전에는 조사원 담당구역인 조사구별 집계가 이루어져 왔다. 1990년 이후 조사구의 설정도 기본단위구를 기초로 통상적으로 하나의 기본단위구를 기본으로 또는 2개 이상의 기본단위구를 합하여 하나의 조사구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은 기본단위구의 경우 이를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사구별 집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0년 이전까지의 인구집중지구의 설정은 기본단위구에 기초하지 않았고, 街區에 기초했다. 하지만 기본단위구의 구획이 기존의 街區를 원용하였기 때문에, 인구집중지구 설정을 위한 기초공간단위의 시계열적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다.

#### 4) 설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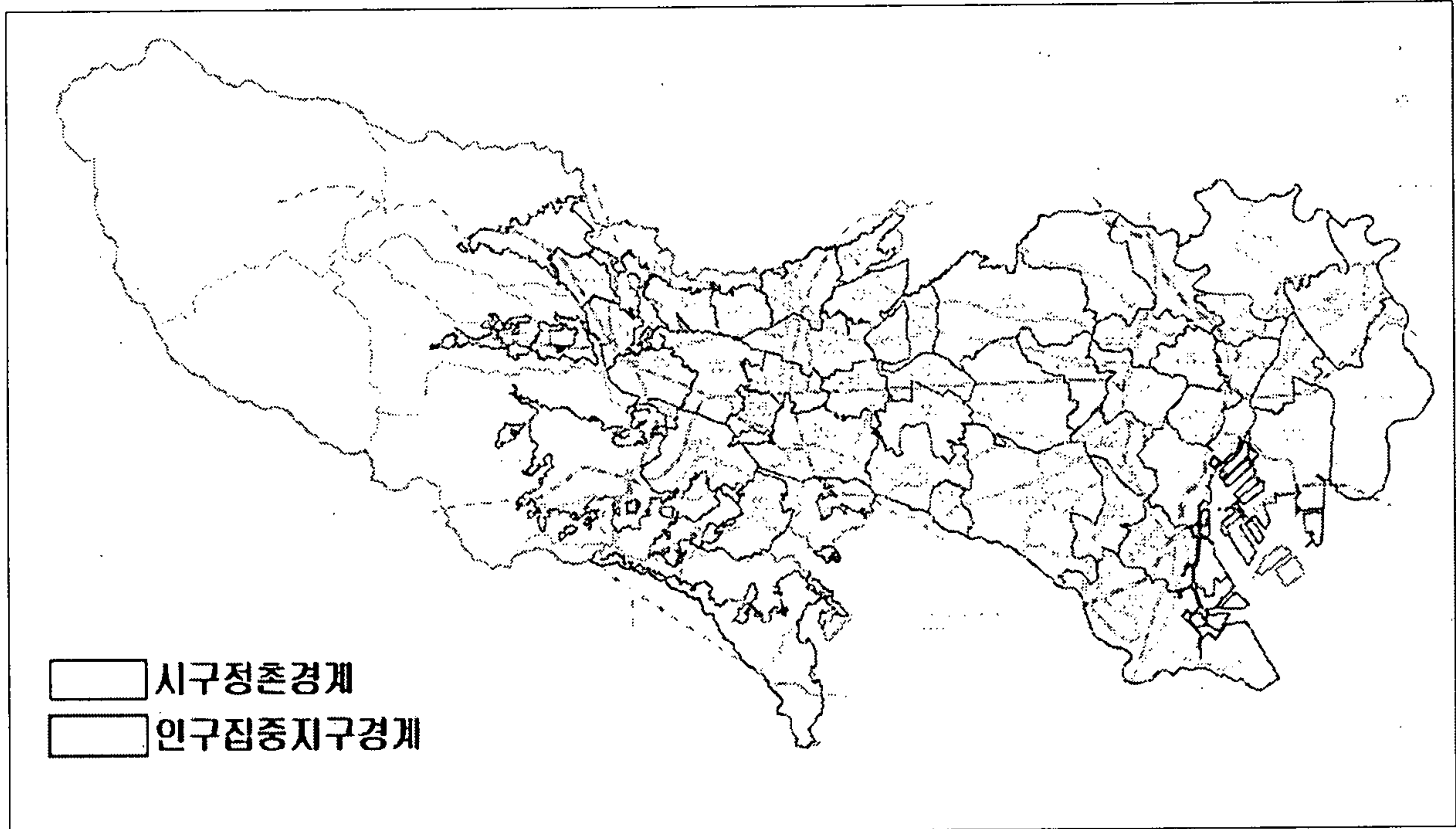
2000년 국세조사결과 전국 3,300여 시정촌 중 976개에 1,359지구의 인구집중지구(연합인구집중지구는 하나의 지구로 간주)가 설정되었다. 인구집중지구의 인구는 82,809,682명으로 총인구 126,925,843명의 65.2%에 달하고, 인구집중지구의 면적은 12,457km<sup>2</sup>로 일본 국토면적 377,873km<sup>2</sup>의 3.3%를 점유한다. 결과적으로 인구집중지구의 인구밀도는 1km<sup>2</sup>당 6,647명으로 나타났다.

〈표 12〉 일본의 인구집중지구 현황

년도	시정촌수	지구수	인구(증가율)	면적(km <sup>2</sup> )(증가율)	인구밀도(명/km <sup>2</sup> )
1960	763	891	40,829,991( - )	3,865( - )	10,563
1965	819	1,002	47,261,455(15.8)	4,605(19.1)	10,263
1970	911	1,156	55,966,885(17.5)	6,444(39.0)	8,690
1975	931	1,257	63,822,648(14.0)	8,275(28.4)	7,712
1980	973	1,320	69,934,854( 9.6)	10,015(21.0)	6,983
1985	986	1,368	73,344,121( 4.9)	10,571( 5.6)	6,938
1990	1,002	1,373	78,152,452( 6.6)	11,732(11.0)	6,661
1995	1,003	1,389	81,254,670( 4.0)	12,261( 4.5)	6,627
2000	976	1,359	82,809,682( 1.9)	12,457( 1.6)	6,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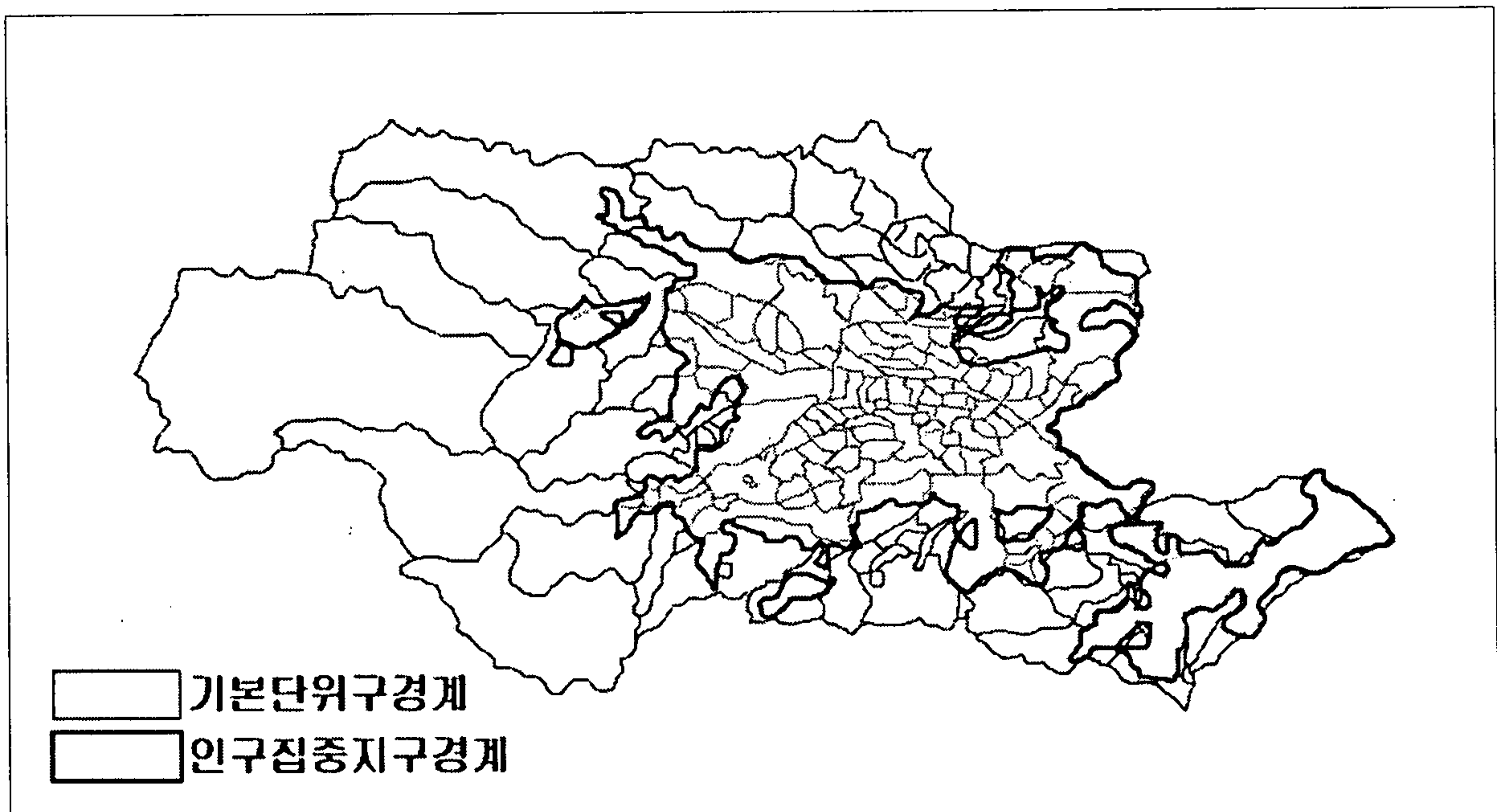
자료: 總務省統計局, 「平成12年國勢調査 編輯・解説シリーズ:我が國の人口集中地區-人口集中地區別人口・境界圖」

<그림 17>, <그림 18>, 그리고 <표 13>은 동경도의 인구집중지구 설정현황을 보여 준다.



<그림 17> 일본 동경도 인구집중지구별 설정사례

자료: www.stat.go.jp



<그림 18> 일본 동경도 팔왕자시 인구집중지구 설정사례

자료: www.stat.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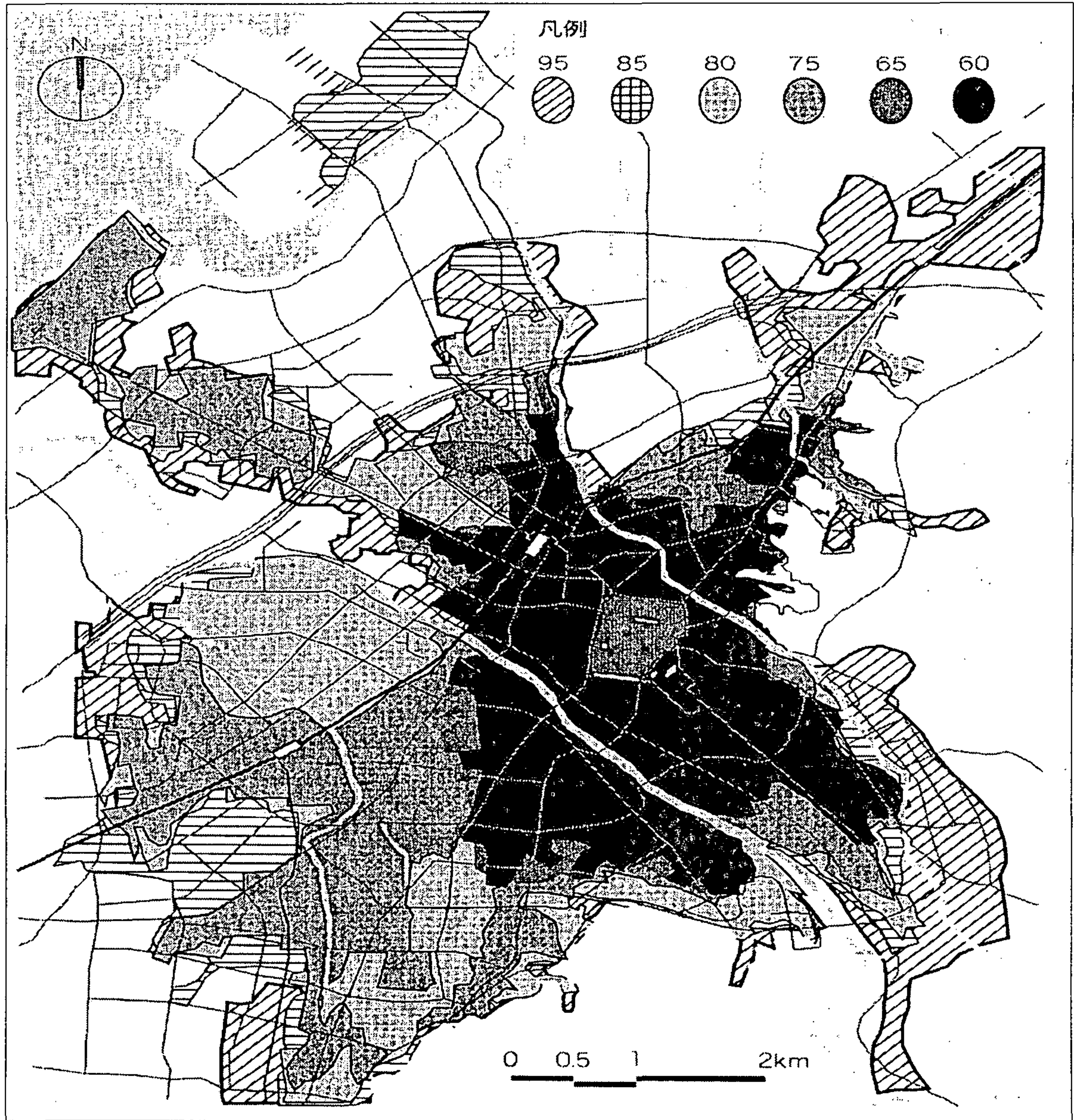
〈표 13〉 일본의 동경도 인구집중지구 현황

행정구역명	총인구	행정구역면적(km <sup>2</sup> )	DID면적(km <sup>2</sup> )	DID인구밀도(인/km <sup>2</sup> )	DID인구비율(%)
천대전구	36,035	11.64	11.6	3,100	100.0
중앙구	72,526	10.15	10.2	7,150	100.0
항구	159,398	20.34	20.3	7,840	100.0
신숙구	286,726	18.23	18.2	15,730	100.0
문경구	176,017	11.31	11.3	15,560	100.0
대동구	156,325	10.08	10.1	15,510	100.0
묵전구	215,979	13.75	13.8	15,710	100.0
강동구	376,840	39.44	39.2	9,550	100.0
품천구	324,608	22.72	22.7	14,290	100.0
목흑구	250,140	14.70	14.7	17,020	100.0
대전구	650,331	59.46	59.5	10,940	100.0
세전곡구	814,901	58.08	58.1	14,030	100.0
시부야구	196,682	15.11	15.1	13,020	100.0
중야구	309,526	15.59	15.6	19,850	100.0
삼병구	522,103	34.02	34.0	15,350	100.0
풍도구	249,017	13.01	13.0	19,140	100.0
북구	326,764	20.59	20.6	15,870	100.0
황천구	180,468	10.20	10.2	17,690	100.0
판교구	513,575	32.17	32.2	15,960	100.0
연마구	658,132	48.16	48.2	13,670	100.0
족립구	617,123	53.20	59.2	11,600	100.0
갈식구	421,519	34.79	34.8	12,120	100.0
강호천구	619,953	49.76	49.8	12,460	100.0
팔왕자시	536,046	186.31	58.2	8,040	87.2
입천시	164,709	24.38	22.7	7,160	98.6
청매시	141,394	103.26	17.4	6,210	76.3
부중시	226,769	29.34	29.3	7,730	100.0
소도시	106,532	17.33	14.6	7,270	99.6
조포시	204,759	21.53	21.5	9,510	100.0
정전시	377,494	71.62	41.5	8,290	91.1
소금정시	111,825	11.33	11.3	9,870	100.0
소평시	178,623	20.46	20.5	8,730	100.0
일야시	167,942	27.53	24.5	6,820	99.4
동촌산시	142,290	17.17	16.5	8,590	99.9
국분시	111,404	11.48	11.5	9,700	100.0
국립시	72,187	8.15	6.7	10,340	96.4
복생시	61,427	10.24	9.5	6,490	99.9
박강시	75,711	6.39	6.4	11,850	100.0
동대화시	77,212	13.54	9.8	7,860	99.3
청뢰시	68,037	10.19	7.7	8,340	94.2
동구유미시	113,302	12.92	12.9	8,770	100.0
무장촌산시	66,052	15.37	10.6	5,900	94.2
다마시	145,862	21.08	16.1	8,760	96.6
도성시	69,235	17.97	7.1	8,170	83.9
우촌시	56,013	9.91	8.8	6,260	98.7
아끼루노시	78,351	73.34	9.9	6,080	76.6
서수정	32,892	16.83	6.3	3,620	69.6
히노데정	16,613	28.08	1.5	5,710	50.2

자료: www.stat.go.jp



<그림 19>는 金澤市에서 1960년부터 1995년까지 시가지(인구집중지구)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9> 일본의 金澤市 인구집중지구 년도별 확장사례

### 5) 인구집중지구 보고서의 출간

2000년 국세조사결과에 의한 인구집중지구에 대한 인구, 면적 및 경계도에 대한 결과를 별도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아울러 인구집중지구별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및 면적변화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4. 오스트레일리아의 Urban Centre/Locality

### 1) 설정목적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 및 도시화지역인 urban centre/locality는 도시지역 센서스 통계 생산을 위해 설정된다. 그리고 센서스의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자와 후자의 큰 차이는 인구규모이다. 전자는 1,000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반면, 후자는 200명 이상 999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다. urban centre/locality 설정의 단위지역은 census collection district(이하 CD로 칭함)이다.

CD는 원칙적으로 센서스 조사원이 약 10일 이내로 센서스 조사표를 배포하고 수거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항구적인 지형지물이나 도로 또는 하천 등으로 그 경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또 통계 발간의 기본단위로서도 기능한다(www.abs.gov.au 참조). 이점에서 CD는 일본의 기본단위구, 미국의 센서스블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단위구와 유사하다. 2001년도 센서스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37,209개의 CD가 설정되었다.

### 2) 원칙적인 설정기준

원칙적으로 설정의 기초 공간단위인 각 CD의 인구밀도와 토지이용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구규모에 따라 urban centre/locality의 설정기준이 상이하다.

앞서 본 해외사례들과 달리, 총인구가 도시지역 지정의 최종기준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직전 센서스에서 설정된 urban centre/locality를 인구규모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 (1) 인구 20,000명 이상의 Urban Centre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도시 CD 및 기타 도시구역(other urban areas)으로 구성되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CD가 도시(urban)로 분류된다.

- ①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구밀도가 1 평방 킬로미터당 200명 이상인 CD
- ② 도시로 분류된 CD와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시에 공장, 공항, 소규모 스포츠시설, 묘지, 호텔, 감옥, 군부대시설, 연구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로 구성되는 CD
- ③ 도시로 분류된 CD에 의해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대규모 스포츠시설, 대규모 공원, 폭발물 취급 및 탄약 시설 또는 도살장 관련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구성되는 CD
- ④ 도시로 분류되는 CD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모든 구역
- ⑤ 인구 20,000명 이상의 urban centre가 또 다른 도시구역과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떨어진 거리가(최단거리 철로나 또는 도로의 길이로 측정됨) 3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연결 CD(a connecting CD)를 도시로 분류함으로써,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취급한다.

## (2) 인구 1,000명 이상 19,999명 이하인 Urban Centre

주관적으로 그 경계가 설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이 이루어진다.

- ① 항공사진 판독, 현장답사, 기타 정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계가 설정된다.
- ②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모든 도시용도의 토지, 그리고 공간상에 인접해 있지 않지만 근접해 있는 모든 도시용도의 토지를 포괄한다.
- ③ 인구가 20,000명에 육박하는 urban centre의 경우 인구 20,000명 이상의 urban centre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이 적용된다.

## (3) Locality

인구 1,000명 이상 19,999명 이하인 Urban Centre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그 경계가 설정된다.

- ① 항공사진 판독, 현장답사, 다른 모든 정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계가 설정된다.

- ② 다음 센서스까지 200명 이상 999명 이하의 비농업인구(non-farm population)를 가져야 한다.
- ③ 식별가능한(discernible) 가로(urban streets)가 있어야 하고, 점유된(occupied) 비농가 주택(non-farm dwellings)이 40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식별가능한, 인구의 중심(nucleus of population)이 있어야 한다.

### 3) 보완적인 주관적 설정기준

앞서 보았듯이, 20,000명 미만의 urban centre와 locality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이용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된다.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경계설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기개발된(built-up) 구역을 가능한 포괄하기 위해, 경계를 넓게 설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① 도시용도의 토지의 공간적 인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된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municipal boundary) 내에 포함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된 경계 밖의 면적과 인구가 소규모일 경우, 행정구역 경계가 대신 활용된다.
- ③ 이전에 설정된 경계는 시계열상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 ④ 토지이용을 고려할 때,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이상의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형지세적 경계선(topographic boundaries)이 활용되어야 한다.

## 5. 소결 및 시사점

### 1) 요약

이상에서 논의된 해외사례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외국의 도시지역 설정사례를 설정의 기초 공간단위, 그러한 기초공간단위에 적용되는 기준(인구밀도 또는 토지이용), 인구기준, 도시지역 설정과 관련된 공간적 연결성 기준, 그리고 활용분야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잉글랜드·웨일즈의 urban settlement를 제외하면, 모두 각국의 통계생산의 기초 공간단위(오스트레일리아의 census collection districts는 통계조사 공간단위로서도 기능) 내지는 (준)항구적 또는 가시적 지형지물에 의해 구획된 공간단위를 도시화지역 설정의 기초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준항구적 지형지물(예: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구획되었고 통계생산의 최소단위로서 활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초단위구가 도시화지역 설정의 기본공간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시사점

해외사례의 고찰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지역 및 도시화지역 설정을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간적 연결성의 정의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적으로 연결해 있고(contiguous) 일정기준(인구밀도의 하한선 또는 토지이용 상황)을 만족하는 일단의 기초공간단위가 도시 및 도시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이 경우, 공간적 연결성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미국(hop connection과 jump connection 방법의 경우)과 오스트레일리아(인구 20,000명 이상의 urban centre)에서처럼 구체적인 임계거리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는 일본에서처럼 물리적 연결성만으로 공간적 연결성을 정의할 수도 있다.

〈표 14〉 도시화지역 설정의 해외사례 비교

	urban settlement	settlement	urbanized area, urban cluster	인구집중지구	urban centre/locality
시행국가	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기초 공간단위	사실상 토지 필지 <sup>a)</sup>	우편번호구역 (postcodes)	census block groups; census blocks	기본단위구 등	census collection districts
인구밀도 기준 <sup>b)</sup>	해당 사항 없음	주거지주소밀도 : 2.1/ha 비주거지주소밀도: 0.1/ha	중심부: 1,000명/sq.mile 주변부: 500명/sq.mile	4,000명/km <sup>2</sup>	200명/km <sup>2</sup>
토지이용 기준 <sup>b)</sup>	일차적 기준으로 활용 <sup>c)</sup>	간접적으로 활용 <sup>d)</sup>	활용하지 않음	보완기준으로 활용	보완기준으로 활용
총 인구	1,000명 이상 <sup>e)</sup>	500명 이상	urbanized area: 50,000명 이상 urban cluster: 2,500명 이상 50,000명 미만	5,000명 이상; 중인구집중지구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urban centre: 1,000명 이상 locality: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공간적 연결성의 기준	물리적 연결성과 임계거리(200m) <sup>f)</sup>	물리적 연결성	물리적 연결성과 임계거리 (0.5mile 이내 또는 0.5mile 이상 2.5mile 미만)	물리적 연결성	물리적 연결성과 임계거리 (3km미만)
활용분야	통계자료생산, 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 공간단위로서 기능	통계자료생산, 시가화구역의 범위 지정, 정부기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시지역 정의에 편의 제공	소지역 통계자료생산, 각종 계획정책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및 대상지역 선정	통계자료 생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설정, 도시계획 및 각종 정책 집행	도시지역 센서스통계 생산

- a) 잉글랜드·웨일즈에서 urban settlement를 설정할 때, census enumeration districts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도시용 토지구역에 인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될 뿐임
- b) 기초공간단위에 적용되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 기준임
- c) 도시용 토지구역(urban land) 설정에 활용
- d) 비주거지 주소밀도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설정기준으로 활용
- e) 면적기준(20ha이상)도 적용됨
- f) 도시용 토지구역에 적용

## (2) 도시 및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공간단위에 적용할 기준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 및 도시화 지역이 기초공간단위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잉글랜드·웨일즈 제외).

인구 집계를 가능케 하는 공간단위(예: 미국의 census block group; 일본의 기본단위 구; 오스트레일리아의 census collection district)를 도시지역 설정의 기초공간단위로 이용할 때, 그러한 기초공간단위에 미국에서처럼 인구밀도의 하한선만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처럼 인구밀도 기준을 적용한 뒤, 토지이용상황 및 그에 대응하는 지표를 기준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인구밀도 기준과 관련해서, 인구밀도의 계산에 미국에서처럼 인간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예: 호수, 하천 등)을 제외한 면적을 사용할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총인구의 하한선

앞서 보았듯이, 총인구의 하한선이 도시 및 도시화지역 설정의 최종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일정기준을 만족하고 동시에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또는 기준에 의해 공간적 인접성이 인정되는) 기초공간단위 그룹 중에서 일정 이상의 인구를 갖는 그룹을 도시지역 및 도시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일본 인구집중지구에서는 5,000명 이상, 미국 urbanized areas의 경우 50,000명 이상, 잉글랜드·웨일즈의 urban settlement는 1,000명 이상,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settlement는 500명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시 및 도시화지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최종기준으로서 총인구의 하한선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4)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와의 연계

도시 및 도시화지역과 행정구역 간의 연계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 및 도시화지역의 설정이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도시지역(settlements)에 한해서,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위지역(localities)으로 구분한다. 일본에서는 인구집중지구의 설정이, 연합인구집중지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 기본 및 관리 계획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별 도시화지역의 면적 및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지역을 행정구역경계를 이용해서 하위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는 동일한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다수의 도시지역에 동일한 행정구역코드를 공유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제4장 도시화지역 설정기준 및 현황 검토

### 1.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 검토

#### 1) 도시화지역 설정의 최소공간단위 검토

우리나라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최소공간단위를 몇 가지로 검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시 사용한 최소공간단위인 기초단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2) 도시화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검토

도시화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도시화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도시화지역을 시가지(built-up area)란 개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가지란 개념으로 볼 때, 계획시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이 있으며, 이외에 토지이용특성을 조사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기초단위구별 특성현황 자료가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통상적으로 계획시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는 향후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학교 등의 교육연구연수시설, 운동시설 등이 녹지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한 측면을 지닌다.

그리고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자료도 시가지 현황을 어느 정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으나 대규모로 택지가 조성중인 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지역에는 미건축상태의 토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구 측면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시가지의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구득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인구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인구밀도와 가구밀도 지표가 있는데, 가구밀도 보다는 외국(예: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흔히 인구밀도를 사용하였기에 이를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건물밀도를 대표 지표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도시지역 설정의 기본단위인 기초단위구별 자료 구득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건물수밀도와 건물바닥면적을 검토하였다.

건물수밀도의 경우 단독주택지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으나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지역, 상가지역 등은 단위 부지당 건물 棟數가 적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건물바닥면적비율을 토지이용 특성의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건물바닥면적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을 보완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지표는 토지종합정보망의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도시계획시설 정보 중에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한 것이다. 즉 공원(도시자연공원과 묘지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운동장, 공공시설(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시장 및 유통업시설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시가지로 개념으로 보는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될 지표(인구와 토지이용측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인구 및 토지이용 지표 검토 및 선정

구분	지표	기준	평가	자료출처
인구측면	인구밀도	인구/면적(k㎡)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수밀도	가구수/면적(k㎡)	인구밀도와 유사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구주택 총조사
토지이용측면	건물바닥면적비율	건물바닥면적/면적(k㎡)	용적률 개념의 건물밀도 보다는 부적합하지만 대용 지표로 사용이 가능	토지종합정보망(수치지형도)
	건물수밀도	건물 수/면적(k㎡)	공동주택 등의 지역에 부적합	토지종합정보망(수치지형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공공시설부지면적/면적(k㎡)	도시적 토지이용에 대한 추가 지표로 적합	토지종합정보망(용도지역지구DB)

### 3) 도시화지역 구획방법의 검토

외국의 경우 도시화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화지역 설정기준에 만족하는 기초공간단위(예: 미국의 센서스 블록, 일본의 기본단위구 등)가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과 그러한 일단의 기초공간단위로 둘러싸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우선 선정된 지역으로부터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도시화지역 설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초공간단위를 도시화지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나라별로 약간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거리가 다소 떨어진 지역을 임계거리 기준을 적용해서 포함시키지만, 일본은 공간적 연결성을 물리적 연결성으로만 정의함으로써 그러한 기초공간단위를 배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도시화지역인 인구집중지구 구획사례를 고려하여 시가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만족하는 기초단위구가 연속되는 지역 및 이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에서와 같이 임계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임계거리의 설정에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같은 임계거리 적용시, 도시화지역 설정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도시적 경관이 비교적 미약한 기초단위구도 도시화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

### 4) 도시화지역 최소 인구규모의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인구규모 이상을 도시화지역으로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영국 도시화지역은 20ha 이상 되는 도시용 토지구역으로서 인구가 1,000명 이상일 경우, 도시화지역(urban settlement)으로 지정한다. 미국 도시화지역의 경우 인구규모가 2,500명 이상이고 50,000명 미만인 지역을 도시클러스터(urban cluster)로, 50,000명 이상인 지역을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으로 지정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000명 이상 되는 지역을 urban centre,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지역을 locality로 설정한다. 일본의 경우 5,0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을 인구집중지구로,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을 준인구집중지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총인구 기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시화 지역 인구규모를 近隣住區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스의 도시 및 건축학자인 독시아시스(C. A. Doxiadis)는 도시발전단계상 1,500명 이상이고 면적이 0.2km<sup>2</sup> 이상 되는 지역을 근린주구로 보고 있으며<sup>8)</sup>, 영국에서는 2,000명에서 5,000명 사이를 근린주구로 보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지구 개발시 근린주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경 400m이내의 지역으로 공동주택 1,000에서 3,000가구(인구 3,000명에서 9,000명) 규모를 의미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우리나라에서 면급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중심지 인구밀도가 40/ha 이상인 부락이 연담되어 인구가 3,000명 이상인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수립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기 외국의 도시화지역 하한규모와 근린주구의 하한규모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독시아시스(C. A. Doxiadis)에 의한 근린주구의 최소규모인구인 1,500명을 하한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1,500명이상 또는 3,000명이상 또는 5,000명이상 또는 10,000명이상 등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5) 설정 검토 요약

이제까지 논의된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지표 검토 내용

구 분	내 용
기초단위구의 도시 특성 지표	① 인구밀도 ② 건물바닥면적비율 ③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도시화지역 구획방법	도시화지역 특성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기초단위구들 및 그 내부에 둘러싸인 기초단위구들
도시화지역 최소인구규모	1,500명 이상이 나타나는 기초단위구들

8) 김혜천 외, 2004, 도시: 현대 도시의 이해, 대왕사, pp. 35-36

9) DETR, 1999, Urban Renaissance, Urban Task Force에서는 자택에서 200m이내의 지역으로 일상생활용품점, 초등학교 등이 입지하는 지구를 근린주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0) 건설교통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서는 근린주구를 당해 주민이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단지로 사용하고 있다.

## 2. 사례지역의 선정 및 일반현황 검토

### 1) 사례지역의 선정 및 일반현황 검토

자료 구득상의 한계 내에서 광주전남지역을 1차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 중에서 광역시, 도농복합시, 군의 3개 유형별로 하나의 지역씩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광역시는 광주광역시를 선정하였고, 도농복합시는 여수, 광양, 순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순천을 선정하였으며, 군은 영암군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최소공간단위로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설정한 기초단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사례지역별로 인구변화, 용도지역 현황, 토지특성 현황을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례지역별 인구변화

인구변화는 도시화지역이 얼마만큼 확대되는 지를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례지역별로 인구변화를 살펴보았다.

#### (1) 광주광역시의 인구변화

광주광역시 전체의 경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인구가 18.8%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표 17〉 참조).

구별로 보면 동구와 서구가 각각 39.3%, 6.9% 감소한 반면에 서구와 남구는 33.3%, 23.1%로 증가하였고, 광산구는 143.5%로 크게 증가하여 서구, 남구, 광산구에서 도시화지역이 크게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표 17〉 광주광역시 인구변화

구분	1990년 인구	2000년 인구	1990-2000년 인구증가율	2000년 인구밀도
광주광역시 계	1,139,003	1,352,797	18.8%	2,698
동구	191,843	116,519	△ 39.3%	2,384
서구	210,677	280,810	33.3%	6,004
남구	246,423	229,491	△ 6.9%	3,758
북구	388,206	477,962	23.1%	3,923
광산구	101,854	248,015	143.5%	1,113

## (2) 순천시의 인구변화

순천시의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인구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1% 감소하였다(〈표 18〉 참조).

인구변화를 洞部(舊순천시)와 읍면별로 보면, 洞部와 해룡면은 각각 18.1%, 47.4%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읍면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18〉 순천시 인구변화

구분	1990년 인구	2000년 인구	1990-2000년 인구증가율	2000년 인구밀도
순천시 계	271,558	265,930	△ 2.1%	293
洞部	167,214	197,536	18.1%	2,222
승주읍	10,193	4,380	△ 57.0%	84
주암면	12,916	5,394	△ 58.2%	47
송광면	4,265	2,632	△ 38.3%	24
외서면	3,669	1,414	△ 61.5%	40
낙안면	10,248	4,998	△ 51.2%	79
상사면	5,157	2,986	△ 42.1%	49
해룡면	15,530	22,897	47.4%	492
서면	12,363	8,505	△ 31.2%	82
황전면	10,406	4,665	△ 55.2%	47
월등면	6,173	2,561	△ 58.5%	58

## (3) 영암군의 인구변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의 영암군 인구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12.3% 감소하였다(〈표 19 참조〉). 읍면별로 보면 삼호면만 86.6%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읍면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19〉 영암군 인구변화

구분	1990년 인구	2000년 인구	1990-2000년 인구증가율	2000년 인구밀도
영암군 계	68,833	60,343	△ 12.3%	111
영암읍	11,762	10,117	△ 14.0%	170
덕진면	3,994	2,259	△ 43.4%	87
금정면	4,000	2,384	△ 40.4%	33
신북면	7,947	5,874	△ 26.7%	119
시종면	8,004	5,227	△ 34.7%	92
도포면	4,624	3,207	△ 30.6%	94
군서면	5,742	4,278	△ 25.5%	77
서호면	3,759	2,556	△ 32.0%	61
학산면	5,165	3,935	△ 23.8%	66
미안면	4,513	3,155	△ 30.1%	98
삼호면	9,323	17,398	86.6%	307

## 3) 사례지역별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현황 검토

시가지형성의 기초가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현황을 기초단위구별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설정된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을 살펴보았다.

용도지역현황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하나의 기초단위구에 여러 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초단위구별로 가장 많이 점유하는 용도지역을 해당 기초단위구의 용도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토지특성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여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거지역, 농어촌산간지역, 섬지역으로 구분된다(표 20) 참조). 이중 농어촌산간지역과 섬지역은 하나로 합쳐 살펴보았다.

〈표 20〉 기초단위구의 토지특성분류

대분류	분류기준	소분류
① 주거지역	주택이 70% 이상인 지역	① 단독주택지역 ② 아파트지역 ③ 공동주택지역 ④ 주택혼합지역
② 준주거지역	주택이 30~70%인 지역	① 단독주택, 상가복합지역 ② 공동주택, 상가복합지역 ③ 단독주택, 공장복합지역 ④ 공동주택, 공장복합지역 ⑤ 기타 복합지역
③ 비주거지역	주택이 30% 미만인 지역	① 상가밀집지역 ② 공공시설지역 ③ 문화시설지역 ④ 공장밀집지역 ⑤ 상가,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복합지역
④ 농어촌, 산간지역	농경지, 산, 하천, 해안 등이 70% 이상인 지역	① 평야지역 ② 준평야지역 ③ 산간지역 ④ 해안지역
⑤ 섬지역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① 섬지역

자료 : 통계청 내부자료

### (1) 광주광역시의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현황

광주광역시의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6,623개(77.3%)의 기초단위구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나타났고 679개(7.9%)의 기초단위구가 상업지역안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1.4%인 121개의 기초단위구가와 13.3%인 1,132개의 기초단위구가 각각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기초단위구는 0.1%인 11개이다. 특히 광산구는 녹지지역인 기초단위구의 비율이 35.7%로 높게 나타나 도시화지역의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표 21〉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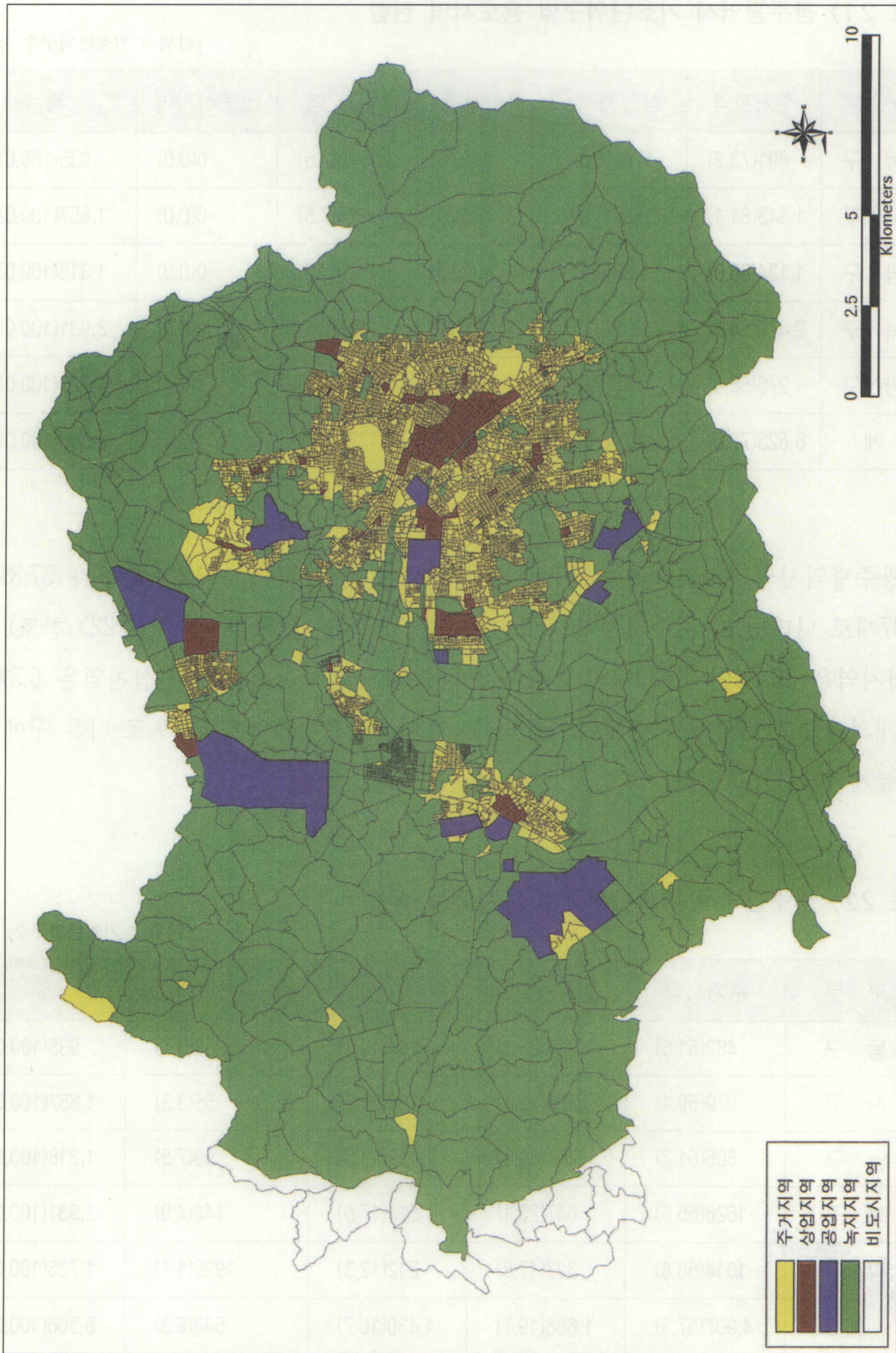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계
동 구	691(73.9)	174(18.6)	0(0.0)	70(7.5)	0(0.0)	935(100.0)
서 구	1,343(81.1)	183(11.0)	7(0.4)	124(7.5)	0(0.0)	1,657(100.0)
남 구	1,134(86.0)	36(2.7)	16(1.2)	132(10.0)	0(0.0)	1,318(100.0)
북 구	2,479(84.6)	238(8.1)	23(0.8)	191(6.5)	0(0.0)	2,931(100.0)
광산구	976(56.6)	48(2.8)	75(4.3)	615(35.7)	11(0.1)	1,725(100.0)
계	6,623(77.3)	679(7.9)	121(1.4)	1,132(13.2)	11(0.1)	8,566(100.0)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은 주거지역인 기초단위구가 57.3%인 4,907개로 나타났고, 준주거지역 기초단위구는 19.7%인 1,686개이다(〈표 22〉 참조). 비주거지역은 16.7%인 1,430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되고, 농어촌산간섬지역은 6.3%인 543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광산구는 농어촌산간섬지역이 11.1%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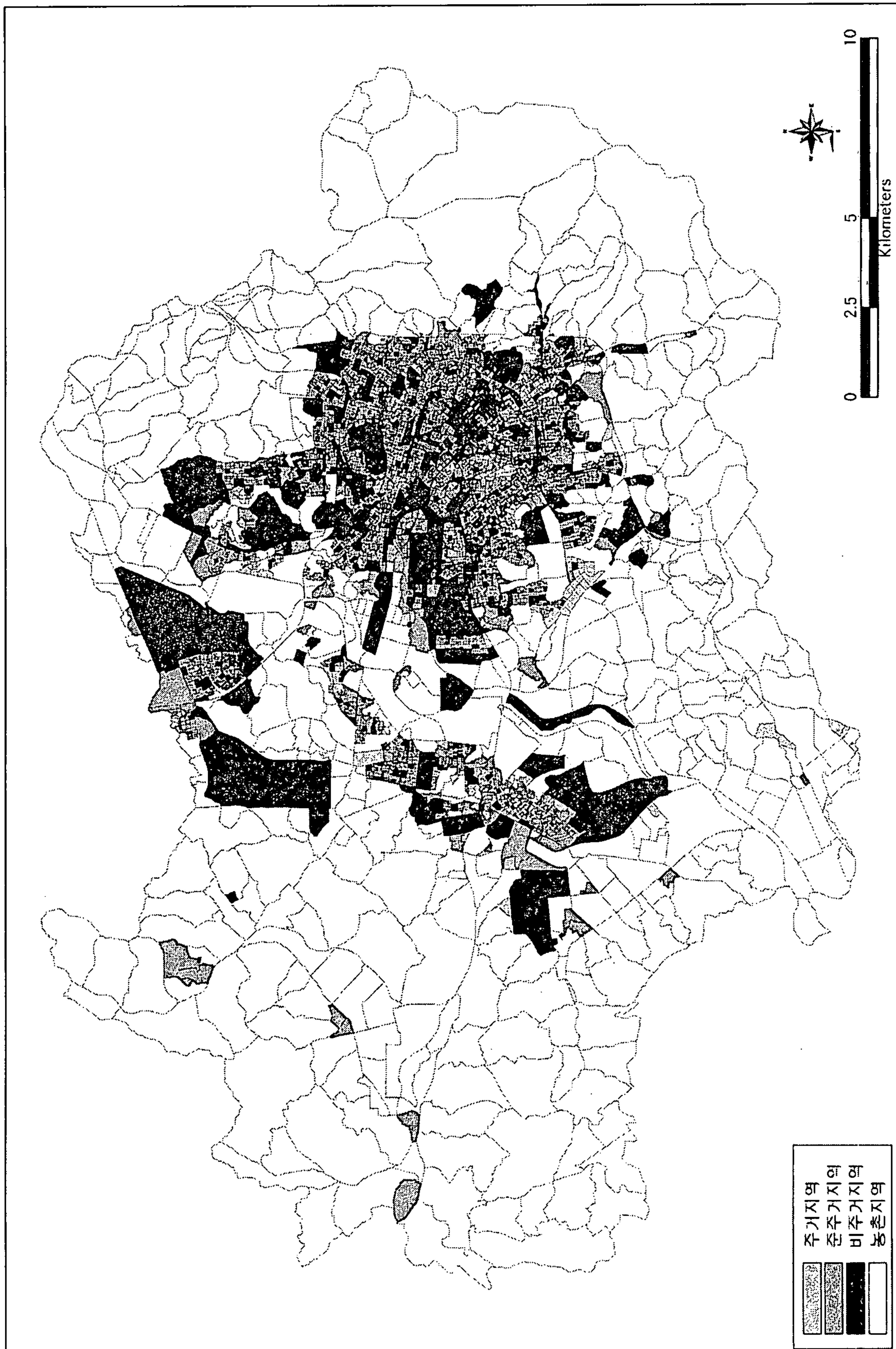
〈표 22〉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 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거지역	농어촌산간섬지역	계
동 구	482(51.6)	216(23.1)	184(19.7)	53(5.7)	935(100.0)
서 구	979(59.1)	255(15.4)	368(22.2)	55(3.3)	1,657(100.0)
남 구	806(61.2)	261(19.8)	152(11.5)	99(7.5)	1,318(100.0)
북 구	1626(55.5)	647(22.1)	514(17.5)	144(4.9)	2,931(100.0)
광산구	1014(58.8)	307(17.8)	212(12.3)	192(11.1)	1,725(100.0)
계	4,907(57.3)	1,686(19.7)	1,430(16.7)	543(6.3)	8,566(100.0)



<그림 20> 광주광역시 용도지역 현황



<그림 21> 광주광역시 토지특성 현황

(2) 순천시의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현황

순천시의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인 기초단위구가 54.3%인 1,044개이고, 상업지역인 기초단위구는 14.4%인 278개이다(〈표 23〉 참조). 공업지역은 0.3%인 5개의 기초단위구에만 해당되며, 녹지지역은 15.2%인 293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반면에 15.8%인 304개의 기초단위구가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洞部지역의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 69.1%, 상업지역이 20.1%, 녹지지역이 10.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계
洞部	956(69.1)	278(20.1)	-	150(10.8)		1,384(100.0)
승주읍	1(2.2)	0(0.0)	0(0.0)	9(19.6)	36(78.3)	46(100.0)
주암면	4(7.8)	0(0.0)	0(0.0)	19(37.3)	28(54.9)	51(100.0)
송광면	0(0.0)	0(0.0)	0(0.0)	0(0.0)	27(100.0)	27(100.0)
외서면	0(0.0)	0(0.0)	0(0.0)	0(0.0)	15(100.0)	15(100.0)
낙안면	6(11.5)	0(0.0)	0(0.0)	16(30.8)	30(57.7)	52(100.0)
별량면	0(0.0)	0(0.0)	0(0.0)	20(28.2)	51(71.8)	71(100.0)
상사면	0(0.0)	0(0.0)	0(0.0)	6(24.0)	19(76.0)	25(100.0)
해룡면	74(56.9)	0(0.0)	0(0.0)	47(36.2)	9(6.9)	130(100.0)
서면	3(5.7)	0(0.0)	5(9.4)	20(37.7)	25(47.2)	53(100.0)
황전면	0(0.0)	0(0.0)	0(0.0)	6(12.2)	43(87.8)	49(100.0)
월등면	0(0.0)	0(0.0)	0(0.0)	0(0.0)	21(100.0)	21(100.0)
계	1,044(54.3)	278(14.4)	5(0.3)	293(15.2)	304(15.8)	1,92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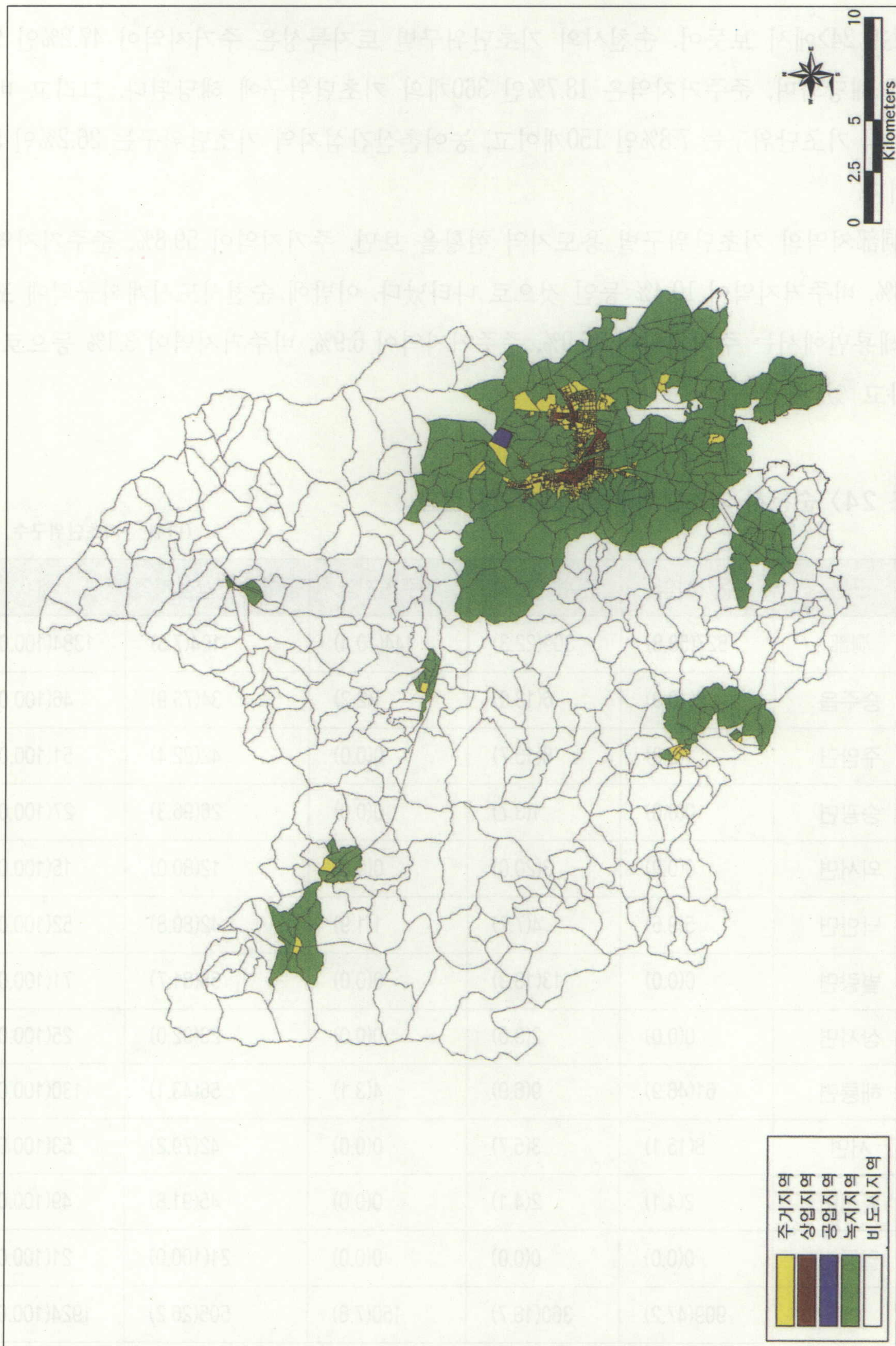
〈표 24〉에서 보듯이, 순천시의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은 주거지역이 47.2%인 909개에 해당되며, 준주거지역은 18.7%인 360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주거지역 기초단위구는 7.8%인 150개이고, 농어촌산간섬지역 기초단위구는 26.2%인 505개이다.

洞部지역의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59.8%, 준주거지역이 22.3%, 비주거지역이 10.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순천시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해룡면에서는 주거지역이 46.9%, 준주거지역이 6.9%, 비주거지역이 3.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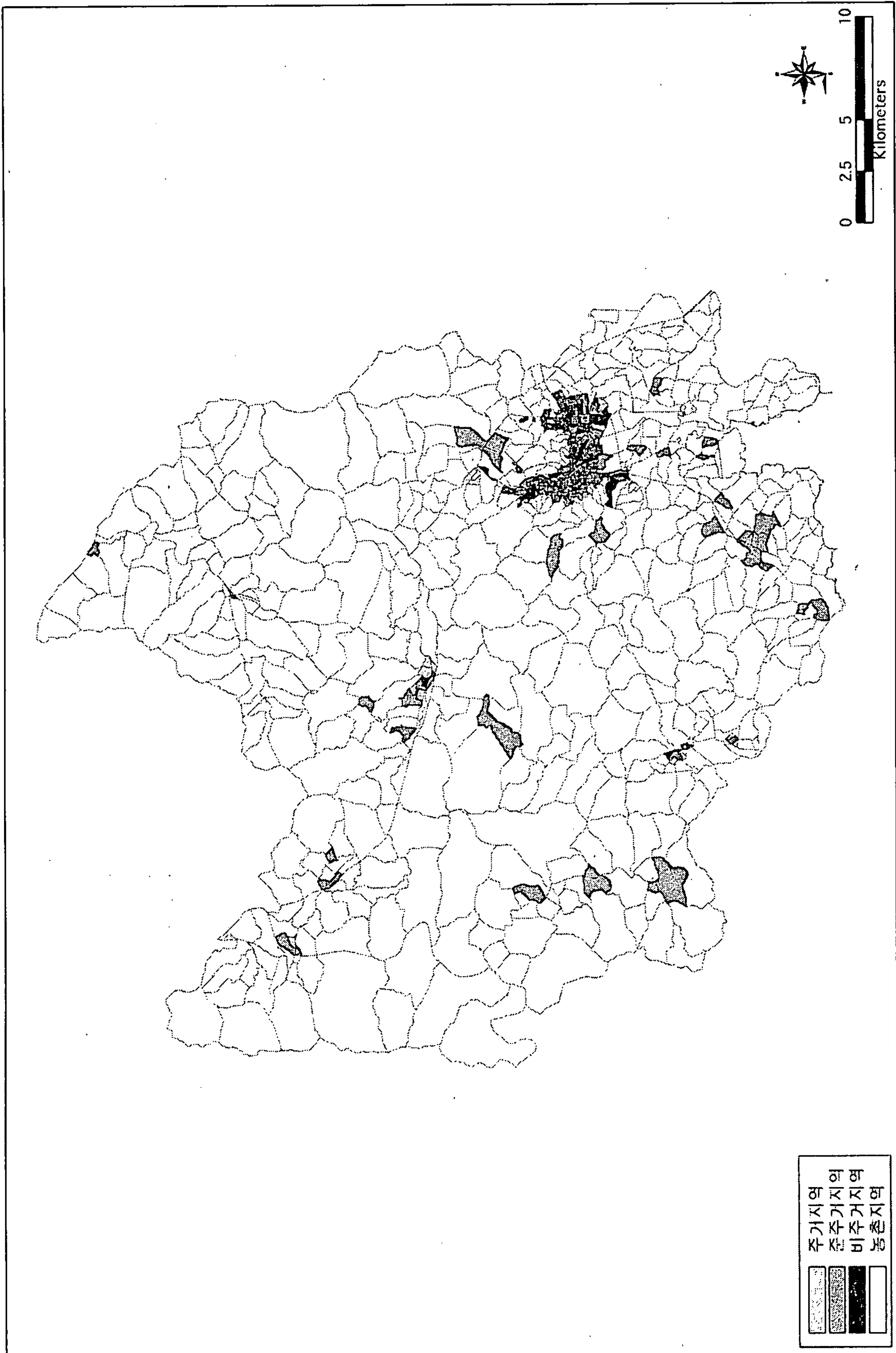
〈표 24〉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거지역	농어촌산간섬지역	계
洞部	827(59.8)	309(22.3)	144(10.4)	104(7.5)	1384(100.0)
승주읍	5(10.9)	6(13.0)	1(2.2)	34(73.9)	46(100.0)
주암면	1(2.0)	8(15.7)	0(0.0)	42(82.4)	51(100.0)
송광면	0(0.0)	1(3.7)	0(0.0)	26(96.3)	27(100.0)
외서면	0(0.0)	3(20.0)	0(0.0)	12(80.0)	15(100.0)
낙안면	5(9.6)	4(7.7)	1(1.9)	42(80.8)	52(100.0)
별량면	0(0.0)	13(18.3)	0(0.0)	58(81.7)	71(100.0)
상사면	0(0.0)	2(8.0)	0(0.0)	23(92.0)	25(100.0)
해룡면	61(46.9)	9(6.9)	4(3.1)	56(43.1)	130(100.0)
서면	8(15.1)	3(5.7)	0(0.0)	42(79.2)	53(100.0)
황전면	2(4.1)	2(4.1)	0(0.0)	45(91.8)	49(100.0)
월등면	0(0.0)	0(0.0)	0(0.0)	21(100.0)	21(100.0)
계	909(47.2)	360(18.7)	150(7.8)	505(26.2)	1924(100.0)



<그림 22> 순천시 용도지역 현황



<그림 23> 순천시 토지특성 현황

(3) 영암군의 용도지역 및 토지특성현황

영암군의 기초단위구의 용도지역을 보면 <표 25>와 같다. 주거지역인 기초단위구가 12.5%인 61개이고, 상업지역인 기초단위구가 2.2%인 11개이다. 2.2%인 11개의 기초단위구가 공업지역에 속하며, 녹지지역은 7.0%인 34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반면에 비도시지역은 76.1%인 372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영암읍에서는 주거지역이 48.1%, 상업지역이 11.1%, 녹지지역이 1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계
영암읍	39(48.1)	9(11.1)	0(0.0)	13(16.0)	20(24.7)	81(100.0)
덕진면	0(0.0)	0(0.0)	0(0.0)	2(6.7)	28(93.3)	30(100.0)
금정면	0(0.0)	0(0.0)	0(0.0)	0(0.0)	23(100.0)	23(100.0)
신북면	3(6.4)	1(2.1)	0(0.0)	3(6.4)	40(85.1)	47(100.0)
시종면	0(0.0)	0(0.0)	0(0.0)	0(0.0)	42(100.0)	42(100.0)
도포면	0(0.0)	0(0.0)	0(0.0)	0(0.0)	25(100.0)	25(100.0)
군서면	0(0.0)	0(0.0)	0(0.0)	0(0.0)	39(100.0)	39(100.0)
서호면	0(0.0)	0(0.0)	0(0.0)	0(0.0)	27(100.0)	27(100.0)
학산면	1(3.8)	1(3.8)	0(0.0)	5(19.2)	19(73.1)	26(100.0)
미암면	0(0.0)	0(0.0)	0(0.0)	2(7.7)	24(92.3)	26(100.0)
삼호면	18(14.6)	0(0.0)	11(8.9)	9(7.3)	27(100.0)	123(100.0)
계	61(12.5)	11(2.2)	11(2.2)	34(7.0)	372(76.1)	48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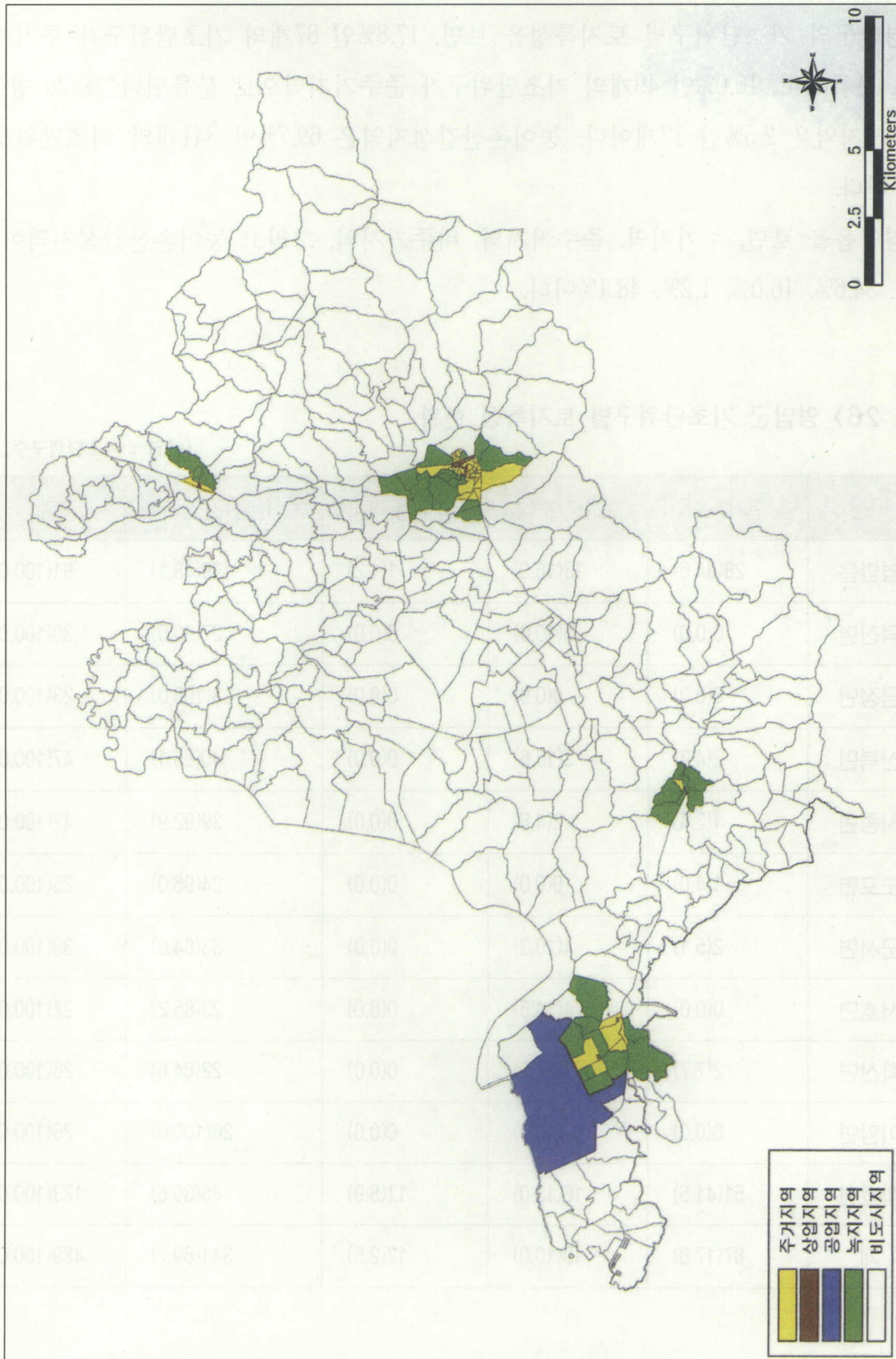
영암군의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을 보면, 17.8%인 87개의 기초단위구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며, 10.0%인 49개의 기초단위구가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표 26 참조>. 비주거지역은 2.5%인 12개이다. 농어촌산간섬지역은 69.7%인 341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

영암읍을 보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거지역, 그리고 농어촌산간섬지역이 차례로 34.6%, 16.0%, 1.2%, 4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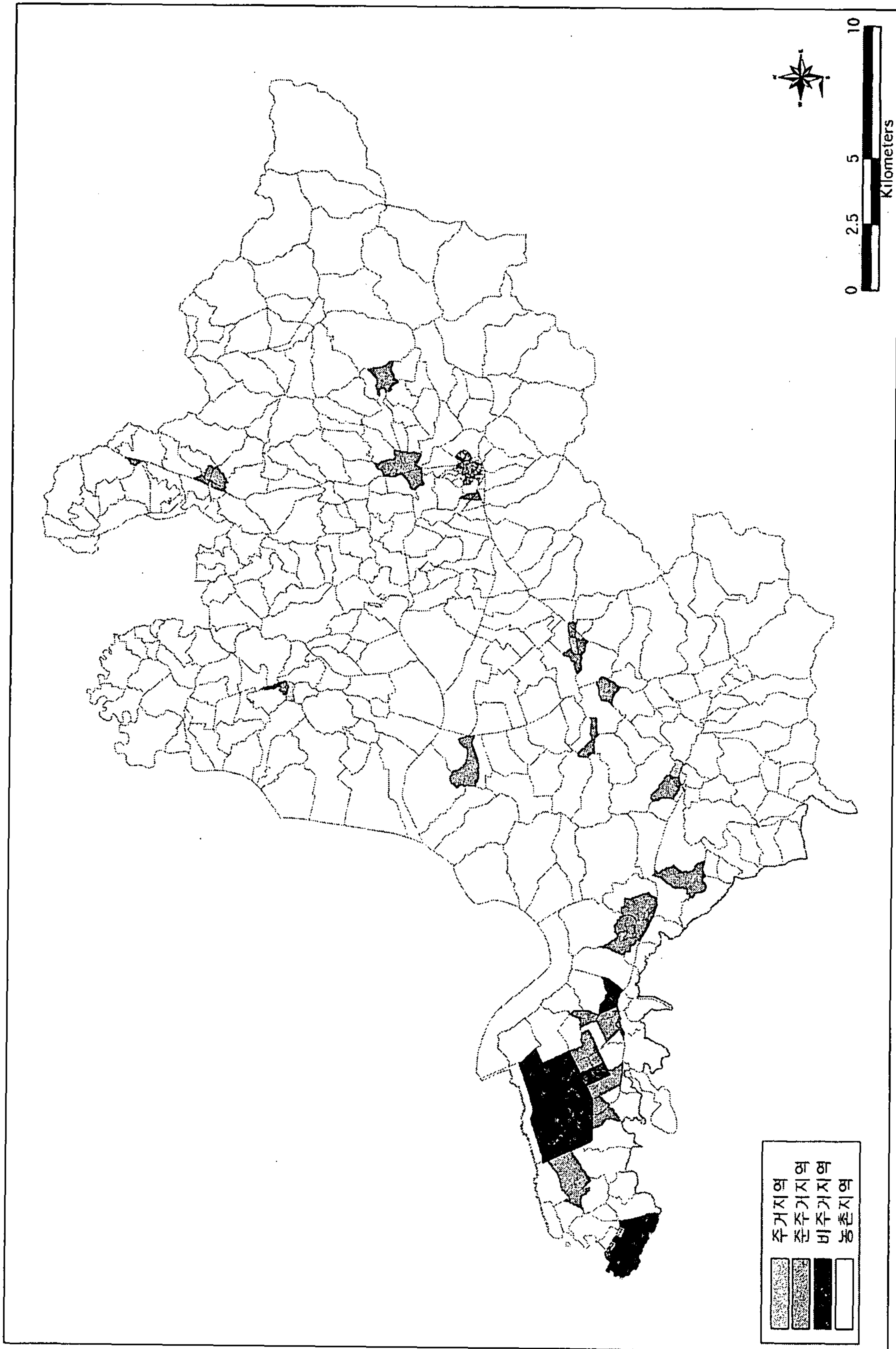
〈표 26〉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토지특성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거지역	농어촌산간섬지역	계
영암읍	28(34.6)	13(16.0)	1(1.2)	39(48.1)	81(100.0)
덕진면	0(0.0)	3(10.0)	0(0.0)	27(90.0)	30(100.0)
금정면	0(0.0)	0(0.0)	0(0.0)	23(100.0)	23(100.0)
신북면	2(4.3)	5(10.6)	0(0.0)	40(85.1)	47(100.0)
시종면	1(2.4)	2(4.8)	0(0.0)	39(92.9)	42(100.0)
도포면	1(4.0)	0(0.0)	0(0.0)	24(96.0)	25(100.0)
군서면	2(5.1)	4(10.3)	0(0.0)	33(84.6)	39(100.0)
서호면	0(0.0)	4(14.8)	0(0.0)	23(85.2)	27(100.0)
학산면	2(7.7)	2(7.7)	0(0.0)	22(84.6)	26(100.0)
미암면	0(0.0)	0(0.0)	0(0.0)	26(100.0)	26(100.0)
삼호면	51(41.5)	16(13.0)	11(8.9)	45(36.6)	123(100.0)
계	87(17.8)	49(10.0)	12(2.5)	341(69.7)	489(100.0)



<그림 24> 영암군의 용도지역 현황



<그림 25> 영암군의 토지특성 현황

### 3.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현황 검토

#### 1)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지표의 기준 검토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예비적 분석으로 사례지역별로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밀도 현황,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 (1) 인구밀도 기준 검토

인구밀도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만㎡당 戶數密度를 기준으로 1호당 평균가구원수 3인을 곱하여 계산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세 개의 안으로 나누어서 인구밀도 분포패턴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戶數密度는 집단취락의 개념(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 참조)을 원용한 것으로 집단취락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형 집단취락은 30호/1만㎡이상인 지역, 농촌형 집단취락은 20호/1만㎡이상인 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집단취락은 10호/1만㎡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기초단위구는 농촌지역의 경우 리, 통 등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확정되었기에 집단취락 외의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기초단위구에 적용할 住宅戶數는 도시형 집단취락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형 집단취락 규모의 50%인 15호/1만㎡를 상한으로 하여 농촌형 집단취락의 50% 규모인 10호/1만㎡를 중간수준으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50% 수준인 5호/1만㎡를 하한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호수밀도를 인구밀도로 환산할 경우 인구밀도는 4,500인/㎢를 상한으로, 3,000인/㎢를 중간으로, 1,500인/㎢를 하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단위구별 분포패턴을 살펴보았다.

## (2) 건물바닥면적비율 기준 검토

건물바닥면적비율의 경우 용도지역상 비도시적 특성을 갖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상한기준인 20%를 감안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의 비율 50%를 고려해서 중간 수준을 10%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건물바닥면적비율의 분포패턴을 하한 5%, 중간 10%, 상한 15%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 (3)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기준 검토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의 경우 일본의 인구집중지구에서 1/2이 넘는 지역을 포함하는 사례를 참고로 50%를 적정으로 하고 1/3정도를 하한으로 하여 분포패턴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검토한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도시화특성 지표의 검토기준

구분	무(최)하	하한	중간	상한	검토기준
인구밀도 기준	1,500명/㎢미만	1,500명/㎢이상 3,000명/㎢미만	3,000명/㎢이상 4,500명/㎢미만	4,500명/㎢이상	집단취락의 호수밀도(20호/1만㎡) × 호당가구원수(3인)× 공공용지비율(50%) 감안
건물바닥면적 기준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용도지역상 농촌지역의 건폐율상한(20%)× 공공용지비율(50%) 감안
공공시설부지 면적비율기준	33%미만	33%이상 50%미만	50%이상	50%이상	과반수 개념 감안

## 2)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 지표의 분포패턴 검토

###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을 보면 1,500명/k㎡미만인 기초단위구는 21.6%인 1,848개이고, 1,500명/k㎡이상 3,000명/k㎡미만인 기초단위구는 3.0%인 256개이다(〈표 28〉 참조). 3,000명/k㎡이상 4,500명/k㎡미만에는 2.3%인 196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고, 4,500명/k㎡이상에는 73.3%인 6,266개의 기초단위구가 속한다.

구별로 보았을 때 4,500명/k㎡이상 되는 지역의 비율이 높은 구는 동구와 남구로 각각 80.5%, 80.2%이다.

〈표 28〉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1,500명/k㎡미만	1,500명/k㎡이상 3,000명/k㎡미만	3,000명/k㎡이상 4,500명/k㎡미만	4,500명/k㎡이상	계
동구	127(13.6)	33(3.5)	22(2.4)	753(80.5)	935(100.0)
서구	443(26.7)	44(2.7)	29(1.8)	1,141(68.8)	1,657(100.0)
남구	203(15.4)	35(2.7)	23(1.7)	1,057(80.2)	1,318(100.0)
북구	587(20.0)	91(3.1)	72(2.5)	2,181(74.4)	2,931(100.0)
광산구	488(28.3)	53(3.1)	50(2.9)	1,134(65.8)	1,725(100.0)
계	1,848(21.6)	256(3.0)	196(2.3)	6,266(73.2)	8,566(100.0)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을 보면 5%미만은 21.6%인 1,848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되며, 5%이상 10%미만인 지역은 3.6%인 312개의 기초단위구에 해당된다(〈표 29〉 참조). 10%이상 15%미만에는 6.2%인 531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며, 15%이상에는 60.3%인 5,169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

구별로 보았을 때 15%이상 되는 지역의 비율이 높은 구는 인구밀도와 마찬가지로 동구와 남구로서 각각 86.0%, 78.5%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29〉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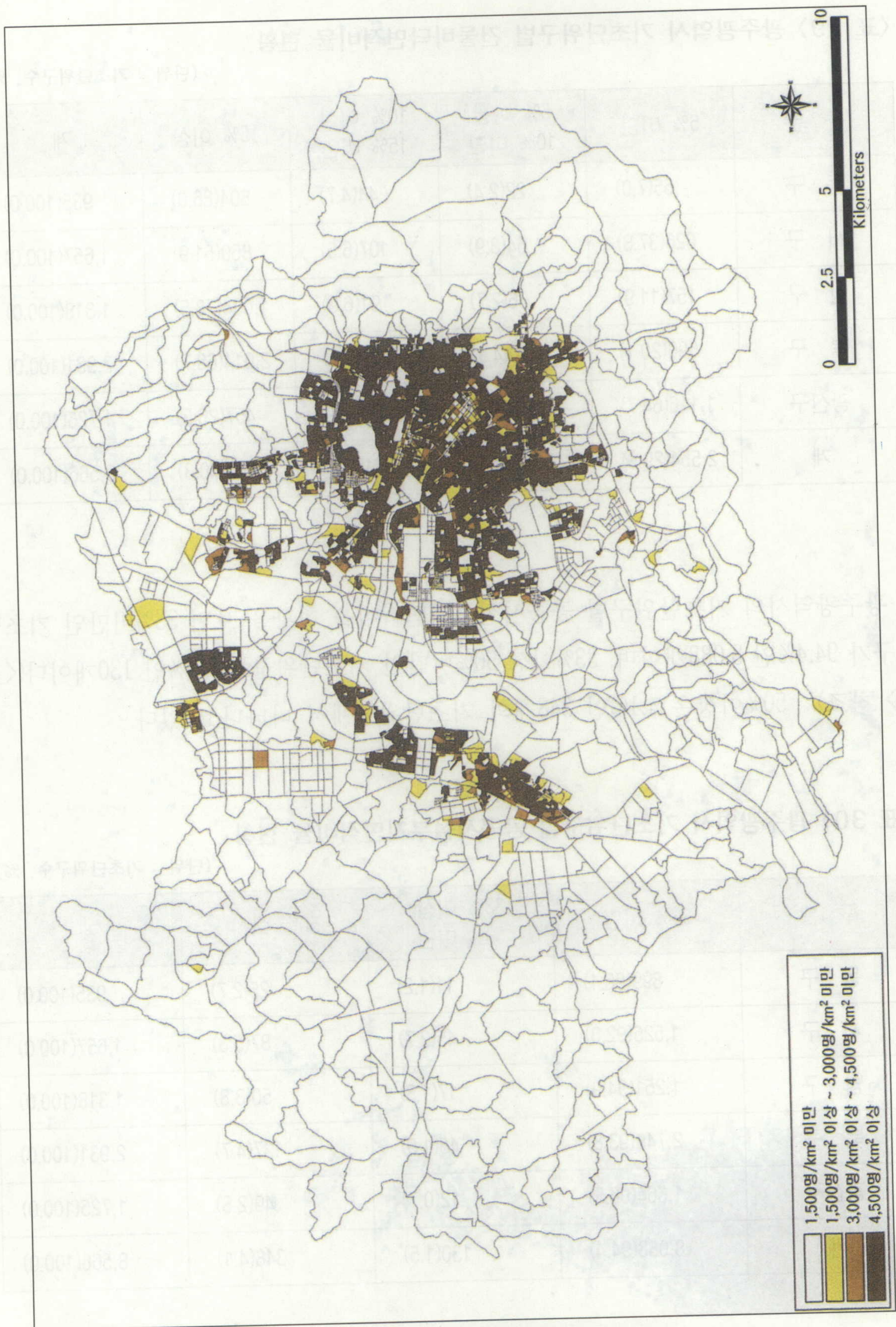
구 분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계
동 구	65(7.0)	22(2.4)	44(4.7)	804(86.0)	935(100.0)
서 구	626(37.8)	64(3.9)	107(6.5)	860(51.9)	1,657(100.0)
남 구	157(11.9)	36(2.7)	91(6.9)	1,034(78.5)	1,318(100.0)
북 구	590(20.1)	120(4.1)	207(7.1)	2,014(68.7)	2,931(100.0)
광산구	1,116(64.7)	70(4.1)	82(4.8)	457(26.5)	1,725(100.0)
계	2,554(29.8)	312(3.6)	531(6.2)	5,169(60.3)	8,566(100.0)

광주광역시의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을 보면 33%미만인 기초단위구가 94.4%인 8,088개이며, 33%이상 50%미만인 기초단위구는 1.5%인 130개이다(〈표 30〉 참조). 50%이상은 4.1%인 348개의 기초단위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30〉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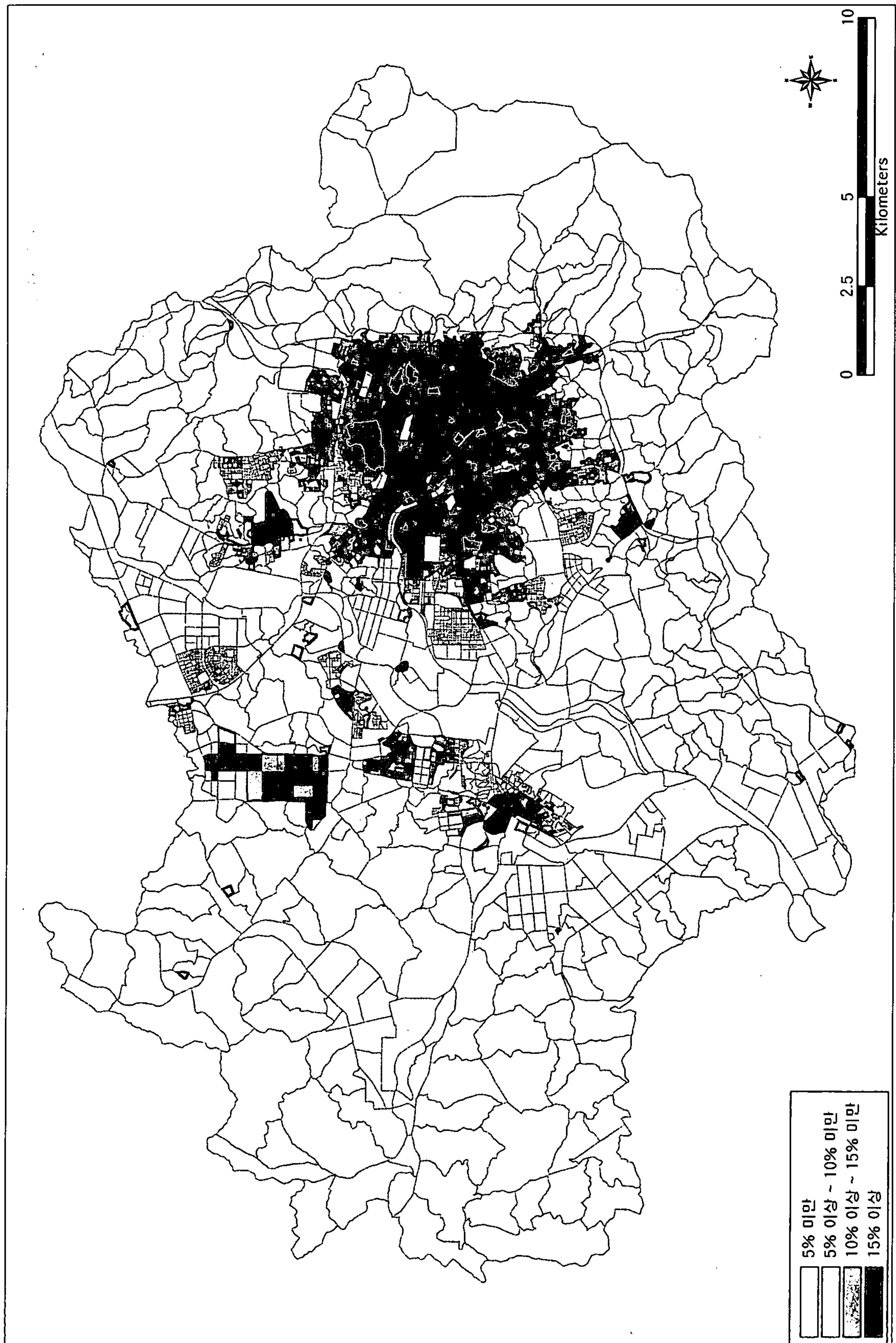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 분	33% 미만	33% 이상 50% 미만	50% 이상	계
동 구	899(96.1)	11(1.2)	25(2.7)	935(100.0)
서 구	1,525(92.0)	45(2.7)	87(5.3)	1,657(100.0)
남 구	1,251(94.9)	17(1.3)	50(3.8)	1,318(100.0)
북 구	2,749(93.8)	45(1.5)	137(4.7)	2,931(100.0)
광산구	1,664(96.5)	12(0.7)	49(2.8)	1,725(100.0)
계	8,088(94.4)	130(1.5)	348(4.1)	8,5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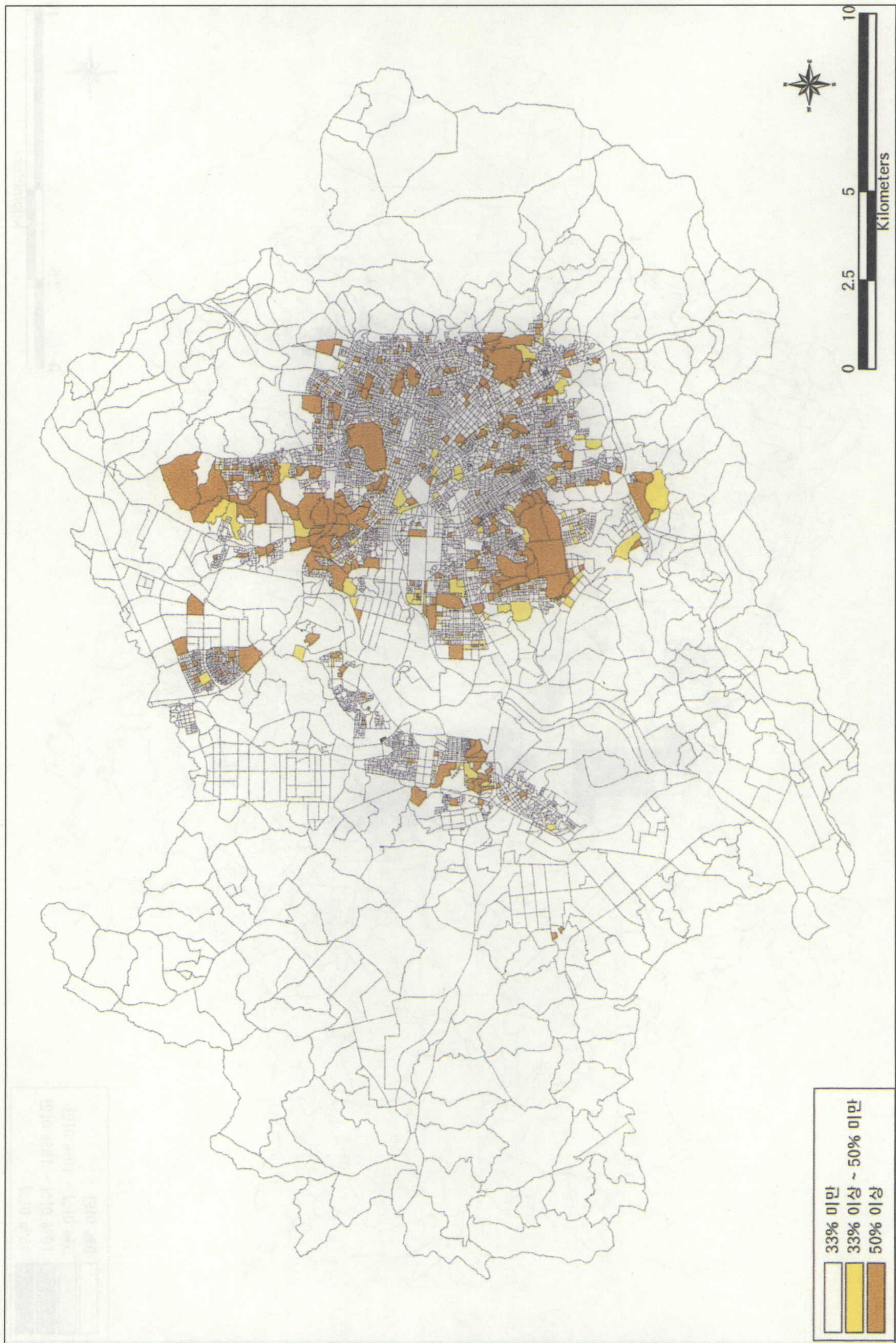


<그림 26> 광주광역시 인구밀도 분포패턴





<그림 27> 광주광역시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그림 2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2) 순천시

순천시의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을 보면, 1,500명/㎢미만인 기초단위구는 39.0%인 751개이고, 1,500명/㎢이상 3,000명/㎢미만인 기초단위구는 4.3%인 83개이다 (<표 31> 참조). 3,000명/㎢이상 4,500명/㎢미만에는 3.2%인 62개의 기초단위구가 해당 되고, 4,500명/㎢이상에는 53.5%인 1,028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

洞部 및 읍면별로 보았을 때, 4,500명/㎢이상 되는 기초단위구의 비율은 洞部가 70.0%(968개)이고, 해룡면은 42.3%(55개)이다. 그리고 서면은 9.4%(5개)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lt;표 31&gt;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1,500명/㎢미만	1,500명/㎢이상 3,000명/㎢미만	3,000명/㎢이상 4,500명/㎢미만	4,500명/㎢이상	계
洞部	282(20.4)	74(5.3)	60(4.3)	968(70.0)	1,384(100.0)
승주읍	45(97.8)	1(2.2)	0(0.0)	0(0.0)	46(100.0)
주암면	50(98.0)	1(2.0)	0(0.0)	0(0.0)	51(100.0)
송광면	27(100.0)	0(0.0)	0(0.0)	0(0.0)	27(100.0)
외서면	15(100.0)	0(0.0)	0(0.0)	0(0.0)	15(100.0)
낙안면	47(90.4)	4(7.7)	1(1.9)	0(0.0)	52(100.0)
별량면	71(100.0)	0(0.0)	0(0.0)	0(0.0)	71(100.0)
상사면	25(100.0)	0(0.0)	0(0.0)	0(0.0)	25(100.0)
해룡면	73(56.2)	2(1.5)	0(0.0)	55(42.3)	130(100.0)
서면	48(90.6)	0(0.0)	0(0.0)	5(9.4)	53(100.0)
황전면	47(95.9)	1(2.0)	1(2.0)	0(0.0)	49(100.0)
월등면	21(100.0)	0(0.0)	0(0.0)	0(0.0)	21(100.0)
계	751(39.0)	83(4.3)	62(3.2)	1,028(53.5)	1,924(100.0)

〈표 32〉은 순천시의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미만에는 42.4%인 815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고, 5%이상 10%미만에는 5.5%인 105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 10%이상 15%미만인 기초단위구 수는 169개(8.8%)이며, 15%이상인 기초단위구 수는 835개(43.3%)이다.

洞部 및 읍면별로 보았을 때 15%이상인 기초단위구의 비율은 洞部가 58.7%(812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해룡면이 13.0%인 17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며, 서면이 5.7%인 3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있다.

〈표 32〉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계
洞部	330(23.8)	86(6.2)	156(11.3)	812(58.7)	1,384(100.0)
승주읍	44(95.7)	1(2.2)	0(0.0)	1(2.2)	46(100.0)
주암면	44(86.3)	6(11.8)	0(0.0)	0(0.0)	51(100.0)
송광면	27(100.0)	0(0.0)	0(0.0)	0(0.0)	27(100.0)
외서면	15(100.0)	0(0.0)	0(0.0)	0(0.0)	15(100.0)
낙안면	44(84.6)	5(9.6)	2(3.8)	1(1.9)	52(100.0)
별량면	70(98.6)	0(0.0)	1(1.4)	0(0.0)	71(100.0)
상사면	25(100.0)	0(0.0)	0(0.0)	0(0.0)	25(100.0)
해룡면	103(79.2)	4(3.1)	6(4.6)	17(13.0)	130(100.0)
서면	46(86.8)	2(3.8)	2(3.8)	3(5.7)	53(100.0)
황전면	46(93.9)	1(2.0)	2(4.1)	0(0.0)	49(100.0)
월등면	21(100.0)	0(0.0)	0(0.0)	0(0.0)	21(100.0)
계	815(42.4)	105(5.5)	169(8.8)	835(43.3)	1,92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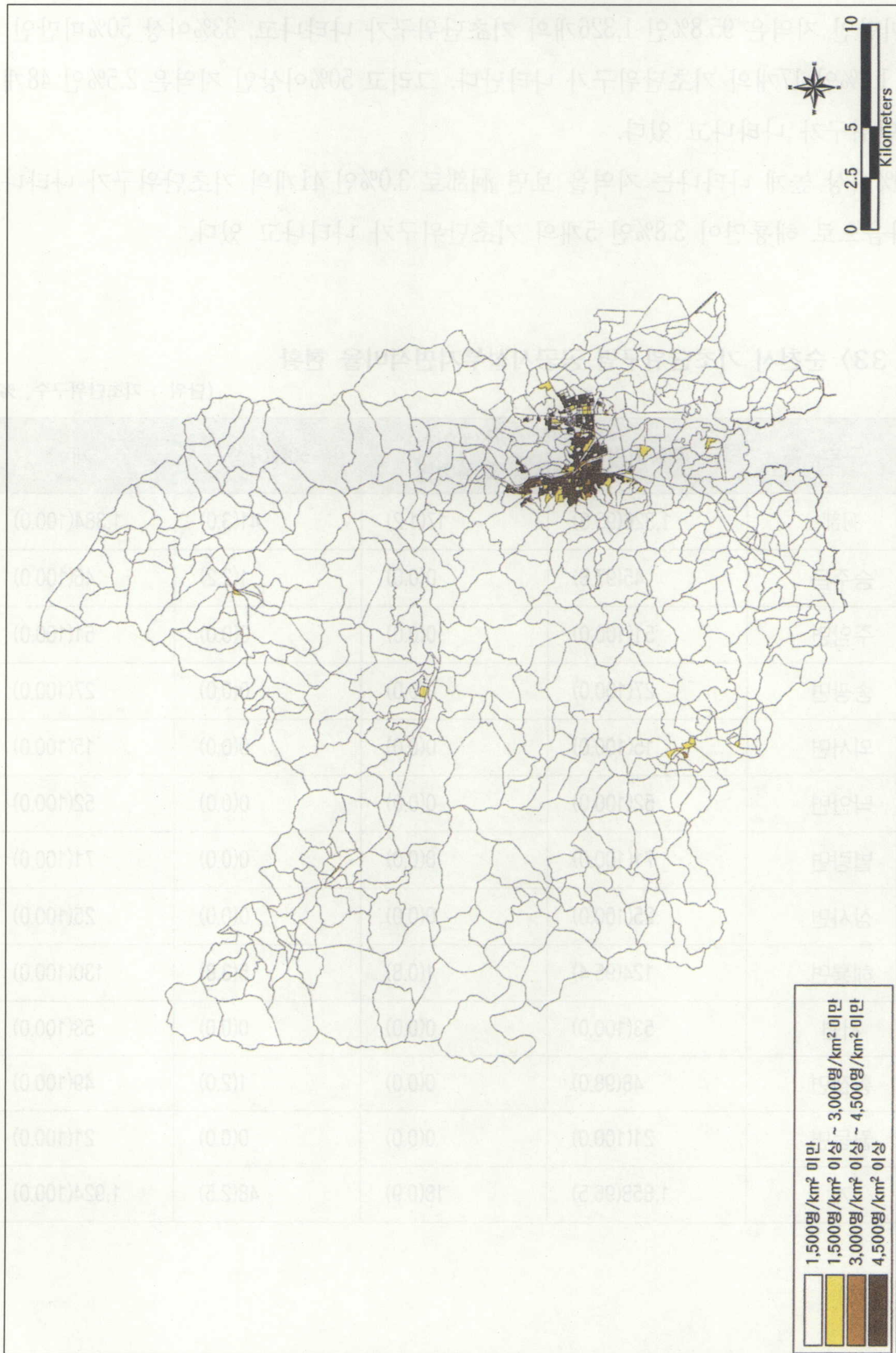
〈표 33〉을 보면, 순천시의 경우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을 보면 33%미만인 지역은 95.8%인 1,326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33%이상 50%미만인 지역은 1.2%인 17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50%이상인 지역은 2.5%인 48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있다.

50%이상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 洞部로 3.0%인 41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해룡면이 3.8%인 5개의 기초단위구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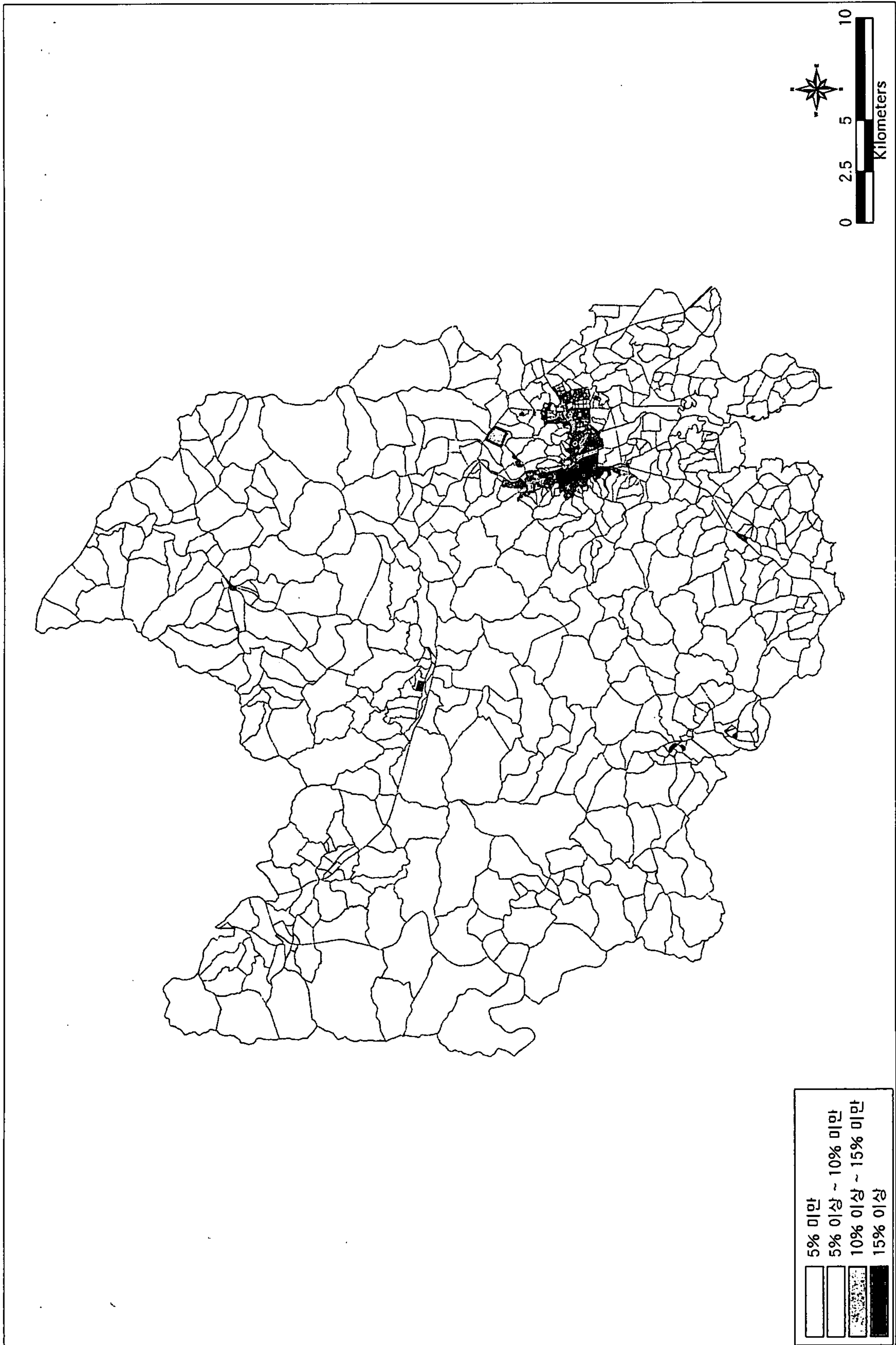
〈표 33〉 순천시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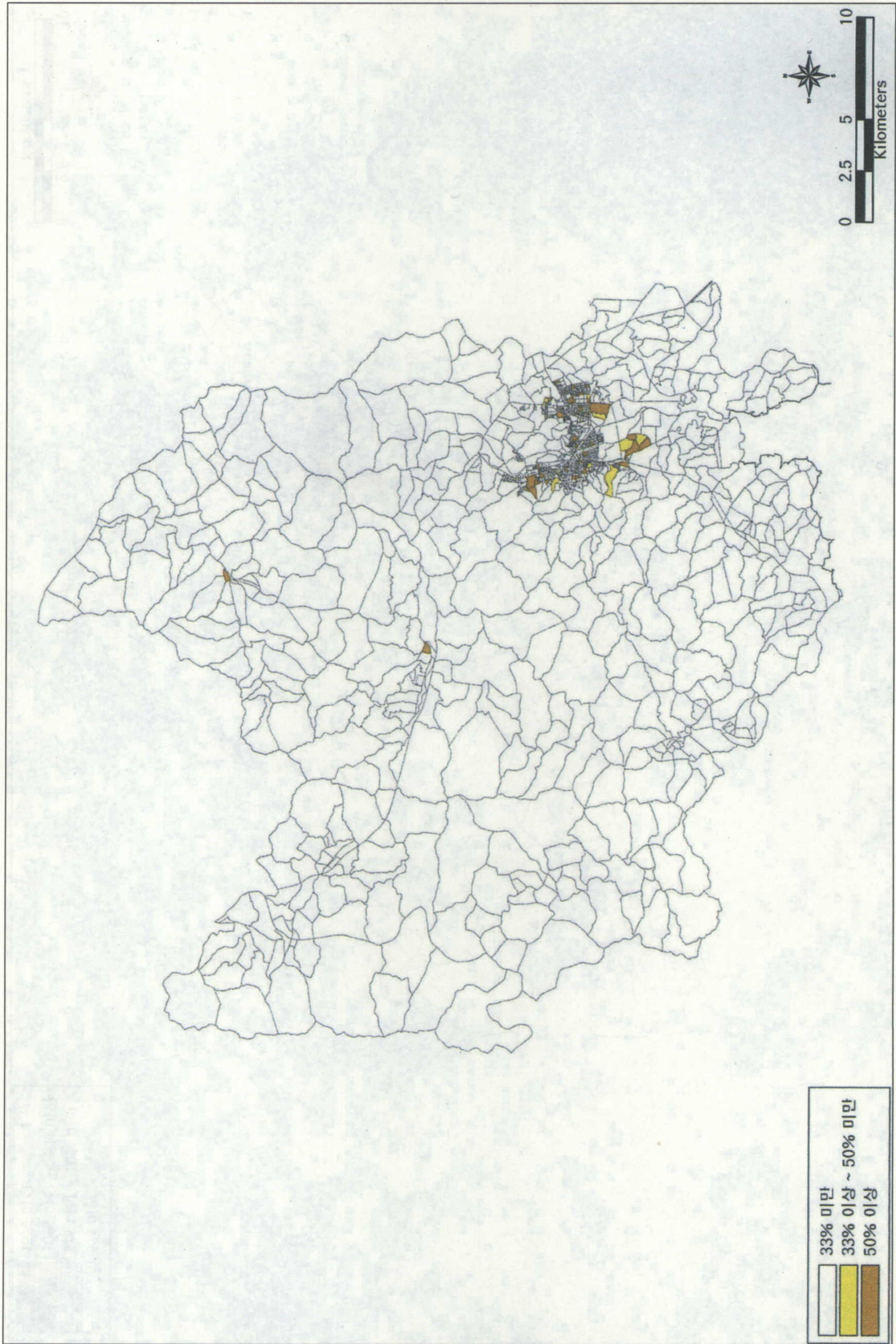
구분	33%미만	33%이상 50%미만	50%이상	계
洞部	1,326(95.8)	17(1.2)	41(3.0)	1,384(100.0)
승주읍	45(97.8)	0(0.0)	1(2.2)	46(100.0)
주암면	51(100.0)	0(0.0)	0(0.0)	51(100.0)
송광면	27(100.0)	0(0.0)	0(0.0)	27(100.0)
외서면	15(100.0)	0(0.0)	0(0.0)	15(100.0)
낙안면	52(100.0)	0(0.0)	0(0.0)	52(100.0)
별량면	71(100.0)	0(0.0)	0(0.0)	71(100.0)
상사면	25(100.0)	0(0.0)	0(0.0)	25(100.0)
해룡면	124(95.4)	1(0.8)	5(3.8)	130(100.0)
서면	53(100.0)	0(0.0)	0(0.0)	53(100.0)
황전면	48(98.0)	0(0.0)	1(2.0)	49(100.0)
월등면	21(100.0)	0(0.0)	0(0.0)	21(100.0)
계	1,858(96.5)	18(0.9)	48(2.5)	1,924(100.0)



<그림 29> 순천시 인구밀도 분포패턴



<그림 30> 순천시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그림 31> 순천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3) 영암군

영암군의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을 보면 1,500명/k㎡미만에는 81.8%인 400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표 34〉 참조). 1,500명/k㎡이상 3,000명/k㎡미만인 기초단위구는 3.1%인 15개에 불과하며, 3,000명/k㎡이상 4,500명/k㎡미만인 기초단위구도 2.2%인 1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4,500명/k㎡이상 되는 기초단위구 수는 63개(12.8%)이다.

읍면별로 4,500명/k㎡이상 되는 기초단위구 수를 보았을 때, 영암읍이 25개(23.0%)를 갖고, 삼호면이 36개(29.2%)를 갖는다. 신북면은 1개(2.1%)의 기초단위구만을 갖는다.

〈표 34〉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1,500명/k㎡미만	1,500명/k㎡이상 3,000명/k㎡미만	3,000명/k㎡이상 4,500명/k㎡미만	4,500명/k㎡이상	계
영암읍	41(50.6)	7(8.6)	8(9.9)	25(23.0)	81(100.0)
덕진면	30(100.0)	0(0.0)	0(0.0)	0(0.0)	30(100.0)
금정면	23(100.0)	0(0.0)	0(0.0)	0(0.0)	23(100.0)
신북면	42(89.4)	2(4.3)	2(4.3)	1(2.1)	47(100.0)
시종면	41(97.6)	1(2.4)	0(0.0)	0(0.0)	42(100.0)
도포면	24(96.0)	1(4.0)	0(0.0)	0(0.0)	25(100.0)
군서면	38(97.4)	0(0.0)	1(2.6)	0(0.0)	39(100.0)
서호면	27(100.0)	0(0.0)	0(0.0)	0(0.0)	27(100.0)
학산면	23(88.5)	2(7.7)	0(0.0)	1(3.8)	26(100.0)
미암면	26(100.0)	0(0.0)	0(0.0)	0(0.0)	26(100.0)
삼호면	85(69.1)	2(1.6)	0(0.0)	36(29.2)	123(100.0)
계	400(81.8)	15(3.1)	11(2.2)	63(12.8)	489(100.0)

영암군의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표 35〉 참조)을 보면 5%미만에는 87.1%인 426개의 기초단위구가 해당된다. 5%이상 10%미만에는 4.3%인 21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며, 10%이상 15%미만에는 3.9%인 19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 15%이상인 기초단위구 수는 23개(4.6%)이다.

15%이상인 기초단위구를 읍면별로 보았을 때, 영암읍이 22.3%(18개)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건물바닥면적비율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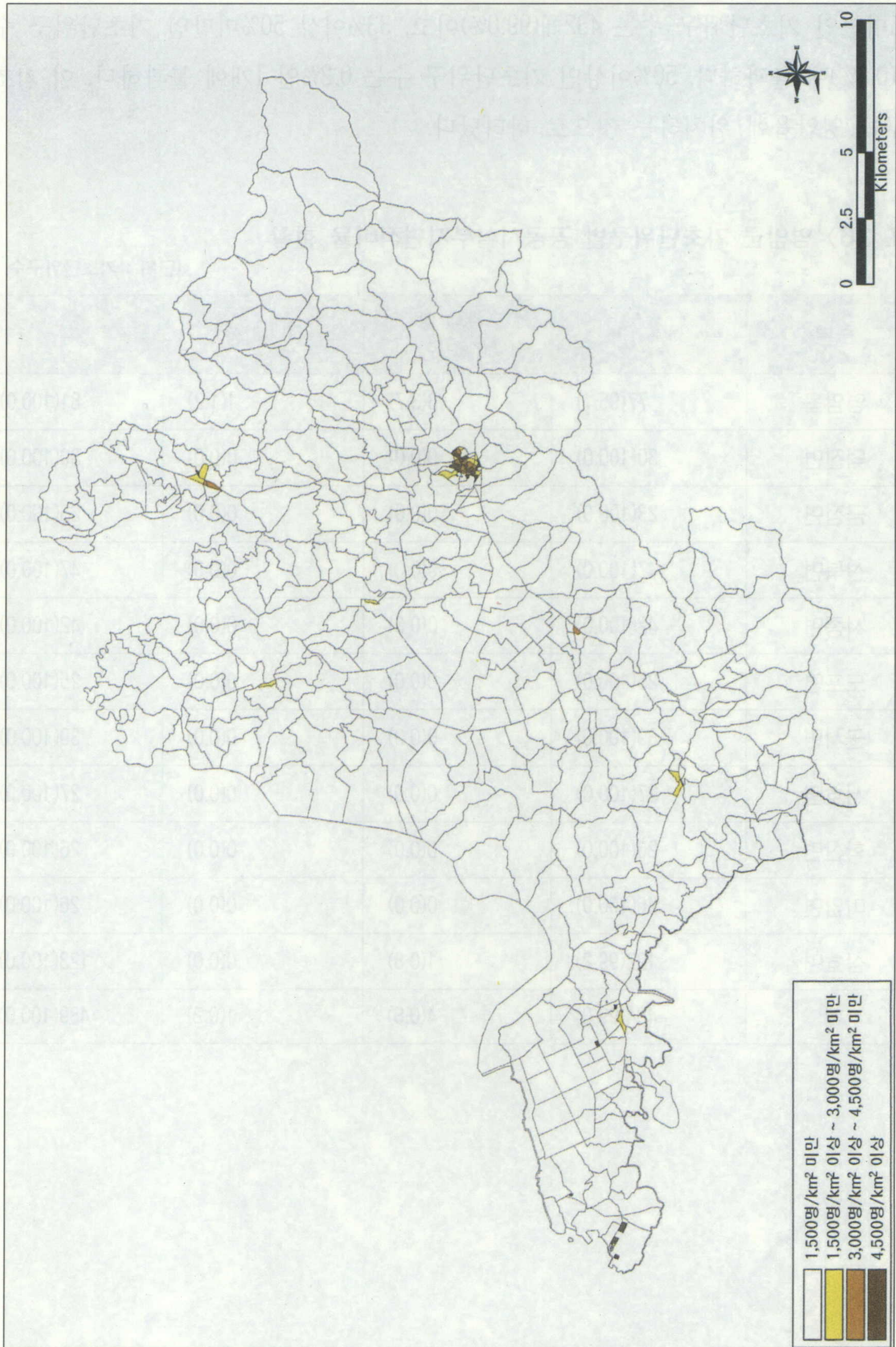
구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계
영암읍	38(46.9)	8(9.9)	17(21.0)	18(22.3)	81(100.0)
덕진면	30(100.0)	0(0.0)	0(0.0)	0(0.0)	30(100.0)
금정면	23(100.0)	0(0.0)	0(0.0)	0(0.0)	23(100.0)
신북면	42(89.4)	3(6.4)	0(0.0)	2(4.2)	47(100.0)
시종면	41(97.6)	0(0.0)	0(0.0)	1(2.4)	42(100.0)
도포면	24(96.0)	1(4.0)	0(0.0)	0(0.0)	25(100.0)
군서면	34(87.2)	3(7.7)	2(5.1)	0(0.0)	39(100.0)
서호면	26(96.3)	1(3.7)	0(0.0)	0(0.0)	27(100.0)
학산면	23(88.5)	2(7.7)	0(0.0)	1(3.8)	26(100.0)
미암면	26(100.0)	0(0.0)	0(0.0)	0(0.0)	26(100.0)
삼호면	119(96.7)	3(2.4)	0(0.0)	1(0.8)	123(100.0)
계	426(87.1)	21(4.3)	19(3.9)	23(4.6)	489(100.0)

영암군의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은 <표 36>에 수록되어 있다. 33%미만인 기초단위구 수는 482개(99.0%)이고, 33%이상 50%미만인 기초단위구 수는 4개(0.8%)에 불과하다. 50%이상인 기초단위구 수는 0.2%인 1개에 불과하다. 이 기초단위구는 영암읍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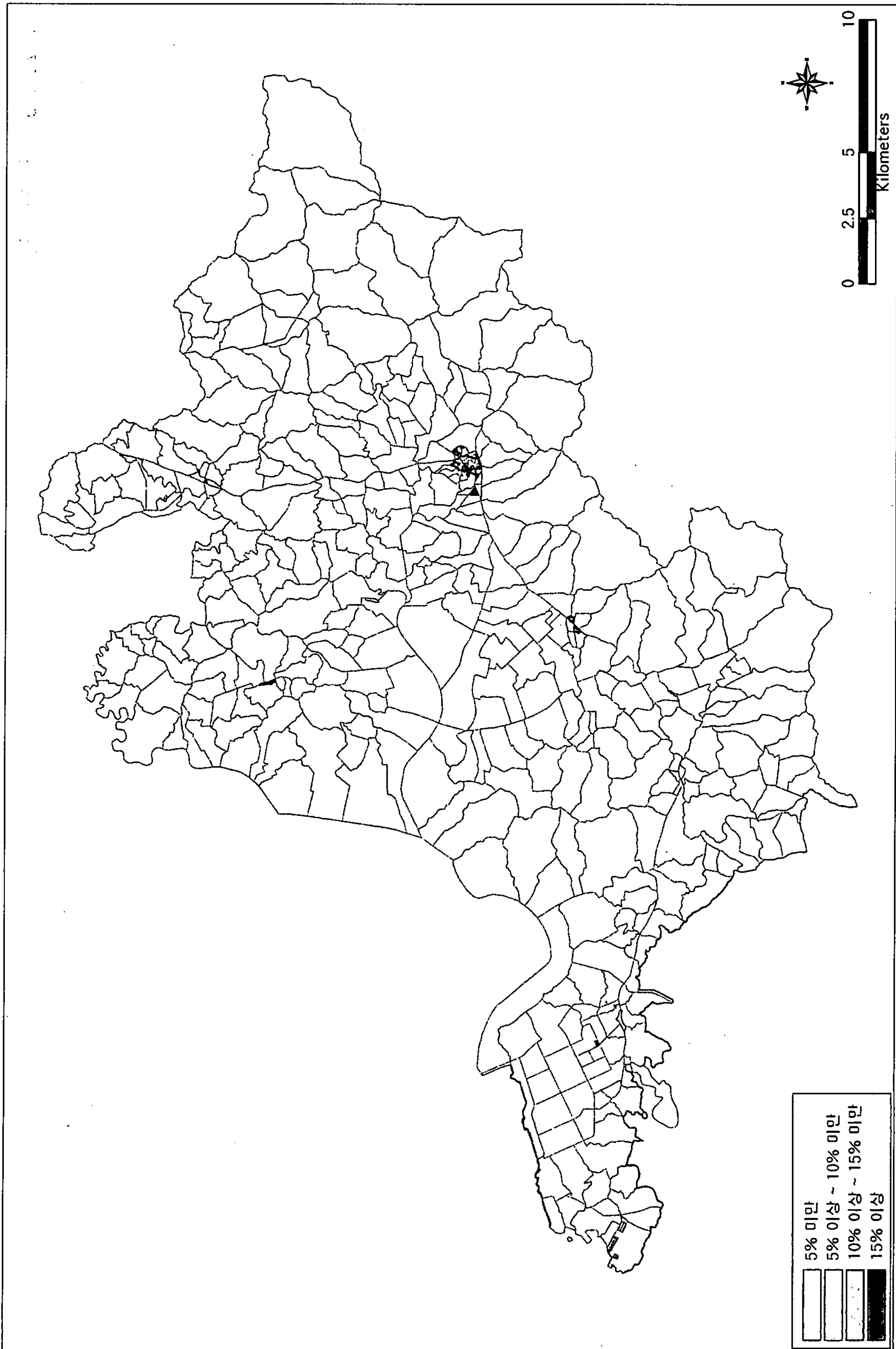
<표 36> 영암군 기초단위구별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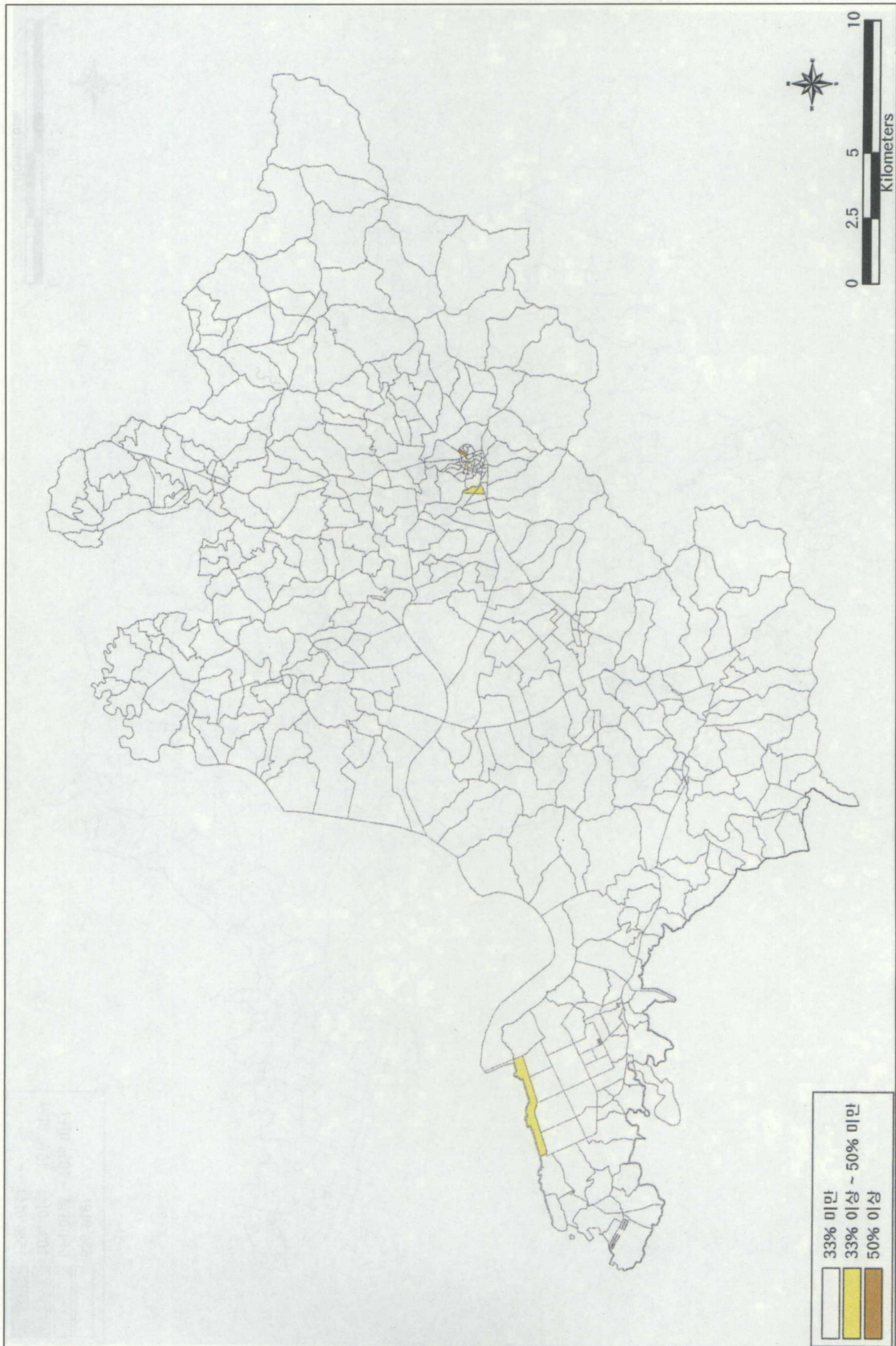
구분	33%미만	33%이상 50%미만	50%이상	계
영암읍	77(95.1)	3(3.7)	1(1.2)	81(100.0)
덕진면	30(100.0)	0(0.0)	0(0.0)	30(100.0)
금정면	23(100.0)	0(0.0)	0(0.0)	23(100.0)
신북면	47(100.0)	0(0.0)	0(0.0)	47(100.0)
시종면	42(100.0)	0(0.0)	0(0.0)	42(100.0)
도포면	25(100.0)	0(0.0)	0(0.0)	25(100.0)
군서면	39(100.0)	0(0.0)	0(0.0)	39(100.0)
서호면	27(100.0)	0(0.0)	0(0.0)	27(100.0)
학산면	26(100.0)	0(0.0)	0(0.0)	26(100.0)
미암면	26(100.0)	0(0.0)	0(0.0)	26(100.0)
삼호면	122(99.2)	1(0.8)	0(0.0)	123(100.0)
계	484(99.0)	4(0.8)	1(0.2)	489(100.0)



<그림 32> 영암군 인구밀도 분포패턴



<그림 33> 영암군 건물바닥면적비율 분포패턴



<그림 34> 영암군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분포패턴

## 4. 사례지역별 도시화특성의 종합적 현황 검토

### 1) 검토기준

우선 인구밀도와 건물바닥면적비율 기준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기초단위 구별로 각각 저밀도(1안), 중밀도(2안), 고밀도(3안)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표 37〉 참조).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은 50%이상인 기초단위구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표 37〉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에 의한 기초단위구 검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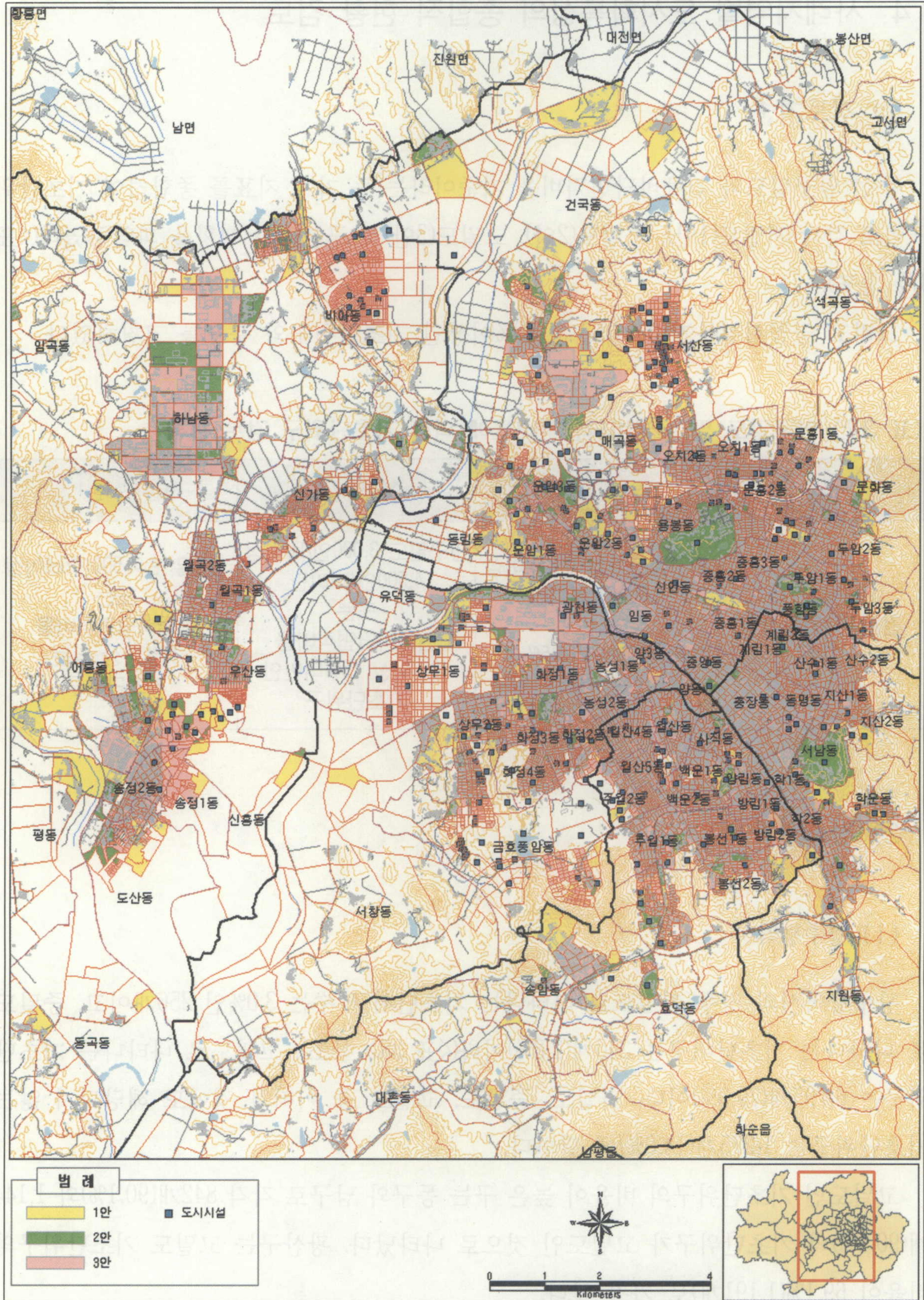
구분	저밀도(1안)	중밀도(2안)	고밀도(3안)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 기준	인구밀도 1,500인/㎢이상 3,000인/㎢미만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5%이상 10%미만인 기초단위구	인구밀도 3,000인/㎢이상 4,500인/㎢미만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 10%이상 15%미만인 기초단위구	인구밀도 4,500인/㎢이상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 15%이상 되는 기초단위구

### 2) 검토결과

####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저밀도로 나타나는 기초단위구 수는 3.0%인 256개이고, 중밀도로 나타나는 기초단위구는 240개(2.8%)이다(〈표 38〉 참조). 고밀도로 나타나는 기초단위구는 6,795개(79.3%)이다.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초단위구는 1,275개(14.0%)에 달한다.

고밀도인 기초단위구의 비율이 높은 구는 동구와 남구로 각각 842개(90.1%)와 1,144개(90.1%)의 기초단위구가 고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고밀도 기초단위구의 비율이 69.1%(1,191개)로 가장 낮다.



<그림 35> 광주광역시 현황분석도



〈표 38〉 광주광역시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 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동 구	19(2.0)	17(1.8)	842(90.1)	57(6.1)	935(100.0)
서 구	52(3.1)	37(2.2)	1,232(74.4)	336(20.3)	1,657(100.0)
남 구	23(1.7)	32(2.4)	1,144(90.1)	119(9.0)	1,318(100.0)
북 구	92(3.1)	93(3.2)	2,386(81.4)	360(12.3)	2,931(100.0)
광산구	70(4.1)	61(3.5)	1,191(69.0)	403(23.4)	1,725(100.0)
계	256(3.0)	240(2.8)	6,795(79.3)	1,275(14.9)	8,566(100.0)

광주광역시에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 되는 기초단위구는 4.2%인 348개이다(〈표 39〉 참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밀도 및 건물부지면적비율로 구분한 그룹별로 살펴보면, 38.2%인 133개의 기초단위구가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등의 세 개의 그룹 중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저밀도 그룹에는 14.1%인 49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며, 중밀도 그룹에 17.0%인 59개의 기초단위구가 해당된다. 고밀도 그룹에는 30.7%인 107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

〈표 39〉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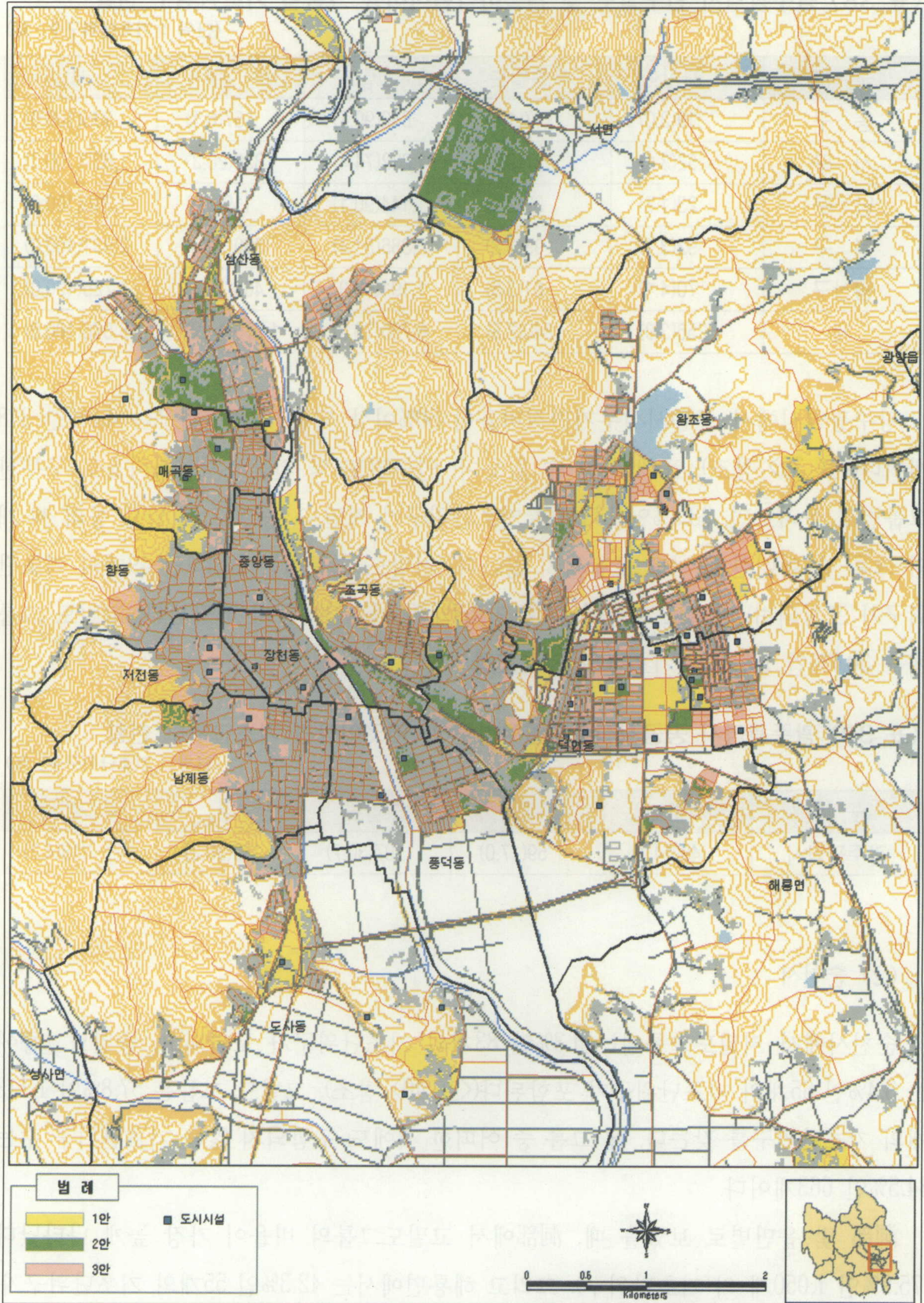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 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광주광역시	49(14.1)	59(17.0)	107(30.7)	133(38.2)	348(4.2)

## (2) 순천시

순천시에서 저밀도그룹에는 4.3%인 83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고, 중밀도그룹에는 3.4%인 65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표 40〉 참조). 고밀도 그룹은 57.8%인 1,113개의 기초단위구를 갖는다. 세 그룹 중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초단위구 수는 34.5%인 663개이다.

洞部 및 읍면별로 보았을 때, 洞部에서 고밀도그룹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75.9%인 1,050개의 기초단위구). 그리고 해룡면에서는 42.3%인 55개의 기초단위구가, 서면에서는 9.4%인 5개의 기초단위구가 고밀도그룹에 속한다.



<그림 36> 순천시 현황분석도

〈표 40〉 순천시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동 부	65(4.7)	58(4.2)	1,050(75.9)	211(15.2)	1384(100.0)
승주읍	1(2.2)	0(0.0)	1(2.2)	44(95.6)	46(100.0)
주암면	6(11.8)	0(0.0)	1(2.0)	44(86.3)	51(100.0)
송광면	0(0.0)	0(0.0)	0(0.0)	27(100.0)	27(100.0)
외서면	0(0.0)	0(0.0)	0(0.0)	15(100.0)	15(100.0)
낙안면	5(9.6)	2(3.8)	1(1.9)	44(84.6)	52(100.0)
별량면	0(0.0)	1(1.4)	0(0.0)	70(98.6)	71(100.0)
상사면	0(0.0)	0(0.0)	0(0.0)	25(100.0)	25(100.0)
해룡면	3(2.3)	1(0.8)	55(42.3)	71(54.6)	130(100.0)
서면	2(3.8)	1(1.9)	5(9.4)	45(84.9)	53(100.0)
황전면	1(2.0)	2(4.1)	0(0.0)	46(93.9)	49(100.0)
월등면	0(0.0)	0(0.0)	0(0.0)	21(100.0)	21(100.0)
계	83(4.3)	65(3.4)	1,113(57.8)	663(34.5)	1924(100.0)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 나타나는 기초단위구는, 순천시 총 기초단위구의 2.5%인 48개에서 나타난다. 상기의 인구밀도와 건물바닥면적비율에 의해 구분된 세 개의 그룹과 관련해서 고찰하면, 48개 중 41.7%인 20개의 기초단위구가 세 개의 그룹 중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저밀도 기초단위구는 14.6%인 7개로 나타났고, 중밀도 기초단위구는 16.7%인 8개로 나타났다. 고밀도 그룹에는 48개 중 27.1%인 13개의 기초단위구가 해당된다.

순천시 洞部의 41개 기초단위구가, 해룡면의 5개 기초단위구, 승주읍의 1개 기초단위구, 그리고 황전면의 1개의 기초단위구에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를 넘는다.

〈표 41〉 순천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 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순천시	7(14.6)	8(16.7)	13(27.1)	20(41.7)	48(2.5)
洞部	5(12.2)	7(17.1)	13(31.7)	16(39.0)	41(3.0)
승주읍, 해룡면, 황전면	2(28.6)	1(14.3)	0(0.0)	4(57.1)	7(1.3)

(3) 영암군

영암군에서는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로 구분된 세 그룹 중 저밀도에는 4.1%인 20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되고, 중밀도에는 2.7%인 13개의 기초단위구가, 그리고 고밀도 그룹에는 69개의 기초단위구가 포함된다(〈표 42〉 참조). 나머지 387개(79.1%)의 기초단위구는 세 그룹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읍면별로 보았을 때 고밀도인 기초단위구의 비율은 영암읍에서 가장 높다(35.8%, 29개 기초단위구), 삼호면에서는 그 비율이 29.3%(36개의 기초단위구)이다. 신북면에서는 4.3%인 2개의 기초단위구가 고밀도 그룹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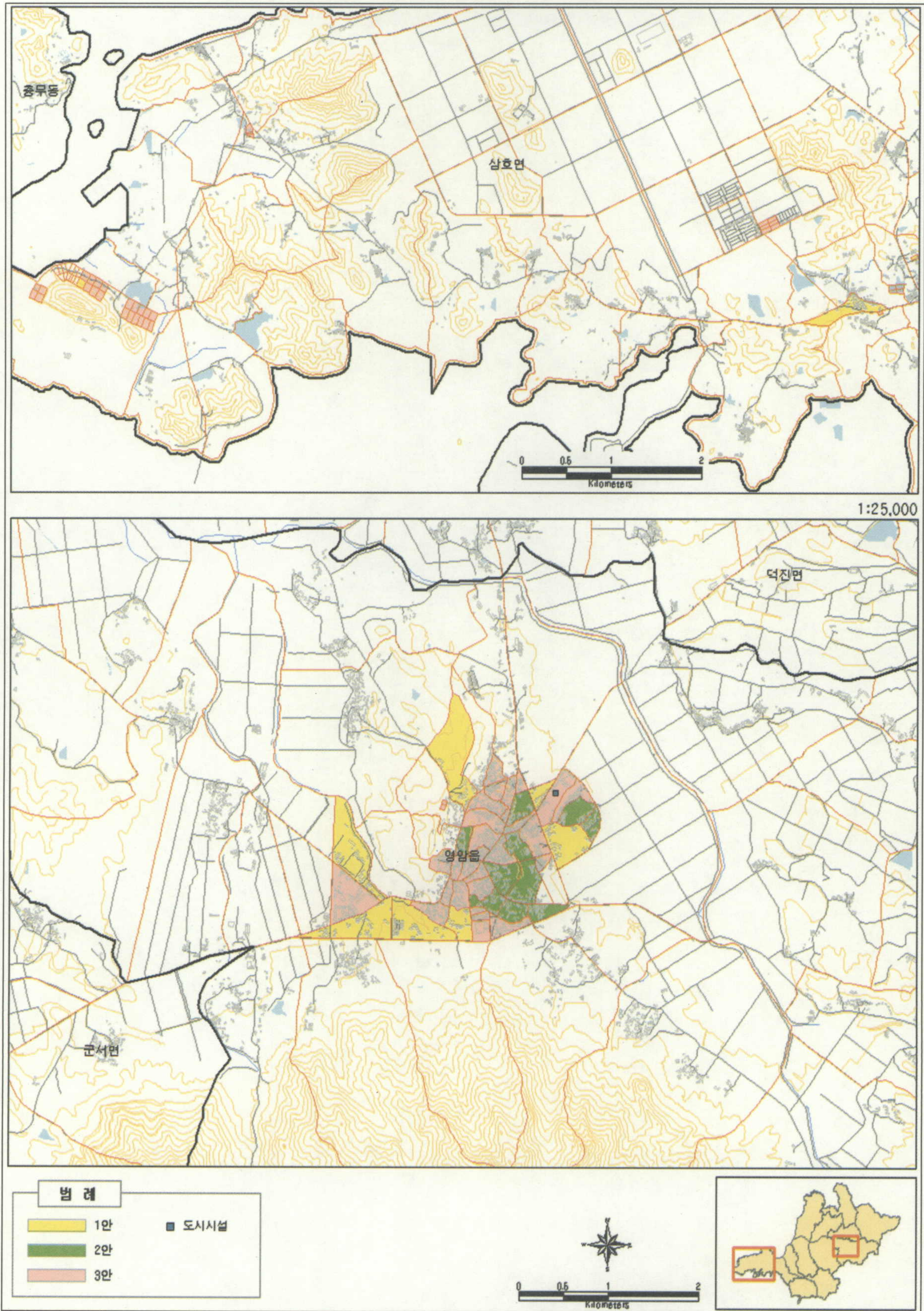
〈표 42〉 영암군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에 의한 그룹별 기초단위구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영암읍	7(8.6)	10(12.3)	29(35.8)	35(43.2)	81(100.0)
덕진면	0(0.0)	0(0.0)	0(0.0)	30(100.0)	30(100.0)
금정면	0(0.0)	0(0.0)	0(0.0)	23(100.0)	23(100.0)
신북면	3(6.4)	1(2.1)	2(4.3)	41(87.2)	47(100.0)
시종면	0(0.0)	0(0.0)	1(2.4)	41(97.6)	42(100.0)
도포면	1(4.0)	0(0.0)	0(0.0)	24(96.0)	25(100.0)
군서면	3(7.7)	2(5.1)	0(0.0)	34(87.2)	39(100.0)
서호면	1(3.7)	0(0.0)	0(0.0)	26(96.3)	27(100.0)
학산면	2(7.7)	0(0.0)	1(3.8)	23(88.5)	26(100.0)
미암면	0(0.0)	0(0.0)	0(0.0)	26(100.0)	26(100.0)
삼호면	3(2.4)	0(0.0)	36(29.3)	84(68.3)	123(100.0)
계	20(4.1)	13(2.7)	69(14.1)	387(79.1)	489(100.0)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인 기초단위구는 영암군 전체에서 단지 하나뿐이다. 이 기초단위구는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로 구분한 세 개의 그룹 중에서 고밀도 그룹에 포함된다(〈표 43〉 참조).

〈표 43〉 영암군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 50%이상인 기초단위구 현황  
(단위 : 기초단위구수, %)

구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무	계
영암군 영암읍	0(0.0)	0(0.0)	1(100.0)	0(0.0)	1(0.2)



<그림 37> 영암군 현황분석도



# 제5장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및 최종안 검토

## 1.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검토

### 1) 도시화지역 설정대안의 기준 검토

인구밀도 및 건물바닥면적비율로 구분한 세 개의 그룹을 지도상에서 살펴본 결과 저밀도지역에서 고밀도지역으로 갈수록 도시화지역의 예상범위가 작아지고 분절되어 나타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갈수록 도시화지역 예상범위가 넓어지고 비교적 연접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제까지 검토한 기초단위구 수준에서의 인구밀도, 건물바닥면적비율,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을 토대로 도시화지역 설정의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표 44〉 참조).

〈표 44〉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검토

	1안	2안	3안
기준	인구밀도 1,500인/㎢이상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 5%이상 또는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인 되는 기초단위구가 연속하는 지역 및 내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1,500명 이상이 되는 지역	인구밀도 3,000인/㎢이상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 10%이상 또는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인 되는 기초단위구가 연속하는 지역 및 내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1,500명 이상이 되는 지역	인구밀도 3,000인/㎢이상 또는 건물바닥면적비율 10%이상 또는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인 되는 기초단위구가 연속하는 지역 및 내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3,000명 이상이 되는 지역
특성	도시화지역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나 농촌적 경관이 우세한 기초단위구가 도시화지역에 포함될 수 있음	도시화지역이 보다 많은 수로 단절될 수 있으나 1안보다는 농촌적 경관이 우세한 기초단위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음	2안과 마찬가지로 1안보다는 농촌적 경관이 우세한 기초단위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음 2안과 비교해서, 공간상에 분리되어 나타나는 매우 작은 면적의 도시화지역을 포함하지 않음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안은 제2안에서 총 인구가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일단의 공간상에 연접한 기초단위구를 제외하는 대안이다.

## 2)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세 개의 대안별로 기초단위구 수, 총인구, 그리고 총면적을 비교하면 <표 45>에서 <표 47>까지와 같다. 이 세 개의 표에서 이텔릭체는 2안에서는 도시화지역에 포함되는 구역이지만 3안에서는 총인구 기준(3,000명 이상)에 미달함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타낸다.

###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구는 하나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나는데, 2안 또는 3안으로 하였을 경우, 인구가 108,517명(동구 총인구대비 95.3%), 면적이 8.26km<sup>2</sup>(동구 총면적대비 17.1%)로 나타나는 반면에 1안으로 하였을 경우 이보다 다소 많은 108,992명(동구 총인구대비 95.7%)의 인구나 다소 넓은 8.67km<sup>2</sup>(동구 총면적대비 17.9%)의 면적을 갖는다(<표 45> 참조).

남구는 1, 2, 3안 각각을 적용해도 두개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나는데, 큰 도시화지역(남구 도시화지역)과 작은 도시화지역(송암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난다.

서구는 1안과 2안 각각을 적용하면 공통적으로 큰 도시화지역 하나와 작은 도시화지역이 상무1, 상무2, 상무3, 서창 등 네 개로 분절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3안에서는 상무3과 서창 도시화지역이 제외된다.

북구는 2안 또는 3안을 적용할 경우 큰 도시화지역 하나(북구 도시화지역)와 작은 도시화지역 하나(동림 도시화지역)로 나타나나 1안으로 하면 하나의 큰 도시화지역(북구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난다.

광산구의 경우 2안을 적용할 경우 송정, 비아1, 비아2, 신가1-1, 신가1-2, 신가2 등 작은 도시화지역이 여섯 개로 나타나지만 1안으로 하면 신가 1-1과 1-2가 합쳐져 다섯 개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난다. 한편 3안을 적용하면, 1안을 적용했을 시 나타나는 도시화지역 중에서 신가2가 제외된다.



〈표 45〉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광주광역시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1안	2안3안	1안	2안3안	1안	2안3안
광산구	전체	1,725		244,622		221,599,999	
	도시화지역	1,284 (74.4%)	1,242 (72.0%)	211,411 (86.4%)	207,490 (84.8%)	11,744,586 (53.0%)	9,938,813 (44.9%)
	송정	689	661	115,330	112,417	7,656,785	6,550,332
	비아 1	44	34	6,955	6,482	709,817	321,687
	비아 2	381	381	49,364	49,364	2,098,058	2,098,058
	신가 1 <sup>a)</sup>	159	134 <sup>b)</sup>	36,943	28,451 <sup>b)</sup>	1,100,314	776,930 <sup>b)</sup>
			22 <sup>c)</sup>		8,141 <sup>c)</sup>		120,245 <sup>c)</sup>
	신가 2	11	10	2,819	2,635	179,612	71,561
남구	전체	1,318		224,779		60,694,099	
	도시화지역	1,210 (91.8%)	1,195 (90.7%)	214,029 (95.2%)	212,875 (94.7%)	11,416,553 (18.8%)	10,428,888 (17.2%)
	남구	1,175	1,166	208,445	207,742	9,752,232	9,259,470
	송암	35	29	5,584	5,133	1,664,421	1,169,418
동구	전체	935		113,922		48,521,443	
	도시화지역	877 (93.8%)	868 (92.8%)	108,992 (95.7%)	108,517 (95.3%)	8,674,708 (17.9%)	8,296,686 (17.1%)
	동구	877	868	108,992	108,517	8,674,708	8,296,686
북구	전체	2,931		469,616		121,907,599	
	도시화지역	2,755 (94.0%)	2,721 (92.8%)	456,261 (97.2%)	454,617 (96.8%)	31,017,606 (25.4%)	29,216,806 (24.0%)
	북구 <sup>d)</sup>	2,755	2,705	456,261	449,076	31,017,606	29,154,120
	16 <sup>e)</sup>		5,441 <sup>c)</sup>		62,686 <sup>c)</sup>		
서구	전체	1,657		274,526		46,339,092	
	도시화지역	1,400 (84.5%)	1,348 (81.4%)	268,808 (97.9%)	266,388 (97.0%)	16,004,153 (34.5%)	14,874,194 (32.1%)
	서구	1,311	1,274	240,173	237,914	15,384,695	14,322,978
	상무 1	55	55	21,111	21,111	439,849	439,849
	상무 2	12	12	3,916	3,916	64,547	64,547
	상무 3	18	3	1,963	1,802	96,412	28,170
	서창	4	4	1,645	1,645	18,651	18,651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군구 총 기초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에 대한 도시화지역내 총 기초 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의 비율을 보여준다.

a) 2안에 따르면 신가 1 도시화지역은 신가 1-1과 신가 1-2로 분리됨

b) 신가 1-1 도시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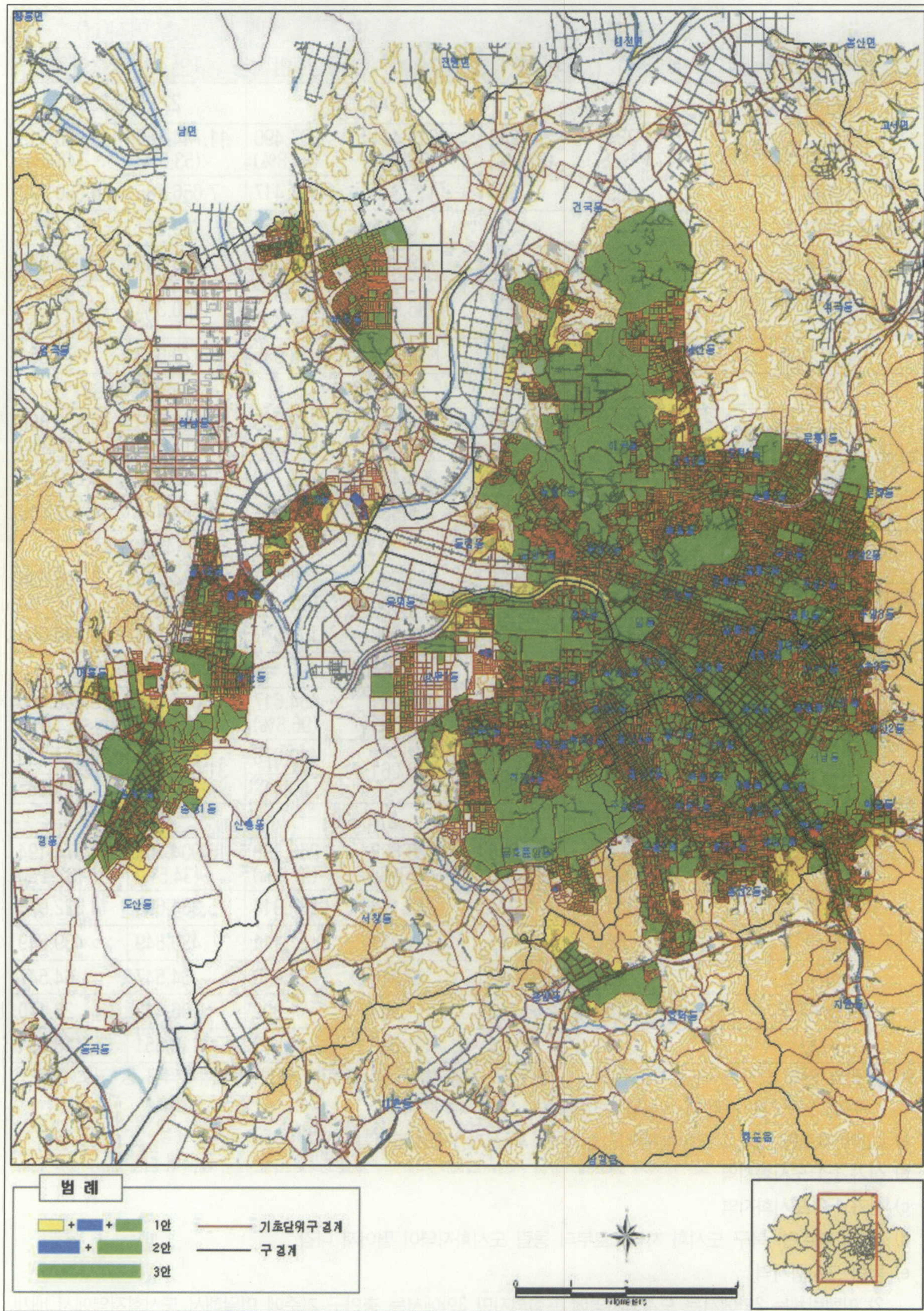
c) 신가 1-2 도시화지역

d) 2안에 따르면, 북구 도시화 지역으로부터 동림 도시화지역이 떨어져 나감

e) 동림 도시화지역

2) 이탤릭체는 2안에서는 도시화지역에 포함되지만 3안에서는 총인구 기준에 미달해서 도시화지역에서 배제 되는 구역을 나타냄

시정주공 : 도시 1913 종남 일지(사) (2A 표)



<그림 38> 광주광역시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2) 순천시

순천시의 경우 洞部지역에서는 1안 또는 2안을 적용할 경우, 하나의 큰 도시화지역과 삼산1, 삼산2, 왕조1, 왕조2, 왕조3 등 작은 도시화지역 다섯 개가 나타난다(〈표 46〉 참조). 반면, 3안을 적용하면, 삼산2, 왕조2, 그리고 왕조3이 설정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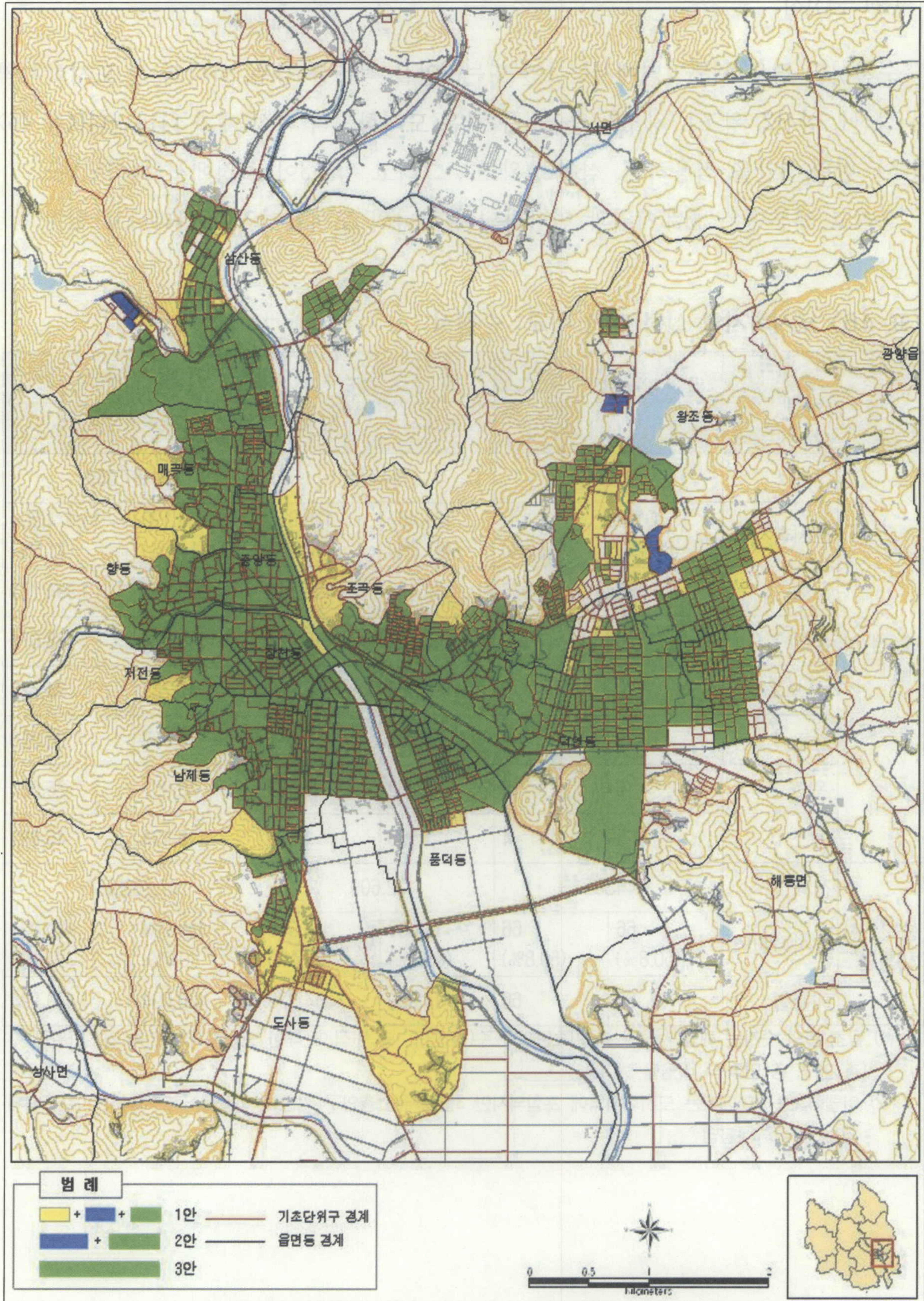
그리고 해룡면은 洞部지역과 연담화되어 하나의 도시화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표 46〉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순천시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1안	2안3안	1안	2안3안	1안	2안3안
순천시 洞部	전체	1,384		194,645		88,167,059	
	도시화지역	1,192 (86.1%)	1,129 (81.6%)	181,467 (93.2%)	176,825 (90.8%)	12,763,190 (14.5%)	10,174,904 (11.5%)
	洞部	1,136	1,076	160,460	156,580	12,399,513	9,894,703
	삼산 1	26	26	8,222	8,222	138,674	138,674
	삼산 2	10	8	2,966	2,258	47,753	34,729
	왕조 1	9	9	5,757	5,757	35,059	35,059
	왕조 2	6	6	2,482	2,482	26,057	26,057
	왕조 3	5	4	1,580	1,526	116,134	45,682
순천시 해룡면	전체	130		22,600		47,782,964	
	도시화지역	66 (50.8%)	66 (50.8%)	14,339 (63.4%)	14,339 (63.4%)	420,094 (0.9%)	420,094 (0.9%)
	해룡면	66	66	14,339	14,339	420,094	420,094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군구 총 기초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에 대한 도시화지역내 총 기초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의 비율을 보여줌

2) 이탤릭체는 2안에서는 도시화지역에 포함되지만 3안에서는 총인구 기준에 미달해서 도시화지역에서 배제되는 구역을 나타냄



<그림 39> 순천시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3) 영암군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암군의 경우 영암읍은 1안, 2안, 3안 각각을 적용했을 경우 모두 하나의 도시화지역이 나타나는데, 인구측면에서 1안은 5,494명으로 나타나고, 2안 및 3안에서는 4,683명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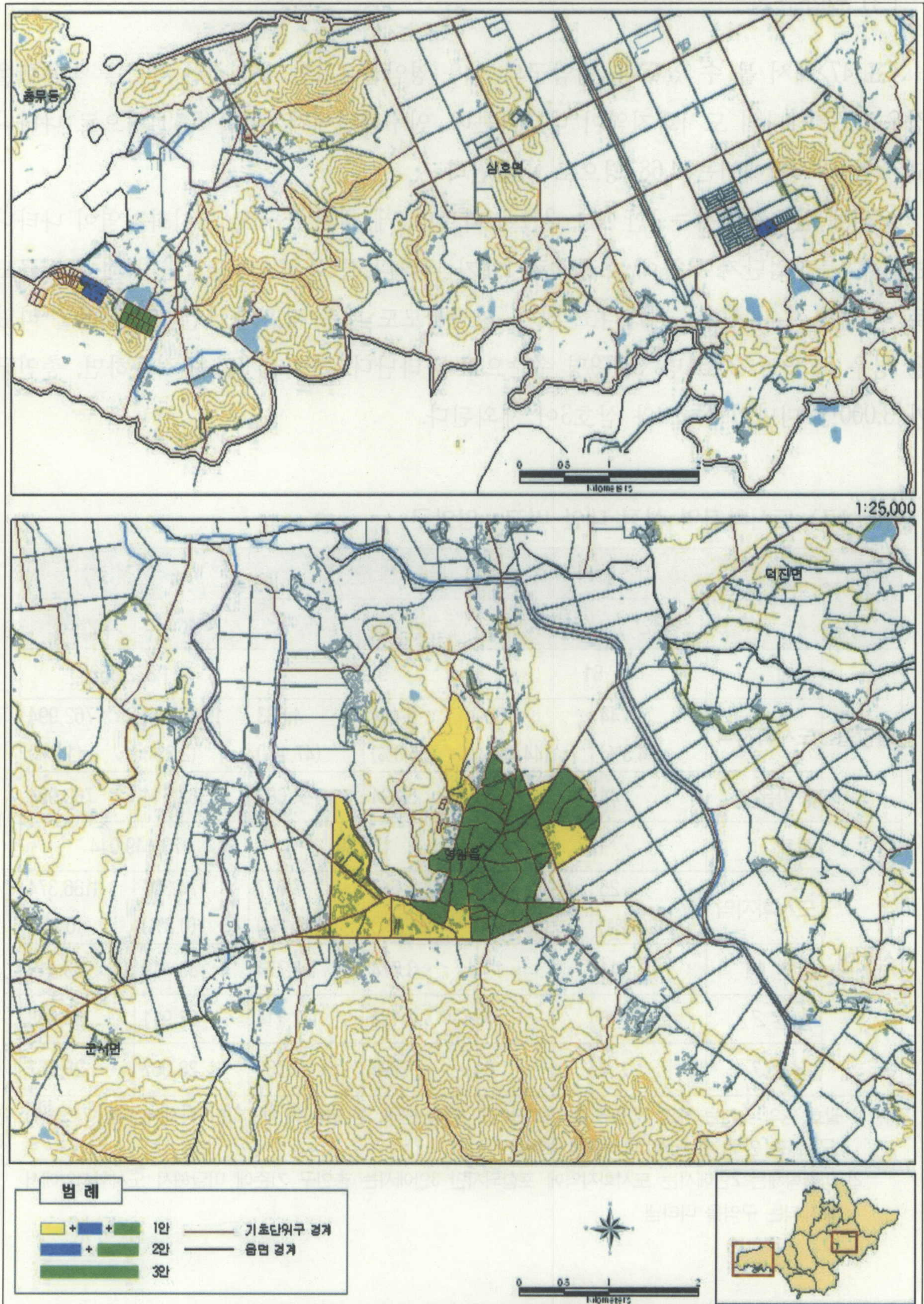
이외에 삼호면에서는 1안 또는 2안에 따르면, 세 개의 소규모 도시화지역이 나타나는데, 대불산업단지 부근에 소규모로 1개가 나타나고, 삼호지방산업단지 내에 소규모로 두 군데로 나뉘어져 나타나고 있다. 인구규모도 매우 작는데, 1안 또는 2안을 따랐을 경우 1,739명, 2,134명, 3,779명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3안을 적용하면, 총인구가 3,000명 미만인 삼호2와 삼호3이 제외된다.

<표 47> 도시화지역 설정 대안 비교: 영암군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1안	2안3안	1안	2안3안	1안	2안3안
영암읍	전체	81		9,935		61,822,352	
	도시화지역	44 (54.3%)	36 (44.4%)	5,494 (55.3%)	4,683 (47.1%)	1,363,614 (2.2%)	762,994 (1.2%)
	영암읍	44	36	5,494	4,683	1,363,614	762,994
삼호면	전체	123		17,289		73,149,014	
	도시화지역	25 (20.3%)	24 (19.5%)	7,647 (44.2%)	7,627 (44.1%)	174,397 (0.2%)	166,374 (0.2%)
	삼호 1	11	11	3,774	3,774	83,419	83,419
	삼호 2	8	7	2,134	2,114	62,911	54,888
	삼호 3	6	6	1,739	1,739	28,067	28,067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군구 총 기초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에 대한 도시화지역내 총 기초단위구 수(총 인구, 총 면적)의 비율을 보여줌

2) 이탤릭체는 2안에서는 도시화지역에 포함되지만 3안에서는 총인구 기준에 미달해서 도시화지역에서 배제되는 구역을 나타냄



<그림 40> 영암군 도시화지역 설정대안 비교

## 2. 도시화지역 설정 최종안 검토

### 1) 도시화지역 설정 최종안의 기준 검토

#### (1) 도시화지역 최종안의 일반적 기준 검토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즈를 제외한 선진외국의 경우, 통계 조사 및 생산의 최소공간 단위를 기본단위로 사용해서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공간단위의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국에서는 인구밀도를 사용한다. 반면에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에서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 특성을 종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및 토지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구밀도는 3,000명/km<sup>2</sup>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밀도 분포가 유사한 일본 인구집중지구의 기준을 참고로 할 경우와 유사하다. 즉 일본의 인구밀도 기준인 4,000명/km<sup>2</sup>은 설정당시 주택호당 거주인원이 현재보다 높은 4인 정도였을 것이다.

둘째,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물바닥면적비율은 10%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농촌적 특성을 지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상한 건폐율 20%에서 공공시설용지 50%를 감안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시설부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기초단위구를 도시화지역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 인구집중지구의 경우, 기본단위구에서 공공시설부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집중지구로 포함하는 것을 참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초단위구들이 도시화지역 후보지역으로 된다.

바꾸어 말해, 앞서 본 2안 및 3안을 만족하는 기초단위구들이 도시화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초단위구들의 공간적 연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물리적 연결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임계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가지 형성이 비교적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지적인 도시개발은 별도의 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와 같은 임계거리를 적용할 경우(예: hop connection 또는 jump connection),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농촌적 경관이 우세한 구역이 도시화지역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표상 도시적 특성을 갖는 기초단위구가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기초단위구들로 둘러싸인 기초단위구들도 도시화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해 최소 인구규모 기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3안에서 제시한 3,0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기준은 면급도시계획 수립지역의 하나의 기준이었으며, 일본의 준인구집중지구의 기준치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아파트지구 근린주구의 최소규모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도시화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이를 달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을 달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8〉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안의 일반적 기준

항 목	내 역
도시화지역 설정의 최소공간단위	통계청의 기초단위구
도시화지역 설정의 공간적 단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도시적 특성의 기초단위구	① 인구밀도 3,000인/k㎡이상 이거나 ② 건물바닥면적비율 10%이상 이거나 ③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이 50%이상임
도시화지역의 연속성	도시화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기초단위구들이 연속하는 구역 및 그 내부에 둘러싸인 기초단위구들
도시화지역의 최소인구규모	3,000명 이상이 되는 도시화지역



## (2) 도시화지역 최종안의 하위지역 및 연합도시화지역 설정 검토

도시화지역의 설정과 관련해서 기타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지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해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군을 제외하고 구별로 도시화지역 설정과 명명이 필요하다. 구별로 다수의 분절된 도시화지역이 나타날 경우 인구규모가 큰 순서로 區部와 행정동명(면적상 주로 걸치는 행정동의 이름을 이용)으로 명명하되 동일한 동명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규모 순으로 1, 2, 3, ... 등으로 구분해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농복합시의 洞部지역은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洞部라고 명명하고, 분리되어 나타날 경우 인구규모가 큰 순서로 洞部와 행정동명을 사용한다. 그런데 동일한 동명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인구규모의 순서에 따라 1, 2, 3 ...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시의 경우 두 개 이상 도시화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인구규모 순서로 시부, 행정동명을 사용하고, 동일 동명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인구규모 순으로 1, 2 등으로 구분해서 명명한다. 도농복합시 洞部 이외의 지역 및 군지역은 읍, 면 단위로 도시화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분리된 경우, 역시 인구규모에 따라 1, 2, 3 ...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별시 및 광역시의 區部가 연접한 경우 연합도시화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남구, 북구의 도시화지역이 연접해서 나타나고 있다. 도농복합시내 洞部지역 및 읍면지역이 연접한 경우에도 연합도시화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사례지역 중에서 순천시 洞部와 해룡면이 연접하여 도시화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시나 군들이 연접되는 경우 연합도시화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설정하고자 하는 도시화지역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인구집중지구로, 규모가 다소 작은 지역은 준인구집중지구로 명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 규모가 작은 지역은 도시클러스터(urban cluster)라 부르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는 도시취락(urban settlement)으로 명명하였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sett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urban centre로, 규모가 작은 도시화지역에 대해서는 loc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넷째, 도시화지역에 대한 새로운 명칭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집중지구, 도시집적지구, 도시밀집지구, 도시화된 지구, 시가지, 시가화된 구역 등 다양한 용어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표 49〉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안의 기타 검토사항

항목	내역
도시화지역의 명명	①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설정하고, 구내에서는 인구규모 순서로 區部, 행정동명을 이용해서 명명하고 동일한 동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1, 2 등으로 구분해서 명명 ② 도농복합시의 경우 洞部, 읍면명으로 명명하되, 동일 洞部나 읍면에서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각각 인구규모순서로 洞部에서는 區部와 행정동명으로 명명하고 동일 동명을 사용할 경우 1, 2 등으로 구분해서 명명하고, 읍면에서는 1, 2 등으로 역시 구분해서 명명 ③ 시의 경우 두 개 이상 도시화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인구규모 순서로 시, 행정동명을 사용하고, 동일 동명을 사용하게 될 경우, 1, 2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 ④ 군의 경우 읍면명을 사용하되, 동일 읍면에서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인구규모 순서로 1, 2 등으로 명명
연합도시화지역의 설정	① 특별시, 광역시 區部の 경우 연합도시화지역 설정 ② 도농복합시나 군지역의 경우 洞部 및 읍면이 연접한 경우 연합도시화지역 설정 ③ 다른 시나 군들이 연접되는 경우 연합도시화지역을 설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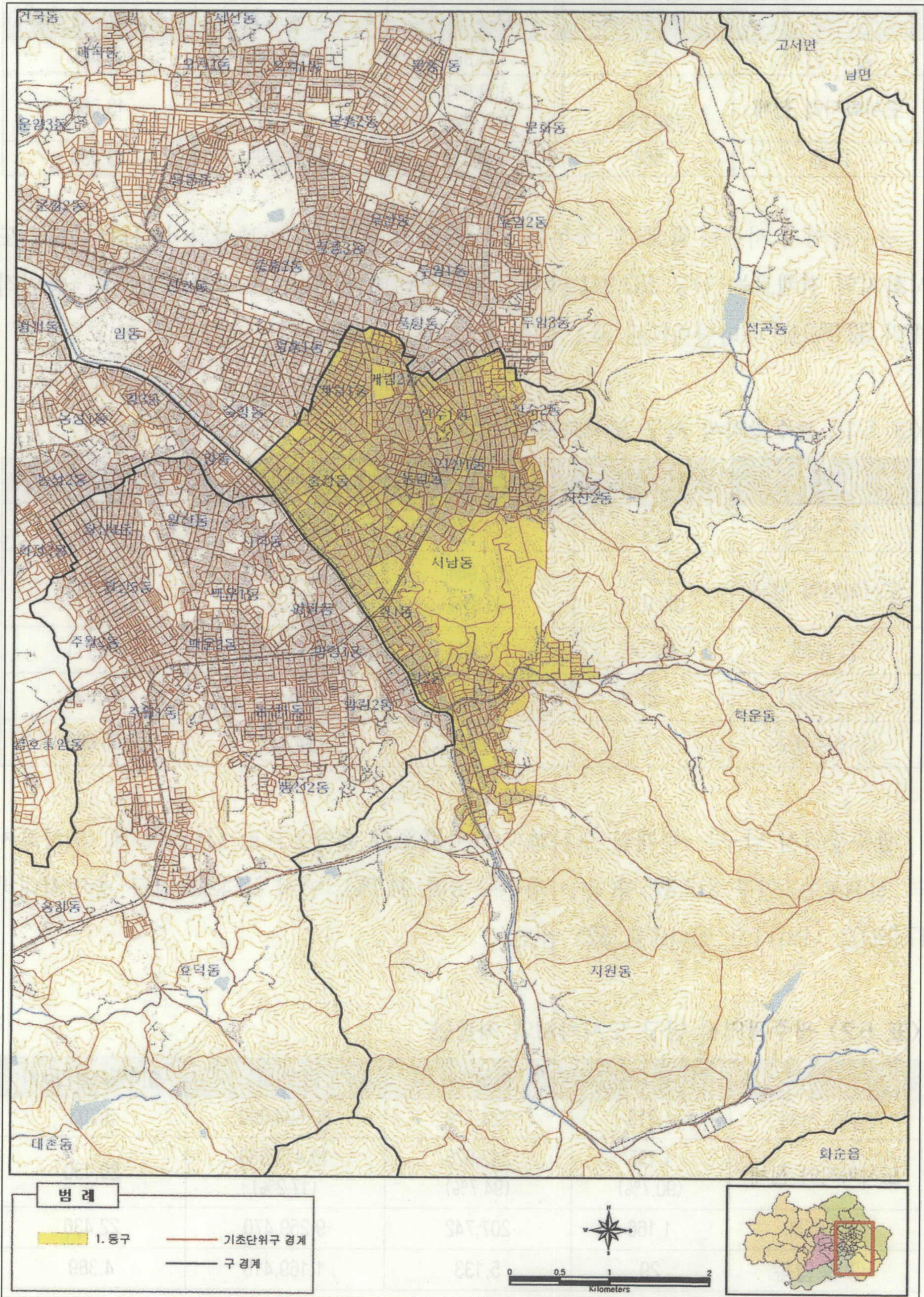
## 2) 사례지역별 도시화지역 최종안 검토

〈표 48〉 및 〈표 49〉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앞 장에서 살펴본 도시화지역 설정방안 세 개 중에서 3안을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방안으로 제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준을 적용하여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별로), 순천시, 영암군의 도시화지역을 설정해 보았다.

###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는 하나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인구 108,517명(동구 총인구대비 95.2%), 면적 8.26km<sup>2</sup>(동구 총면적대비 17.1%)로 나타난다(〈표 50〉 참조).



<그림 41>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표 50〉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동구 전체	935	113,922	48,521,443	2,348
도시화지역 전체	868 (92.8%)	108,517 (95.2%)	8,296,686 (17.1%)	13,080
區部	868	108,517	8,296,686	13,080

광주광역시 서구는 區部 및 상무동 1, 상무동 2 등 세 개로 분절되어 나타나는데,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262,941명(서구 총인구대비 95.3%), 면적 14.83km<sup>2</sup>(서구 총면적 대비 32.0%)로 나타난다(〈표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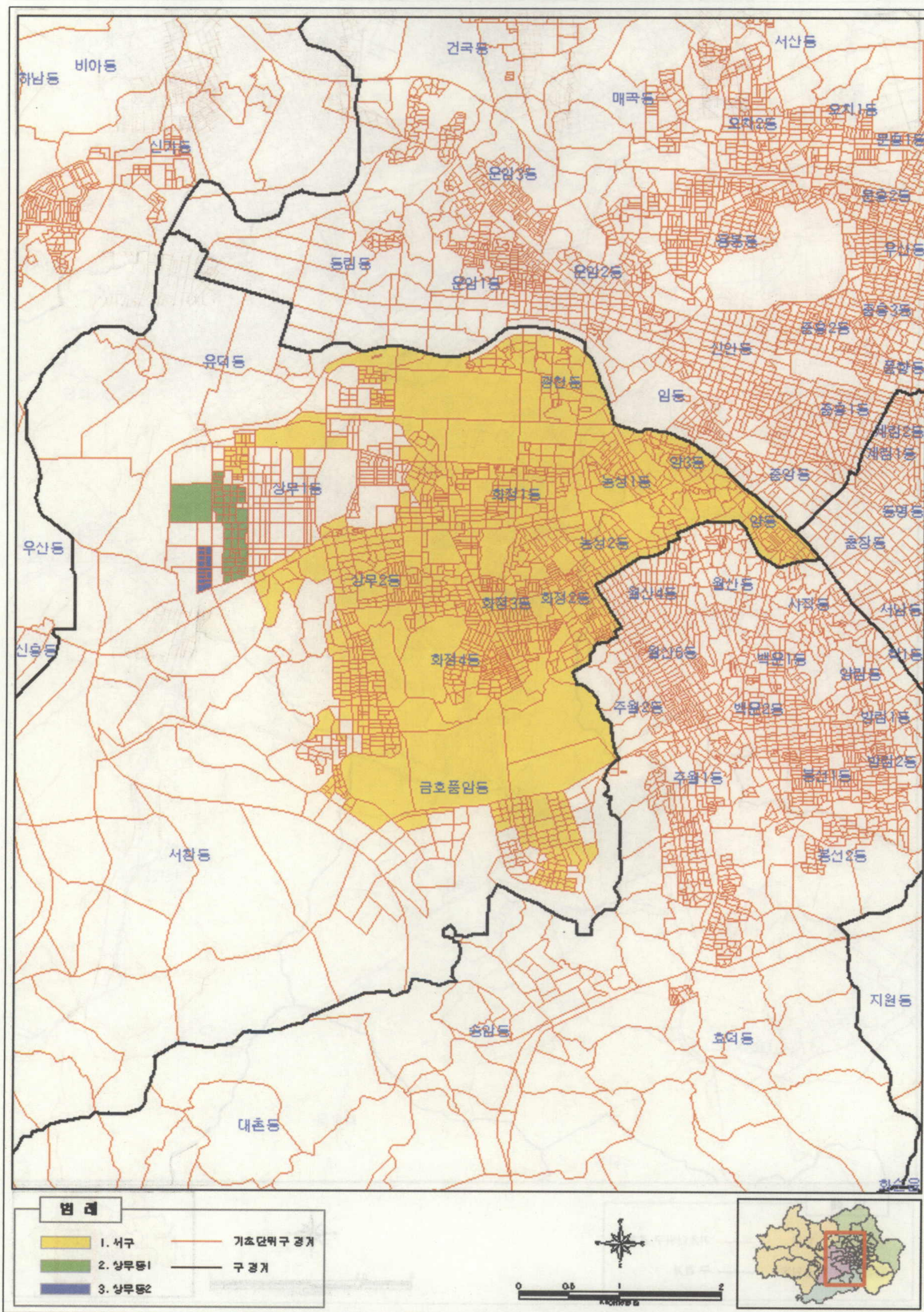
〈표 5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서구 전체	1,657	274,526	46,339,092	5,924
도시화지역 전체	1,341 (80.9%)	262,941 (95.8%)	14,827,374 (32.0%)	17,733
① 區部	1,274	237,914	14,322,978	16,611
② 상무동1	55	21,111	439,849	47,996
③ 상무동2	12	3,916	64,547	60,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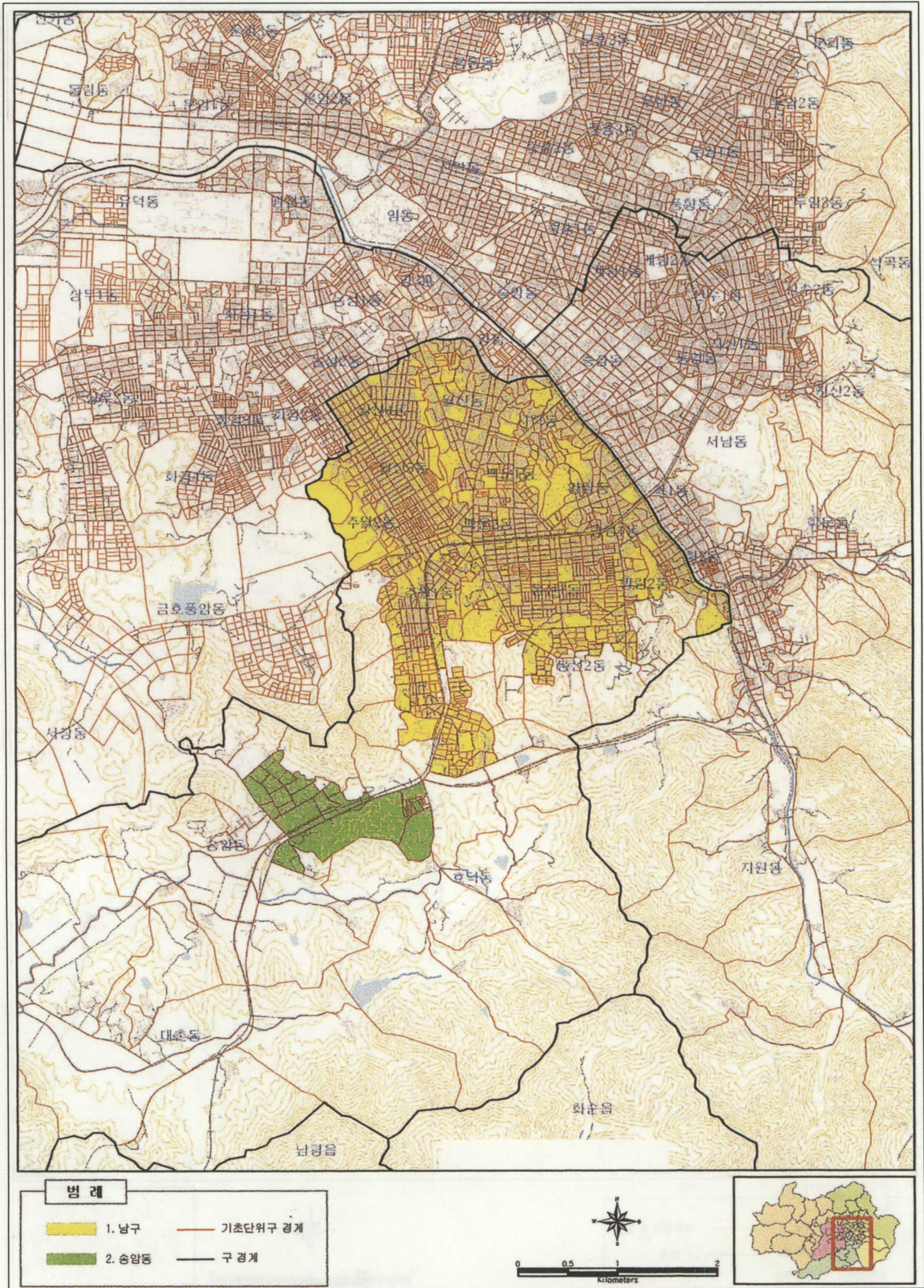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남구는 두개의 도시화지역인 區部와 송암동으로 나타나는데,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212,875명(남구 총인구대비 94.7%), 면적 10.42km<sup>2</sup>(남구 총면적대비 17.2%)로 나타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남구 전체	1,318	224,779	60,694,099	3,703
도시화지역 전체	1,195 (90.7%)	212,875 (94.7%)	10,419,888 (17.2%)	20,430
① 區部	1,166	207,742	9,259,470	22,436
② 송암동	29	5,133	1,169,418	4,389



<그림 42>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그림 43>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광주광역시 북구는 區部 및 동림동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나는데,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454,617명(북구 총인구대비 96.8%), 면적 29.22km<sup>2</sup>(북구 총면적대비 24.0%)로 나타나고 있다(〈표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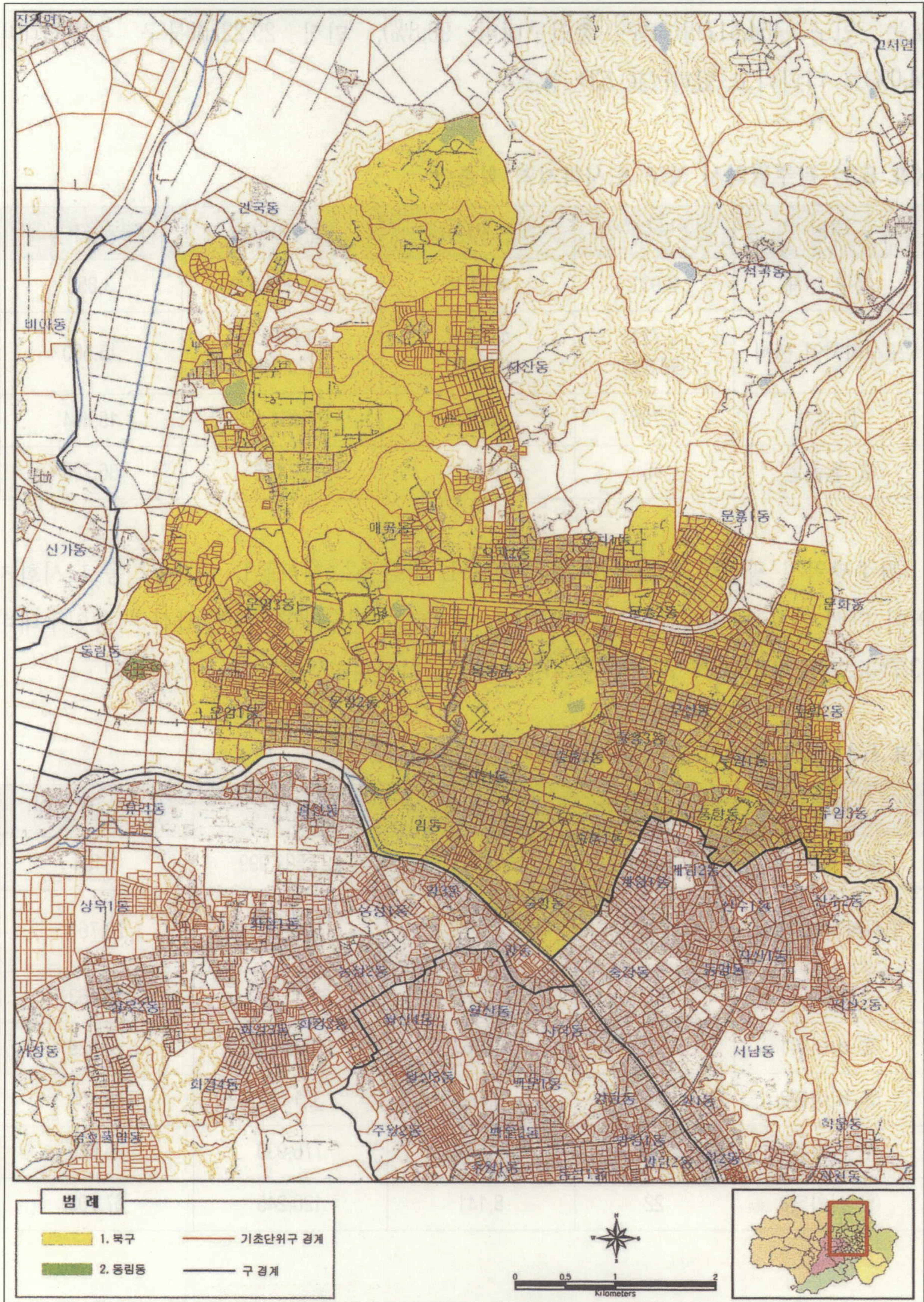
〈표 53〉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북구 전체	2,931	469,616	121,907,599	3,852
도시화지역 전체	2,721 (92.8%)	454,617 (96.8%)	29,216,806 (24.0%)	15,560
① 區部	2,705	449,076	29,154,120	15,404
② 동림동	16	5,441	62,686	86,798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區部, 비아동1, 비아동2, 신가동1, 신가동2 등 도시화지역이 다섯 개로 나타나는데,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204,851명(광산구 총인구대비 83.7%), 면적 9.87km<sup>2</sup>(북구 총면적대비 4.7%)로 나타나고 있다(〈표 5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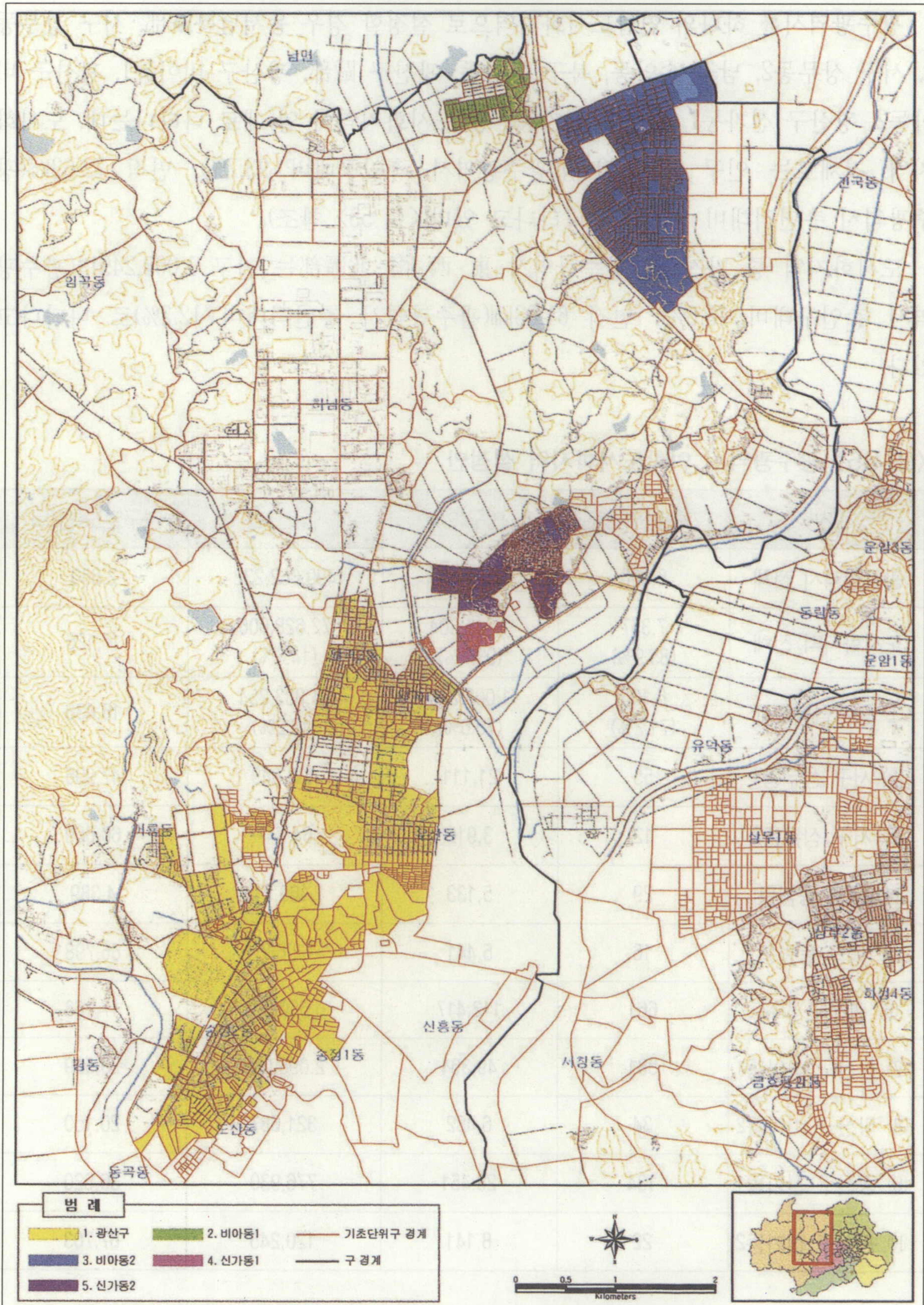
〈표 5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광산구 전체	1,725	244,622	221,599,999	1,104
도시화지역 전체	1,232 (71.4%)	204,854 (83.7%)	9,867,252 (4.7%)	20,761
① 區部	661	112,417	6,550,332	17,163
② 비아동1	381	49,364	2,098,058	23,529
③ 비아동2	34	6,482	321,687	20,150
④ 신가동1	134	28,451	776,930	36,620
⑤ 신가동2	22	8,141	120,245	67,703



<그림 44>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그림 4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화지역 최종안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연합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동서남북區部, 서구 상무동 1, 서구 상무동2, 남구 송암동, 북구 동림동, 광산구 區部, 광산구 비아동1, 광산구 비아동2, 광산구 신가동1, 광산구 신가동2 등 도시화지역이 열 개로 나타나는데, 도시화 지역 전체로는 인구 1,243,804명(광주광역시 총인구대비 93.7%), 면적 72.63km<sup>2</sup>(광주광역시 총면적대비 14.6%)로 나타나고 있다(〈표 55〉 참조).

도시화지역 중 가장 큰 광주광역시 東·西·南·北區部는 인구 1,003,249명(광주광역시 총인구대비 75.6%), 면적 61.03km<sup>2</sup>(광주광역시 총면적대비 12.2%)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 광주광역시 연합도시화지역 설정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광주광역시 전체	8,566	1,327,465	499,062,232	2,660
도시화지역 전체	7,357 (85.9%)	1,243,804 (93.7%)	72,628,006 (14.6%)	17,126
① 동서남북區部	6,103 (71.2%)	1,003,249 (75.6%)	61,033,254 (12.2%)	16,438
② 서구 상무동1	55	21,111	439,849	47,996
③ 서구 상무동2	12	3,916	64,547	60,669
④ 남구 송암동	29	5,133	1,169,418	4,389
⑤ 북구 동림동	16	5,441	62,686	86,798
⑥ 광산구 區部	661	112,417	6,550,332	17,163
⑦ 광산구 비아동1	381	49,364	2,098,058	23,529
⑧ 광산구 비아동2	34	6,482	321,687	20,150
⑨ 광산구 신가동1	134	28,451	776,930	36,620
⑩ 광산구 신가동2	22	8,141	120,245	67,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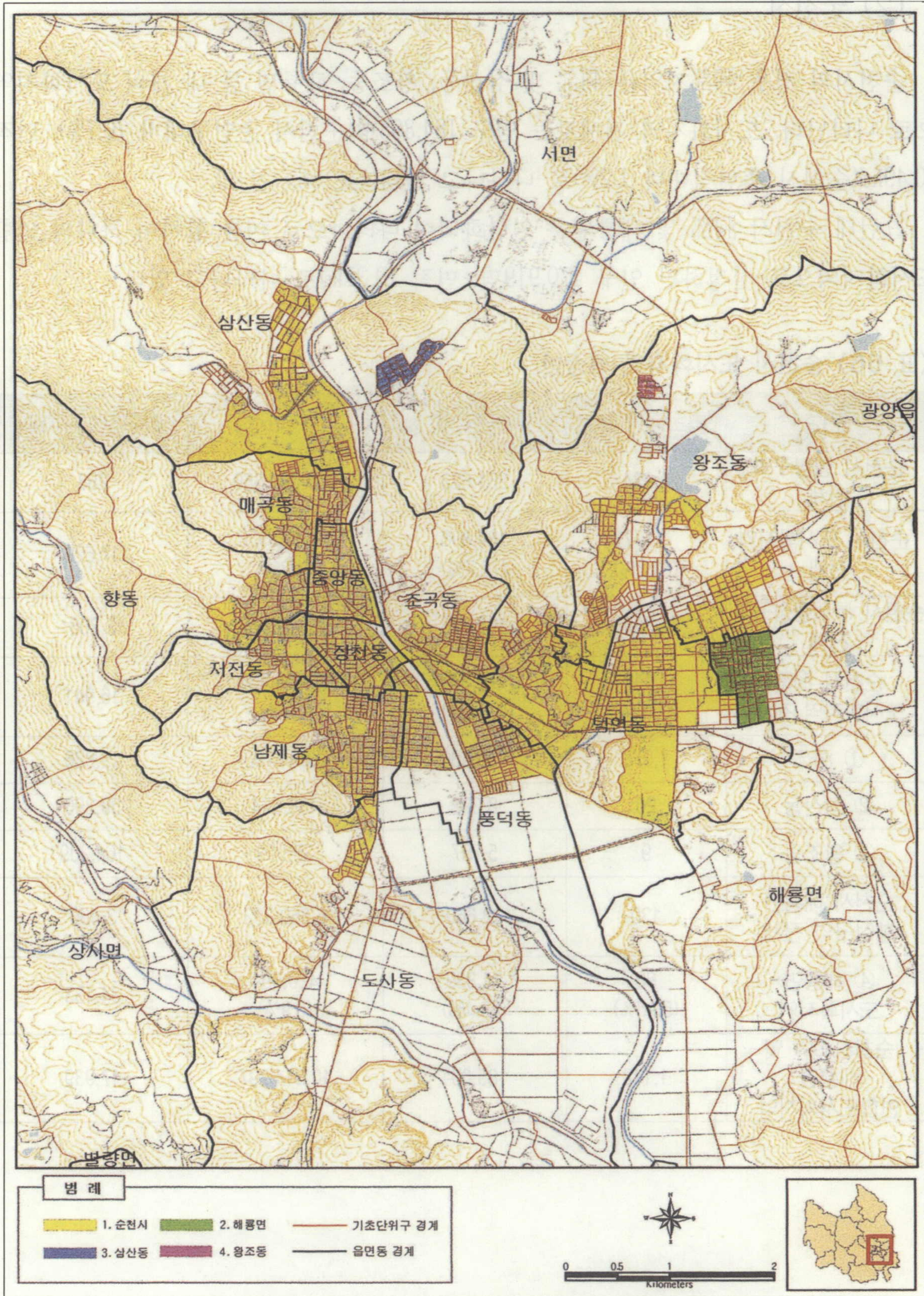
## (2) 순천시

순천시의 경우 洞部지역은 洞部 및 삼산동, 왕조동, 해룡면 등 네 개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난다.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184,898명(순천시 총인구대비 70.7%), 면적 10.49km<sup>2</sup>(순천시 총면적대비 1.2%)로 나타나고 있다(<표 56> 참조).

그런데 순천시 洞部 및 해룡면은 연담화되어 나타나므로 이를 합하여 하나의 연합 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하면 인구 170,919명, 면적 10.31km<sup>2</sup>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56&gt; 순천시 도시화지역 최종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	1,924	261,622	909,099,556	288
순천시 도시화지역 전체	1,177 (61.2%)	184,898 (70.7%)	10,488,530 (1.2%)	17,629
순천시 洞部행정구역 전체	1,384	194,645	88,167,059	2,208
순천시 洞部 도시화지역 전체	1,111 (80.4%)	170,559 (87.6%)	10,068,436 (11.4%)	16,941
① 洞部	1,076	156,580	9,894,703	15,826
② 삼산동	26	8,222	138,674	59,290
③ 왕조동	9	5,757	35,059	164,209
순천시 해룡면 행정구역 전체	130	22,660	6,550,332	3,460
④ 해룡면 도시화지역	66 (50.8%)	14,339 (63.4%)	420,094 (0.9%)	34,133
순천시 洞部 및 해룡면 연합도시화지역	1,142	185,031	10,314,797	17,939



<그림 46> 순천시 도시화지역 최종안

## (3) 영암군

영암군의 경우 영암읍, 삼호면 등 두 개의 도시화지역으로 나타난다(〈표 57〉 참조). 도시화지역 전체로는 인구 8,457명(영암군 총인구대비 14.3%), 면적 0.85km<sup>2</sup>(영암군 총면적대비 0.1%)로 나타나고 있다.

영암읍 도시화지역은 인구 4,683명(영암읍 총인구대비 47.1%), 면적 0.76km<sup>2</sup>(영암읍 총면적대비 1.2%)로 나타나고 있다. 삼호면 도시화지역은 인구 3,774명(삼호면 총인구 대비 21.8%), 면적 0.08km<sup>2</sup>(삼호면 총면적대비 0.1%)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영암군 도시화지역 설정안

구분	기초단위구수	인구(인)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영암군 행정구역 전체	489	59,281	571,307,746	288
영암군 도시화지역 전체	47 (9.6%)	8,457 (14.3%)	846,413 (0.1%)	9,992
영암읍 행정구역 전체	81	9,935	61,822,352	161
① 영암읍 도시화지역	36 (44.4%)	4,683 (47.1%)	762,994 (1.2%)	6,138
삼호면 행정구역 전체	123	17,289	73,149,014	236
② 삼호면 도시화지역	11 (8.9%)	3,774 (21.8%)	83,419 (0.1%)	45,241



<그림 51> 영암군 도시화지역 최종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1) 결론

1995년 지방행정구역제도의 하나인 시가 종전에 사용하였던 개념에서 확대되어 도시와 농촌의 개념이 통합된 도농복합(광역시의 경우도 군지역을 포함한 형태도 있음) 형태의 시가 탄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전에 흔히 도시로 사용하던 5만 이상의 시지역(혹은 2만 이상의 읍지역 포함)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외국에서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별도로 시가화된 지역(built-up area)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 기준 및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사례지역으로 광역시인 광주광역시, 도농복합시인 순천시, 군지역인 영암군을 사례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시화지역 설정방법과 도시화지역 설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잉글랜드·웨일즈를 제외한 선진외국의 경우, 통계 조사 및 생산의 최소공간단위지역을 기본단위로 사용해서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공간단위의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국에서는 인구밀도를 사용한다. 반면에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에서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 특성을 종합하여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설정한 최소공간단위인 기초단위구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사례지역별 기초단위구별 인구 및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구특성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인구밀도를 사용하고, 토지이용 특성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구축중인 토지종합정보망의 수치지형도상 건물바닥면적비율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화지역에 대한 설정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적 특성으로 기초단위구가 인구밀도는 3,000명/km<sup>2</sup>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인구밀도가 유사한 일본 인구집중지구의 기준인 4,000명/km<sup>2</sup>와 유사한 것으로 설정당시 주택호당 거주인원이 현재보다 높은 4인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물바닥면적비율은 10%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농촌적 특성을 지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법률상 용도지역의 상한 건폐율 20%에서 공공시설용지 50%를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기초단위구를 도시화지역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공공시설부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집중지구에 포함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둘째, 이 세 가지 기준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초단위구들이 도시화지역 후보지역으로 되지만, 이러한 도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초단위구들의 공간적 연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물리적 연결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임계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가지 형성이 비교적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지적인 도시개발은 별도의 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표상 도시적 특성을 갖는 기초단위구가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기초단위구들로 둘러싸인 기초단위구들도 도시화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해 최소 인구규모 기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3,0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기준은 면급도시계획 수립지역의 하나의 기준이었으며, 일본의 준인구집중지구의 기준치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아파트지구 근린주구의 최소규모이기도 하다.

따라서 3,000명 이상이되는 지역을 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5,000명이나 10,000명 이상되는 지역을 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의 지역은 준도시화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앞서 분석에서는 1,500명 이상되는 지역을 검토하였는데, 필요하다면 1,500명 이상 2,999명되는 지역도 준도시화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첫째, 사례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화지역 설정기준과 방법을 논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어 도시화지역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지역 설정방안을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토지이용 특성으로 제시한 건물바닥면적 자료는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1997년에서 1998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부지면적의 경우 자료의 입력년도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200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두가지 지표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적 제언

### 1) 도시화지역 설정의 활용방안 제고

기초단위구를 활용한 도시화지역의 설정은 통계 공간단위로서 연속성 및 항구성을 지니며, 따라서 소지역 자료 분석에 유용하다. 단위구역을 토대로 해서 다른 공간정보 통계와 연계하면, 소지역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지역 관련 분야의 연구자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화지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나 읍의 승격 기준에 시가지란 개념을 도시화지역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림부에서는 농촌지역의 개념을 도시화지역을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화지역 개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산업입지계획, 교통계획 등에 기본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밖에 도시화지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도시화지역 활용사례로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화지역을 설정하고 있다(〈표 58〉). 영국의 경우, 부총리실(산하 도시정책 부서), 환경부, 농림부 등 도시 및 농촌정책의 기본지역으로 도시화지역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시가지재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교통계획, 환경위생대책, 범죄·방재대책 등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도시화지역을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 이외에도, 도시 및 농촌 관계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도시화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표 58〉 미국 도시화지역 설정과 관련부처의 활용사례

구 분	내 용
농림부	- 기업 및 산업 지원 프로그램과 수자원 및 쓰레기장 지원기금의 지원은 도시지역을 제외함
농촌주택관리청	- 도시지역은 농촌개발계획 지원에서 제외
핵관리위원회	- 핵폐기물은 10만 이상 도시지역을 통과하지 못함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의료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공급은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국한됨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함
주택도시개발부	- 지역개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주택건축보조가 필요한 도시지역을 선정
환경보호청	- 대도시와 그 주변의 대기과 용수의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해 도시지역을 사용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 결정을 위하여 도시지역 수준에서 생산되는 통계 사용
연방고속도로관리청	- 주나 대도시계획기구에서 공적 도로의 기능분류를 관리하는 개발계획 수립시 사용
연방교통관리청	- 철도나 버스체계에의 투자기금 할당 시 도시지역 사용
통 계 청	- 대도시지역(MA) 설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

## 2) 기초단위구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이밖에 기초단위구 등 통계지역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통계지역이란 행정구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단위로 설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통계지역 통계란 통계지역을 단위로 생산하는 통계이다. 항구적으로 고정된 단위지역을 이용하므로 행정구역 통계와 달리 시계열 확보가 쉽고, 지역적 등질성이 확보됨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도시 및 지역계획, GIS 분야 등 민간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통계단위 연구 및 정책 수립 시 시계열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구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통계지역의 설정과 통계정보의 생산 및 보급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주요 외국의 경우, 도시화지역 설정은 통계 생산(또는 조사)의 기초단위를 최소공간단위로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서 미국의 센서스블록(census block) 및 센서스블록그룹(census block group), 영국 스코틀랜드의 우편번호구역(postcode), 그리고 일본의 기본단위구 등,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센서스 조사구역(census collection district)을 들 수 있다.

기초단위구를 기본단위로 활용해서 수행하는 도시화지역 설정은 인구주택총조사 연도인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2010년, 2015년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도시화지역의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 계획 및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도시지역 변화의 시계열적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화지역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의 활용을 위해서는 설정의 기본단위인 기초단위구가 소지역 통계단위로서 항구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단위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과 연계되어 그러한 다양한 통계자료의 기본공간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계청에서는 소지역에 대한 그리고 기초단위구에 근거해서 설정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접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인프라 위에서 도시 및 지역분석 관련 전문가들이 손쉽게 자료를 접근하게 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도시 및 지역정책의 방향과 방안들이 다양하게 그

리고 정확하게 모색될 것이다. 특히, GIS에 기초해서 설정되는 기초단위구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가 가능하다. 앞서 본 도시화지역 설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에서 산출한 건물바닥면적 및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기초단위구와 연계시킨 것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요컨대, 기초단위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가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초단위구는 도시 연구자, 도시 계획 및 정책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도시내 소지역을 비롯한 도시 전반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도시화지역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즉, 도시화지역을 통해 시가화된 지역의 면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화지역으로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실질적 도시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그 변화도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GIS에 기초한 기초단위구의 설정은 가급적 지적과 일치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통계지역의 계층이 지적 → 기초단위구 → 통계구 등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적도면과 기초단위구가 연계되면 지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예를 들면 지적별 토지이용, 지가 등)와 연계한 다양한 분석과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원용외, 1985,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1) 대도시권의 설정과 기능정립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김용웅외, 2004, 「공간분석기법」, 한울.
- 김영표,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혜천 외, 2004, 도시: 현대 도시의 이해, 대왕사.
- 사공호상, 2002,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화지역의 확산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정철, 1992,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유해웅외, 2002, 「국토관련법령해설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국토연구원.
- 이한순, 1982, “도시지역 획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통권 1호, pp.70-94.
- 건설교통부, 2004, 2003년도 도시계획현황
- (財)日本統計協會, 1990, 「都市分類」, (財)日本統計協會: 東京.
- 總務省統計局, 「平成12年國勢調査 編輯·解説シリーズ : 我が國の人口集中地區-人口集中地區別人口·境界圖」, 總務省統計局.
- 日笠 端, 市町村の都市計劃2 : 市街地の計劃的制御, 1998
- Adams, J S, Van Drasek B J & Phillips E G, 1999, “Metropolitan area definition in the United States,” *Urban Geography* 20(8), pp.695-726.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3, *Selected Characteristics for Urban Centres and Localities : New South Wales 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001.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2, *2000 Demographic Yearbook* 52, United Nations: New York.

The Census Bureau, 2002, "Urban area criteria for census 2000," *Federal Register* 67(51), pp.11667-11670 (www.census.gov에서 제공됨).

DTLR, 2002, *A Review of Urban and Rural Area Definitions Project Report* (www.statistics.gov.uk에서 제공됨).

ODPM, 2003, *Urban and Rural Area Definitions : User's Guide* (www.statistics.gov.uk에서 제공됨).

건설교통부(www.moct.go.kr)

영국통계청(www.statistics.gov.uk).

스코틀랜드통계청(www.gro-scotland.gov.uk).

일본통계국(www.stat.go.jp).

미국통계청(www.census.gov).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www.abs.gov.au).

## 부록 1 광주광역시 동별 도시화지역 최종안

〈표 59〉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洞名)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총장동	88	88	4,436	4,436	1,126,441	1,126,441
동명동	66	66	6,666	6,666	436,318	436,318
계림1동	96	96	8,323	8,323	499,483	499,483
계림2동	59	59	10,100	10,100	415,979	415,979
산수1동	71	71	11,355	11,355	588,390	588,390
산수2동	85	81	13,323	12,741	822,630	447,743
지산1동	30	30	4,471	4,471	265,840	265,840
지산2동	87	81	8,737	8,372	2,440,852	626,099
서남동	50	50	5,447	5,447	1,262,229	1,262,229
학1동	33	33	5,286	5,286	640,812	640,812
학2동	48	48	4,419	4,419	212,205	212,205
학운동	88	70	14,053	13,053	11,470,270	1,029,702
지원동	134	95	17,306	13,848	28,339,994	745,444

총 면적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60〉 광주광역시 서구

동명(洞名)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양동	57	57	7,591	7,591	458,150	458,150
양3동	37	37	6,506	6,506	304,885	304,885
농성1동	74	74	11,128	11,128	942,071	942,071
농성2동	51	51	7,375	7,375	447,211	447,211
광천동	63	60	9,672	9,672	1,021,493	920,480
유덕동	66	37	10,441	8,364	6,708,600	1,357,499
상무1동	348	184	48,503	46,283	3,783,578	1,496,128
상무2동	143	138	29,173	28,851	1,640,603	1,400,416
화정1동	98	98	15,139	15,139	846,345	846,345
화정2동	152	152	22,494	22,494	887,203	887,203
화정3동	111	111	14,370	14,370	756,221	756,221
화정4동	125	125	25,193	25,193	1,105,124	1,105,124
서창동	332	217	66,941	59,975	27,437,606	3,905,639

총 면적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61〉 광주광역시 남구

동명(洞名)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양림동	41	41	7,323	7,323	575,096	575,096
방림1동	40	40	5,696	5,696	296,214	296,214
방림2동	93	91	19,550	19,338	923,961	768,400
사직동	51	51	8,776	8,776	607,121	607,121
월산동	71	71	14,890	14,890	843,925	843,925
월산4동	100	100	14,456	14,456	647,699	647,699
월산5동	67	67	10,919	10,919	429,207	429,207
백운1동	58	58	12,409	12,409	456,270	456,270
백운2동	74	74	8,666	8,666	475,208	475,208
주월1동	184	179	28,645	27,678	1,860,362	1,480,687
주월2동	108	108	13,068	13,068	834,662	834,662
효덕동	141	120	29,297	28,260	9,315,506	1,037,502
송암동	56	28	7,612	5,133	5,665,805	1,029,478
봉선1동	92	92	14,826	14,826	398,079	398,079
봉선2동	83	75	22,152	21,387	1,841,094	549,341
대촌동	59	0	6,494	0	35,523,891	0

총 면적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6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명(洞名)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송정1동	60	50	11,602	9,901	1,488,569	461,719
송정2동	63	61	8,611	8,553	820,689	743,299
도산동	87	57	15,667	13,568	5,374,973	706,350
신흥동	37	21	4,169	2,721	4,978,783	520,453
어룡동	133	82	17,461	13,397	18,039,798	1,604,588
우산동	199	187	31,536	31,317	4,432,622	1,465,447
월곡1동	116	112	18,206	18,147	682,165	495,233
월곡2동	100	91	15,267	14,813	1,230,377	553,242
비아동	464	415	58,091	55,846	12,854,547	2,419,745
신가동	269	156	42,157	36,592	8,274,585	897,175
하남동	67	0	4,423	0	17,634,645	0
임곡동	22	0	3,167	0	29,573,136	0
동곡동	17	0	2,853	0	14,988,134	0
평동	46	0	4,905	0	29,714,626	0
삼도동	23	0	3,760	0	37,788,961	0
본량동	22	0	2,747	0	33,723,389	0

총 면적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63〉 광주광역시 복구

동명(洞名)	기초단위구 수		총 인구		총 면적(m <sup>2</sup> )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동 전체	도시화지역
중흥1동	86	86	5,927	5,927	754,412	754,412
중흥2동	85	85	12,732	12,732	489,843	489,843
중흥3동	69	69	9,263	9,263	389,498	389,498
중앙동	68	68	5,224	5,224	678,220	678,220
임동	101	100	10,737	10,737	1,313,327	1,240,293
신안동	132	132	15,529	15,529	1,233,317	1,233,317
용봉동	285	285	32,557	32,557	3,156,418	3,156,418
운암1동	150	147	16,221	16,150	1,214,881	989,903
운암2동	130	128	21,266	21,266	1,397,003	1,327,642
운암3동	124	124	21,030	21,030	1,295,694	1,295,694
동림동	110	77	22,429	21,572	4,303,513	926,875
우산동	139	138	21,784	21,784	969,841	940,054
풍향동	60	60	10,211	10,211	773,531	773,531
문화동	84	75	19,393	18,902	3,190,364	813,716
문흥1동	101	95	23,854	23,708	2,324,709	528,998
문흥2동	92	88	25,239	25,239	624,744	551,934
두암1동	81	81	11,678	11,678	523,041	523,041
두암2동	132	130	25,772	25,769	1,595,112	852,316
두암3동	148	143	24,515	24,426	1,438,508	679,878
서산동	269	251	44,148	43,409	7,130,314	2,787,434
매곡동	45	45	11,784	11,784	1,803,315	180,3315
오치1동	118	115	14,780	14,510	1,640,854	967,820
오치2동	83	81	19,183	19,166	620,172	575,071
석곡동	33	0	3,316	0	48,197,827	0
건국동	206	118	41,044	3,1944	34,849,141	4,937,583

총 면적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값임

##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화지역

〈표 64〉 캘리포니아의 도시화지역 (urbanized area) 설정 현황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Antioch	217,591	156,121,048	3609.8
Atascadero	54,762	79,747,822	1778.5
Bakersfield	396,125	285,740,955	3590.5
Camarillo	62,798	55,228,642	2945.0
Chico	89,221	90,463,755	2554.4
Concord	552,624	457,017,877	3131.8
Davis	66,022	35,290,113	4845.4
El Centro	52,954	42,741,615	3208.8
Fairfield	112,446	66,862,270	4355.7
Fresno	554,923	359,030,809	4003.1
Gilroy	84,620	99,185,327	2209.6
Hemet	117,200	108,290,815	2803.1
Indio	254,856	255,344,357	2585.0
Lancaster	263,532	234,122,253	2915.3
Livermore	75,202	54,060,803	3602.8
Lodi	83,207	60,961,956	3557.5
Lompoc	55,667	155,667,328	926.2
Los Angeles	11,789,487	4,319,930,311	7068.3
Madera	58,027	58,572,339	2565.9
Manteca	51,176	35,247,429	3760.4
Merced	110,483	93,155,694	3071.7
Mission Viejo	533,015	354,533,330	3893.9
Modesto	310,945	222,937,057	3612.4
Napa	79,867	60,929,170	3395.0
Oxnard	337,591	196,057,094	4459.7
Petaluma	59,958	47,840,726	3246.0
Porterville	60,261	54,639,137	2856.5
Redding	105,267	182,949,567	1490.2
Riverside	1,506,816	1,136,422,783	3434.1
Sacramento	1,393,498	955,784,543	3776.1
Salinas	179,173	116,284,529	3990.7
San Diego	2,674,436	2,026,112,024	3418.7
San Francisco	2,995,769	1,107,747,057	7004.3
San Jose	1,538,312	673,683,711	5914.1
San Luis Obispo	53,498	38,415,106	3606.9
San Rafael	232,836	256,284,325	2353.0
Santa Barbara	196,263	154,823,889	3283.2
Santa Clarita	170,481	140,721,950	3137.7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Santa Cruz	157,348	142,196,828	2866.0
Santa Maria	120,297	92,062,185	3384.3
Santa Rosa	285,408	264,142,433	2798.5
Seaside	125,503	105,252,097	3088.3
Simi Valley	112,345	70,123,206	4149.4
Stockton	313,392	192,415,050	4218.4
Temecula	229,810	247,585,114	2404.0
Thousand Oaks	210,990	223,171,056	2448.6
Tracy	59,020	33,075,133	4621.6
Turlock	69,507	48,323,193	3725.4
Vacaville	90,264	65,598,046	3563.9
Vallejo	158,967	87,939,538	4681.9
Victorville	200,436	321,082,129	1616.8
Visalia	120,044	103,376,801	3007.6
Watsonville	66,500	49,512,247	3478.6
Yuba City	97,645	91,599,143	2760.9
Yuma	1,095	3,533,642	802.6

〈표 65〉 캘리포니아의 도시클러스터(urban cluster) 설정 현황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Adelanto	9,008	9,419,732	2,476.8
Alturas	2,831	5,568,545	1,316.7
Angels City	2,776	5,302,914	1,355.8
Arcata	30,429	49,109,067	1,604.8
Aromas	2,701	11,188,959	625.2
Arroyo Grande	47,550	47,841,654	2,574.2
Arvin	13,234	10,629,775	3,224.5
Avalon	3,096	3,219,471	2,490.7
Avenal	14,641	6,917,136	5,482.0
Banta	3,899	13,393,164	754.0
Barstow	28,234	39,004,717	1,874.8
Beale AFB	5,112	10,464,059	1,265.3
Bethel Island	2,816	13,765,064	529.8
Big Bear Lake	15,123	31,603,160	1,239.4
Bishop	10,359	19,628,150	1,366.9
Blythe	11,434	16,860,068	1,756.5
Bonadelle Ranchos	6,249	19,698,898	821.6
Brawley	22,035	14,563,837	3,918.6
Burney	3,239	9,091,092	922.8
Calexico	27,095	15,440,579	4,544.9
California	7,803	16,801,424	1,202.9
Calipatria	4,095	1,291,602	8,211.5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Calipateria North	3,176	3,967,966	2,073.1
Calistoga	5,190	6,729,753	1,997.4
Cambria	5,746	8,661,728	1,718.1
Cameron Park	22,066	36,122,122	1,582.2
Centinela	4,472	106,644	108,608.3
Chowchilla	7,592	9,893,487	1,987.5
Chowchilla East	3,499	2,001,135	4,528.6
Chuckawalla Valley	8,308	11,841,472	1,817.1
Clearlake	13,873	20,047,341	1,792.3
Cloverdale	7,488	8,087,401	2,398.0
Coalinga	11,724	12,358,842	2,456.9
Colusa	6,066	4,693,428	3,347.4
Copperopolis	4,440	15,254,216	753.9
Corcoran	22,758	14,932,987	3,947.2
Corning	7,671	15,715,378	1,264.2
Cottonwood	4,089	9,737,677	1,087.6
Crescent City	18,812	45,022,944	1,082.2
Crestline	21,531	50,663,833	1,100.7
Delano	39,512	15,360,705	6,662.2
Desert Hot Springs	24,333	30,026,967	2,098.9
Discovery Bay	9,087	8,142,841	2,890.3
Dixon	16,085	11,743,033	3,547.6
Dos Palos	6,327	8,661,531	1,891.9
Earlimart	7,119	5,837,475	3,158.6
East Coalinga	4,545	548,632	21,456.1
Edwards	5,386	20,735,824	672.7
Escalon	6,267	9,842,437	1,649.1
Eureka	43,452	52,637,713	2,138.0
Fairfield Southwest	9,096	10,654,865	2,211.1
Fillmore	13,631	6,035,519	5,849.4
Firebaugh	6,483	7,761,078	2,163.5
Forestville	3,625	8,941,262	1,050.0
Fort Bragg	9,325	13,482,664	1,791.3
Fort Irwin	9,315	220,819,213	109.3
Fortune	10,483	11,033,854	2,460.7
Frazier Park	3,128	6,757,976	1,198.8
Gonzales	7,695	5,098,755	3,908.8
Grass Valley	34,019	83,899,571	1,050.2
Greenfield	13,220	7,871,005	4,350.1
Gridley	7,512	12,191,498	1,595.9
Guadalupe	5,651	3,709,064	3,946.0
Guerneville	4,990	10,763,923	1,200.7
Gustine	4,681	3,101,647	3,908.8
Half Moon Bay	22,037	28,663,482	1,991.2
Hanford	49,583	46,577,057	2,757.1
Helendale	3,980	5,278,093	1,953.0
Hilmar-Irwin	4,573	6,785,052	1,745.6
Hollister	39,923	24,950,663	4,144.2
Holtville	6,727	8,099,327	2,124.9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Huron	6,306	3,071,540	5,317.4
Incline Village-Crystal Bay	9,056	16,462,996	1,424.7
lone	7,058	6,742,234	2,711.3
Ivanhoe	4,474	5,199,630	2,228.5
Jackson	6,227	10,263,370	1,571.4
Kelseyville	2,534	2,598,056	2,526.1
Kerman	8,539	3,335,458	6,630.5
King City	12,054	6,774,198	4,608.6
Lake Isabella	3,727	8,925,286	1,081.5
Lake Los Angeles	11,181	17,382,327	1,666.0
Lake of the Pines	6,323	12,955,095	1,264.1
Lakeport	10,883	25,162,589	1,120.2
Lake Wildwood	6,527	16,537,417	1,022.2
Lemoore	19,956	17,977,949	2,875.0
Lemoore Station	5,749	5,098,606	2,920.4
Lincoln	10,230	7,471,239	3,546.3
Lindsay	12,644	16,157,966	2,026.7
Live Oak	6,471	5,598,680	2,993.5
Livingston	11,014	11,300,577	2,524.3
Los Banos	26,036	24,408,913	2,762.6
Lucerne	5,035	7,414,605	1,758.8
McFarland	10,071	10,144,305	2,571.3
Mammoth Lake	5,800	6,520,662	2,303.7
Mecca	6,589	6,555,740	2,603.1
Mendota	7,870	3,910,671	5,212.2
Mono Vista	10,733	29,636,292	938.0
Morro Bay	26,960	42,342,783	1,649.1
Mount Shasta	5,352	13,927,791	995.2
Needles	3,987	7,682,871	1,344.1
Newman	7,408	10,983,389	1,746.9
Oakdale	17,946	25,050,664	1,855.4
Oakhurst	2,501	7,646,910	847.1
One Hundred Palms	2,924	6,810,545	1,112.0
Orange Cove	7,720	3,580,913	5,583.7
Orland	7,575	13,948,583	1,406.5
Orosi	12,917	12,447,480	2,687.7
Oroville	34,474	57,433,078	1,554.6
Paradise	35,274	70,389,537	1,297.9
Parlier	11,138	3,676,528	7,846.3
Patterson	12,121	15,315,869	2,049.7
Pixley	2,831	3,901,876	1,879.2
Placerville	27,108	62,483,734	1,123.6
Planada	4,138	2,579,268	4,155.2
Portola	2,626	3,350,372	2,030.0
Ramona	22,954	45,114,125	1,317.8
Rancho Calaveras	4,142	12,507,810	857.7
Rancho Murieta	2,634	4,373,234	1,560.0
Red Bluff	17,633	31,544,651	1,447.8
Reedley	38,662	24,841,550	4,030.9

지역명	인구	면적(m <sup>2</sup> )	인구밀도(인/km <sup>2</sup> )
Richgrove	2,728	3,151,808	2,241.7
Ridgecrest	27,274	43,220,939	1,634.4
Rio Dell	3,763	4,012,704	2,428.8
Rio Vista	4,064	7,160,624	1,469.9
Rosamond	12,077	16,902,241	1,850.6
Running Springs	4,941	7,451,930	1,717.3
St. Helena	6,793	15,077,189	1,166.9
Sanger	20,541	12,035,422	4,420.4
San Joaquin	3,678	4,265,037	2,233.5
Santa Paula	29,070	10,953,006	6,874.0
Selma	34,716	31,661,981	2,839.8
Shafter	13,668	10,460,473	3,384.2
Sharon	3,297	963,244	8,865.0
Soledad	11,524	5,948,150	5,017.9
Solvang	14,521	26,878,570	1,399.2
Sonoma	31,487	33,093,624	2,464.2
Sonora	14,300	36,750,505	1,007.8
Southeast San Diego	6,801	7,553,218	2,332.1
South Lake Tahoe	31,705	47,681,206	1,722.2
Susanville	9,430	11,131,012	2,194.2
Susanville East	4,551	4,819,760	2,445.6
Taft	13,302	14,302,810	2,408.8
Tehachapi	12,990	20,797,744	1,617.7
Tehachapi West	4,357	6,769,701	1,666.9
Tehama	3,261	5,831,195	1,448.4
Temescal Valley	4,897	4,236,302	2,993.9
Terra Bella	3,430	3,649,733	2,434.1
Thermal	3,239	6,596,159	1,271.8
Truckee	8,018	23,700,433	876.2
Tulare	47,294	42,512,151	2,881.3
Twentynine Palms	12,496	24,136,412	1,340.9
Twentynine Palms Base	14,090	707,875,475	51.6
Ukiah	28,871	39,710,238	1,883.0
Val Verde	18,752	25,209,301	1,926.6
Wasco	14,986	6,522,215	5,951.0
Wasco West	6,201	3,918,655	4,098.5
Waterford	7,016	3,873,893	4,690.7
Weed	2,865	6,380,158	1,163.0
Williams	3,537	2,436,864	3,759.3
Willits	8,053	18,475,908	1,128.9
Willows	7,410	8,244,106	2,327.9
Winters	6,496	7,465,679	2,253.6
Woodlake	6,895	7,558,367	2,470.5
Woodland	49,168	22,552,879	5,646.5
Wrightwood	3,705	3,399,553	2,822.7
Yountville	2,916	4,217,385	1,790.8
Yreka	7,327	13,157,477	1,442.3
Yucca Valley	18,992	46,018,144	1,068.9

자료: www.census.gov

## 부록 3 영국 남동지역의 도시화지역

2002

〈표 66〉 영국 남동지역의 도시화지역(Urban Settlements)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J42000 Abingdon	36,010	1,196	30.11
K70600 Abridge	1,500	37	40.54
I12000 Adderbury	2,496	99	25.21
L60400 Aldershot Urban Area	243,344	7,783	31.27
L60406 Aldershot	58,170	1,629	35.71
L60401 Camberley/Frimley	47,123	1,622	29.05
L60405 Farnborough	57,147	1,949	29.32
L60407 Farnham	36,298	1,394	26.04
L60402 Frogmore	9,665	204	47.38
L60403 Sandhurst	19,546	438	44.63
L60404 Yateley	15,395	547	28.14
K83300 Allhallows	1,649	41	40.22
J81200 Alresford (Tendring)	2,125	60	35.42
L51200 Alresford (Winchester)	5,102	163	31.30
L61500 Alton	16,051	467	34.37
K60100 Amersham/Chesham	41,827	1,345	31.10
K60101 Amersham	21,470	867	24.76
K60102 Chesham	20,357	478	42.59
L50500 Andover	37,955	1,098	34.57
I33400 Arlesey	4,741	123	38.54
M71300 Arundel	3,297	89	37.04
K90800 Ash	2,062	66	31.24
L90300 Ashford	58,936	1,739	33.89
M80600 Ashington (Horsham)	2,351	90	26.12
M61000 Ashurst/Netley Marsh/Totton	31,102	855	36.38
M61001 Ashurst/Netley Marsh	3,116	169	18.44
M61002 Totton	27,986	686	40.80
I32900 Ashwell	1,660	57	29.12
J51200 Aston Clinton	4,038	119	33.93
K71400 Aveley	7,486	160	46.79
J50900 Aylesbury	69,021	1,526	45.23
K82500 Aylesford/East Malling	24,244	804	30.15
K91300 Aylesham	3,643	81	44.98
K52800 Bagshot	5,247	139	37.75
J41700 Bampton	2,505	65	38.54
I11700 Banbury	43,867	1,122	39.10
J60200 Barton in the Clay	4,793	111	43.18
K83800 Basildon/North Benfleet	101,492	2,492	40.73
K83801 Basildon	99,876	2,421	41.25
K83802 North Benfleet	1,616	72	22.44
L55700 Basingstoke/Basing	93,963	2,893	32.48
L55702 Basing	3,792	128	29.63
L55701 Basingstoke	90,171	2,765	32.61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M90600 Battle	5,190	213	24.37
K50500 Beaconsfield	12,292	610	20.15
K73900 Bean	1,557	25	62.28
I31600 Bedford/Kempston	101,928	2,354	43.30
I31601 Bedford	82,488	1,934	42.65
I31602 Kempston	19,440	420	46.29
M62800 Bembridge	3,492	172	20.30
K50400 Benson	5,567	398	13.99
J42300 Berinsfield	2,700	60	45.00
J52000 Berkhamsted	18,800	547	34.37
J40400 Bicester	31,113	1,066	29.19
J72100 Bicknacre	2,326	75	31.01
L70300 Biggin Hill	13,240	600	22.07
I32500 Biggleswade	15,383	357	43.09
K70800 Billericay	33,687	824	40.88
M70300 Billingshurst	5,465	156	35.03
M71700 Birdham	1,855	183	10.14
J70700 Bishop's Stortford	35,325	810	43.61
L51700 Bishops Waltham	6,085	138	44.09
L70800 Bletchingley	2,287	73	31.33
K41000 Blewbury	1,528	62	24.65
I11900 Bloxham	3,132	101	31.01
M71800 Bognor Regis	62,141	1,635	38.01
L61900 Bordon	16,178	370	43.72
J71400 Boreham	3,188	85	37.51
K60400 Borehamwood	31,172	701	44.47
L80700 Borough Green	4,247	150	28.31
M70900 Bosham	2,604	119	21.88
J62400 Bovington	4,596	118	38.95
K92300 Brabourne Lees	1,517	61	24.87
M62700 Brading	1,794	60	29.90
J70500 Braintree	42,393	1,028	41.24
K54300 Bramley	3,348	505	6.63
L61400 Bramley and Womersley	4,018	201	19.99
M51100 Bransgore	3,526	147	23.99
K70700 Brentwood	47,593	1,336	35.62
J91800 Brightlingsea	8,146	193	42.21
M83700 Brighton/Worthing/Littlehampton	461,181	9,409	49.01
M83708 Brighton	134,293	2,047	65.60
M83710 Findon	1,720	65	26.46
M83707 Hove	72,335	1,123	64.41
M83701 Littlehampton	55,716	1,654	33.69
M83706 Portslade	19,564	325	60.20
M83709 Rottingdean/Saltdean	21,411	553	38.72
M83704 Shoreham	17,537	428	40.97
M83703 Sompting/Lancing	30,360	769	39.48
M83705 Southwick	11,281	286	39.44
M83702 Worthing	96,964	2,158	44.93
M61500 Brockenhurst	2,865	167	17.16
L70600 Brockham	2,391	85	28.13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I31500 Bromham	4,599	135	34.07
J62300 Brookmans Park	3,854	183	21.06
I22700 Buckingham	12,512	330	37.92
J60500 Buntingford	4,820	127	37.95
M80800 Burgess Hill	29,388	743	39.55
K52100 Burghfield Common	5,617	146	38.47
J82600 Burnham-on-Crouch	7,636	205	37.25
J61000 Caddington	3,100	69	44.93
M60200 Cadnam	1,875	87	21.55
K90600 Canterbury Urban Area	45,055	1,045	43.11
K90602 Blean	1,503	45	33.40
K90601 Canterbury	43,552	1,000	43.55
K80700 Canvey Island	37,479	797	47.03
K92500 Capel-le-Ferne	1,659	47	35.30
J30700 Carterton	12,958	727	17.82
K60500 Chalfont St.Giles	4,710	176	26.76
K60700 Chalfont St.Peter/Gerrards Cross	19,622	861	22.79
J52400 Chalgrove	2,909	323	9.01
J40500 Charlbury	2,984	87	34.30
K91000 Chartham	2,774	68	40.79
K55100 Charvil	2,990	70	42.71
J54500 Cheddington	1,729	34	50.85
J71900 Chelmsford	99,962	2,424	41.24
K61700 Chertsey South	2,210	83	26.63
M71000 Chichester	27,477	823	33.39
L62300 Chiddingfold	2,128	71	29.97
L64100 Chilworth	1,764	61	28.92
J52100 Chinnor	5,407	134	40.35
J40100 Chipping Norton	5,688	136	41.82
J71700 Chipping Ongar	5,923	134	44.20
K61800 Chobham	2,773	155	17.89
K41100 Cholsey	3,034	91	33.34
J94400 Clacton-on-Sea/Little Clacton	54,048	1,320	40.95
J94401 Clacton-on-Sea	51,284	1,211	42.35
J94402 Little Clacton	2,764	109	25.36
I31700 Clapham (Bedford)	3,643	112	32.53
K83000 Cliffe (Medway)	1,946	35	55.60
K81000 Cliffe Woods	2,803	50	56.06
I33200 Clophill	1,882	60	31.37
K61900 Cobham/Oxshott	16,360	823	19.88
J80600 Coggeshall	3,919	104	37.68
J80800 Colchester	104,390	2,965	35.21
K41600 Cold Ash	2,176	130	16.74
L51600 Colden Common	3,249	98	33.15
L51300 Compton/Otterbourne	2,261	133	17.00
K45600 Compton	1,521	54	28.17
L72100 Copthorne	4,286	135	31.75
M62100 Cowes/Northwood	19,110	621	30.77
L81300 Coxheath	3,856	75	51.41
L82700 Cranbrook	4,225	116	36.42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I32600 Cranfield	4,802	325	14.78
L65500 Cranleigh/Rowly	9,681	363	26.67
L65501 Cranleigh	9,046	317	28.54
L72200 Crawley Down	4,631	114	40.62
L71400 Crawley Urban Area	180,177	5,402	33.35
L71402 Crawley	100,547	3,035	33.13
L71401 Horley	22,582	627	36.02
L71405 Reigate/Redhill	50,436	1,401	36.00
L71403 Salfords	4,435	116	38.23
L71404 South Nutfield	1,878	193	9.73
L82900 Crowborough	20,281	680	29.83
M80100 Cuckfield	3,266	109	29.96
J62500 Cuffley	4,306	183	23.53
K72700 Culverstone Green	4,005	146	27.43
K81600 Cuxton	2,831	78	36.29
J72000 Danbury/Little Baddow	6,315	292	21.63
K61500 Datchet	4,646	115	40.40
K91400 Deal	29,248	635	46.06
I12400 Deddington	1,595	48	33.23
K60900 Denham Green	2,269	95	23.88
M61100 Denmead	5,788	181	31.98
K40800 Didcot	25,231	965	26.15
K70300 Doddinghurst	4,451	123	36.19
L70400 Dorking	16,071	504	31.89
L72000 Dormansland	1,931	69	27.99
K91900 Dover Urban Area	39,078	1,023	38.20
K91901 Dover	34,087	861	39.59
K91902 Whitfield	4,991	162	30.81
K40400 Drayton	2,218	67	33.10
K90400 Dunkirk	2,112	54	39.11
L90600 Dymchurch/St Mary's Bay	5,693	174	32.72
J80300 Earls Colne	3,504	102	34.35
M91200 Eastbourne	106,562	2,356	45.23
M91100 East Dean	1,578	116	13.60
L72300 East Grinstead	26,222	780	33.62
L70100 East Horsley	5,661	331	17.10
L81600 East Peckham	2,421	66	36.68
K91200 Eastry	1,973	62	31.82
M71900 East Wittering	5,127	196	26.16
J50700 Eaton Bray	4,139	113	36.63
K84700 Eccles (Sevenoaks)	1,551	24	64.63
L71500 Edenbridge	7,123	209	34.08
J80900 Elmstead Market	1,682	42	40.05
J70300 Elsenham	2,252	65	34.65
L61600 Elstead	2,180	97	22.47
K62300 Elstree	1,795	31	57.90
M70800 Emsworth/Southbourne	18,139	533	34.03
J72300 Epping	9,889	255	38.78
K61300 Eton Wick	2,024	35	57.83
K72300 Eynsford/Farningham	2,727	103	26.48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J41300 Eynsham	4,665	106	44.01
M91000 Fairlight	1,514	93	16.28
J31700 Faringdon	6,187	136	45.49
K82200 Faversham	18,222	423	43.08
M63500 Fawley	13,775	853	16.15
M74000 Fernhurst	1,718	52	33.04
L60300 Fleet	32,726	1,049	31.20
I33000 Flitwick/Ampthill	19,467	443	43.94
I33001 Ampthill	6,767	159	42.56
I33002 Flitwick	12,700	284	44.72
K92600 Folkestone/Hythe	60,039	1,762	34.07
K92602 Folkestone	45,273	1,262	35.87
K92601 Hythe	14,766	500	29.53
M50200 Fordingbridge	5,755	214	26.89
L72400 Forest Row	3,623	148	24.48
L55600 Four Marks/Medstead	4,063	233	17.44
J44000 Freeland	1,506	43	35.02
M62900 Freshwater/Totland	8,045	320	25.14
J91700 Frinton and Walton	16,572	531	31.21
L61300 Godalming	21,514	630	34.15
L70900 Godstone	2,444	69	35.42
K50900 Goring/Streatley	3,934	188	20.93
K71500 Grays/Tilbury	75,635	2,571	29.42
K71501 Grays	64,173	1,982	32.38
K71502 Tilbury	11,462	589	19.46
K80500 Great and Little Wakering	5,248	95	55.24
I31800 Great Barford	1,864	59	31.59
J94000 Great Bentley	1,613	66	24.44
J70900 Great Dunmow	5,943	176	33.77
J80400 Great Horkesley	1,813	58	31.26
K60200 Greater London Urban Area	8,278,251	162,337	50.99
K60261 Addlestone	14,652	309	47.42
K60254 Banstead/Tadworth	38,664	1,486	26.02
K60230 Barking and Dagenham	163,944	3,259	50.31
K60207 Barnet	314,019	6,631	47.36
K60239 Bexley	211,802	4,606	45.98
K60214 Brent	263,464	4,329	60.86
K60256 Bromley	280,305	7,446	37.65
K60204 Bushey	17,001	403	42.19
K60223 Camden	198,020	2,183	90.71
K60257 Caterham and Warlingham	31,649	1,225	25.84
K60245 Chertsey	10,323	238	43.37
K60209 Cheshunt	55,275	1,015	54.46
K60218 Chigwell	10,128	317	31.95
K60258 Chorleywood	11,657	565	20.63
K60227 City of London	7,185	315	22.81
K60255 Croydon	316,283	7,535	41.98
K60240 Dartford	56,818	1,201	47.31
K60220 Ealing	300,948	5,550	54.22
K60241 Egham	27,666	674	41.05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K60208 Enfield	273,203	5,283	51.71
K60251 Epsom and Ewell	64,493	1,973	32.69
K60248 Esher/Molesey	50,344	1,946	25.87
K60270 Gravesend	53,045	991	53.53
K60238 Greenwich	219,263	4,816	45.53
K60225 Hackney	202,824	1,905	106.47
K60221 Hammersmith and Fulham	165,242	1,711	96.58
K60215 Haringey	216,507	2,958	73.19
K60206 Harrow	206,643	4,096	50.45
K60231 Havering	223,193	5,400	41.33
K60201 Hemel Hempstead	83,118	2,019	41.17
K60213 Hillingdon	242,755	8,403	28.89
K60211 Hoddesdon	35,235	989	35.63
K60232 Hounslow	212,341	5,659	37.52
K60224 Islington	175,797	1,486	118.30
K60222 Kensington and Chelsea	158,439	1,234	128.39
K60202 Kings Langley	7,072	327	21.63
K60249 Kingston upon Thames	146,873	3,132	46.89
K60235 Lambeth	267,785	2,764	96.88
K60252 Leatherhead	42,885	1,646	26.05
K60237 Lewisham	248,922	3,534	70.44
K60217 Loughton	41,078	933	44.03
K60250 Merton	187,908	3,762	49.95
K60229 Newham	243,891	3,688	66.13
K60269 Northfleet	23,457	537	43.68
K60262 Ottershaw	3,376	84	40.19
K60219 Redbridge	240,796	4,358	55.25
K60233 Richmond upon Thames	172,335	5,767	29.88
K60212 Rickmansworth	11,781	291	40.48
K60260 Shepperton	9,886	226	43.74
K60205 South Oxhey	16,918	299	56.58
K60236 Southwark	243,749	2,982	81.74
K60243 Staines	50,538	1,203	42.01
K60244 Sunbury	27,415	904	30.33
K60242 Sunningdale/Ascot	17,509	768	22.80
K60253 Sutton	177,796	3,821	46.53
K60268 Swanscombe	15,389	537	28.66
K60228 Tower Hamlets	196,106	2,158	90.87
K60259 Virginia Water	8,368	560	14.94
K60210 Waltham Abbey	17,675	368	48.03
K60216 Waltham Forest	218,341	3,583	60.94
K60246 Walton and Weybridge	52,890	1,810	29.22
K60234 Wandsworth	259,881	3,598	72.23
K60203 Watford	120,960	2,951	40.99
K60267 West End	4,135	145	28.52
K60226 Westminster	181,766	2,208	82.32
K60263 Windlesham	4,103	148	27.72
K60247 Woking/Byfleet	101,127	2,988	33.84
J52200 Great Missenden/Prestwood	7,070	232	30.47
I54000 Great Yeldham	1,601	49	32.67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I33600 Greenfield/Flitton	1,529	49	31.20
L60900 Guildford	69,400	1,967	35.28
J51700 Haddenham (Aylesbury Vale)	4,720	222	21.26
L81100 Hadlow	2,783	63	44.17
M90700 Hailsham	19,177	440	43.58
K84500 Halling	1,808	41	44.10
J80200 Halstead (Braintree)	11,053	267	41.40
M61300 Hamble	3,853	143	26.94
I22200 Hanslope	1,826	42	43.48
K60800 Harefield	6,537	142	46.04
J60100 Harlington	2,322	66	35.18
J71100 Harlow/Sawbridgeworth	88,296	1,998	44.19
J61500 Harpenden	28,452	860	33.08
L91200 Harrietsham	1,504	84	17.90
K52500 Hartley Wintney	4,405	161	27.36
K40700 Harwell	2,015	68	29.63
J91400 Harwich	20,130	543	37.07
L62200 Haslemere	11,663	521	22.39
M90900 Hastings/Bexhill	126,386	3,194	39.57
M90901 Bexhill	39,451	1,136	34.73
M90902 Hastings	85,828	1,998	42.96
J73000 Hatfield Heath	1,514	65	23.29
J71300 Hatfield Peverel	3,258	97	33.59
L83200 Hawkhurst	3,127	100	31.27
K92400 Hawkinge	4,294	124	34.63
M71600 Hayling Island	14,842	447	33.20
M80200 Haywards Heath	29,110	856	34.01
L82100 Headcorn	2,425	70	34.64
L62000 Headley (East Hampshire)	4,870	242	20.12
M90300 Heathfield	8,065	279	28.91
M61900 Hedge End/Botley	23,680	579	40.90
M61902 Botley	2,506	70	35.80
M61901 Hedge End	21,174	509	41.60
M80700 Henfield	4,527	124	36.51
K50800 Henley-on-Thames	10,513	324	32.45
I33300 Henlow/Shefford	12,052	624	19.31
K41900 Hermitage	1,537	80	19.21
K70900 Herongate/Ingrave	1,698	58	29.28
J65700 Hertford/Ware	41,653	974	42.76
J65701 Hertford	24,460	591	41.39
J65702 Ware	17,193	383	44.89
K80900 Higham (Gravesham)	3,791	161	23.55
K42100 Highclere	2,409	137	17.58
K83200 High Halstow	1,624	46	35.30
K56900 High Wycombe Urban Area	118,229	3,280	36.05
K56903 Bourne End/Flackwell Heath	12,795	437	29.28
K56905 Cookham	5,304	220	24.11
K56904 Great Kingshill	2,452	115	21.32
K56901 Hazlemere/Tylers Green	20,500	581	35.28
K56902 High Wycombe	77,178	1,927	40.05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L62100 Hindhead	6,052	313	19.34
J60400 Hitchin	33,352	919	36.29
K81100 Hoo	5,260	104	50.58
L60100 Hook (Hart)	6,869	224	30.67
I12300 Hook Norton	1,838	65	28.28
M90500 Horam	1,829	67	27.30
K82900 Horndon on the Hill	1,612	48	33.58
L72700 Horsham	47,804	1,169	40.89
L54000 Horton Heath	2,223	60	37.05
K58000 Hughenden Valley	1,586	50	31.72
J82700 Hullbridge	6,050	119	50.84
K41700 Hungerford	4,938	114	43.32
M80900 Hurstpierpoint/Keymer	11,143	342	32.58
M60700 Hythe (New Forest)	19,599	543	36.09
L80600 Ightham	1,686	164	10.28
K70400 Ingatestone	4,439	139	31.94
K80800 Isle of Grain	1,731	576	3.01
K72000 Istead Rise	3,505	83	42.23
K61100 Iver/Iver Heath	7,329	252	29.08
J51000 Ivinghoe/Pitstone	2,875	73	39.38
J92200 Jaywick	4,665	183	25.49
J81400 Kelvedon	4,593	123	37.34
K70200 Kelvedon Hatch	2,425	55	44.09
J41800 Kennington	4,087	115	35.54
J65300 Kensworth	1,504	49	30.69
J40800 Kidlington	14,945	526	28.41
K42200 Kingsclere	3,287	87	37.78
K92800 Kingsdown	1,690	73	23.15
K85000 Kings Hill	3,024	175	17.28
J42100 Kingston Bagpuize	2,269	64	35.45
K41800 Kintbury	2,086	61	34.20
J61100 Knebworth	4,077	123	33.15
L51000 Kings Worthy	4,292	156	27.51
K41200 Lambourn	2,955	82	36.04
K50300 Lane End	2,677	58	46.16
I32800 Langford	2,882	78	36.95
J81500 Layer-de-la-Haye	1,767	89	19.85
J50400 Leighton Buzzard	32,753	795	41.20
L90100 Lenham	2,191	66	33.20
J60300 Letchworth/Baldock	42,798	1,186	36.09
J60302 Baldock	9,866	209	47.21
J60301 Letchworth	32,932	977	33.71
M81300 Lewes	15,988	341	46.89
K81500 Leysdown-on-Sea	2,509	136	18.45
K52900 Lightwater	6,691	191	35.03
K71600 Linford	5,691	95	59.91
L71900 Lingfield	3,014	80	37.68
L62400 Liphook	6,031	194	31.09
M70100 Liss	6,441	268	24.03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J62000 Little Amwell	2,549	73	34.92
M61400 Locks Heath/Bursledon/Whiteley	45,391	1,569	28.93
M61402 Bursledon	6,744	214	31.51
M61401 Locks Heath	36,452	1,243	29.33
M61403 Whiteley	2,195	112	19.60
J51600 Long Crendon	2,383	73	32.64
K72100 Longfield/New Ash Green	16,442	491	33.49
J40900 Long Hanborough	2,404	63	38.16
J60700 Luton/Dunstable	236,318	4,895	48.28
J60701 Dunstable	50,775	1,180	43.03
J60702 Luton	185,543	3,715	49.94
L90900 Lydd	3,329	130	25.61
K92100 Lyminge	1,922	64	30.03
M62000 Lymington	14,227	492	28.92
M60600 Lyndhurst	2,281	90	25.34
K51200 Maidenhead	58,848	1,857	31.69
L80900 Maidstone	89,684	2,173	41.27
J82100 Maldon	20,731	476	43.55
J91200 Manningtree	5,628	155	36.31
K62500 Maple Cross	2,228	50	44.56
J42800 Marcham	1,659	44	37.70
M60500 Marchwood	5,586	268	20.84
L81900 Marden	2,412	84	28.71
J80700 Marks Tey	3,599	160	22.49
J61400 Markyate	2,764	61	45.31
K50700 Marlow	17,522	477	36.73
I32700 Marston Moretaine	3,041	72	42.24
I33100 Maulden	2,256	61	36.98
L83400 Mayfield	2,111	94	22.46
J82300 Maylandsea	3,604	103	34.99
K72200 Meopham	4,266	131	32.56
I36800 Meppershall	1,549	57	27.18
J40200 Middle Barton	1,727	52	33.21
M70400 Midhurst	6,120	202	30.30
I27900 Milton Keynes Urban Area	184,506	5,730	32.20
I27903 Bletchley	47,176	1,212	38.92
I27907 Browns Wood	4,225	132	32.01
I27902 Central Milton Keynes	31,442	1,080	29.11
I27906 Newport Pagnell	14,739	355	41.52
I27905 North Milton Keynes	13,489	592	22.79
I27904 Walnut Tree	12,526	592	21.16
I27901 Wolverton/Stony Stratford	60,359	1,744	34.61
M51600 Milford on Sea	4,229	233	18.15
L61700 Milford/Witley	6,084	194	31.36
K90300 Minster/Manston	5,146	683	7.53
J91300 Mistley	1,684	43	39.16
K52400 Mortimer	3,099	91	34.05
M61200 Netley	6,150	136	45.22
K72400 New Addington	21,527	286	75.27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K46700 Newbury/Thatcham	56,513	1,465	38.58
K46701 Newbury	32,675	949	34.43
K46702 Thatcham	22,989	488	47.11
M81800 Newhaven	12,276	324	37.89
M80300 Newick	2,129	69	30.86
K81900 Newington	2,871	90	31.90
I42500 Newport (Uttlesford)	2,208	67	32.96
M62600 Newport (Isle of Wight)	22,957	641	35.81
I22800 Newton Longville	1,851	53	34.92
L60500 Normandy	1,529	88	17.38
L51500 North Baddesley	6,234	152	41.01
K74300 North Darenth	2,558	38	67.32
M90200 Northiam	1,798	73	24.63
J41000 North Leigh	1,540	51	30.20
J71600 North Weald Bassett	4,461	95	46.96
L50400 Oakley (Basingstoke and Deane)	5,238	166	31.55
I31400 Oakley (Bedford)	2,438	69	35.33
L60200 Odiham	2,908	101	28.79
L61000 Odiham Airfield	1,613	294	5.49
K61600 Old Windsor/Horton	7,696	261	29.49
K61601 Old Windsor	7,012	227	30.89
I21900 Olney	6,032	143	42.18
L80200 Otford/Kemsing	6,739	269	25.05
L50300 Overton (Basingstoke and Deane)	3,318	88	37.70
J41400 Oxford	143,016	3,163	45.22
L71000 Oxted	12,576	503	25.00
L81800 Paddock Wood	7,841	192	40.84
K51500 Pangbourne/Whitchurch	3,739	145	25.79
L73200 Park Pale	1,505	37	40.68
M82200 Partridge Green	2,009	49	41.00
M81700 Peacehaven	17,541	367	47.80
L82300 Pembury	5,624	124	45.35
M70200 Petersfield	13,092	403	32.49
M70500 Petworth	2,298	61	37.67
M91400 Pevensey Bay	2,708	79	34.28
L65400 Pirbright Camp	2,593	65	39.89
M61700 Portsmouth Urban Area	442,252	9,452	46.79
M61701 Fareham/Portchester	56,160	1,441	38.97
M61702 Gosport	69,348	1,514	45.80
M61705 Havant	45,435	1,174	38.70
M61707 Lee-on-the-Solent	7,067	217	32.57
M61703 Portsmouth	187,056	2,971	62.96
M61706 Stubbington	13,628	524	26.01
M61704 Waterlooville	63,558	1,610	39.48
J62700 Potters Bar	22,008	561	39.23
I32100 Potton	4,473	101	44.29
J51900 Princes Risborough	8,121	289	28.10
M70600 Pulborough	3,906	169	23.11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K81300 Queenborough/Minster	20,076	586	34.26
K81302 Minster	16,605	447	37.15
K81301 Queenborough	3,471	138	25.15
K60300 Radlett	8,034	298	26.96
J42200 Radley	1,906	58	32.86
J72200 Ramsden Heath	1,665	55	30.27
J74000 Rayne	1,974	59	33.46
K56800 Reading/Wokingham	369,804	9,317	39.69
K56805 Arborfield	2,721	90	30.23
K56804 Bracknell	70,795	1,726	41.02
K56803 Crowthorne	24,082	802	30.03
K56801 Reading	232,662	5,535	42.03
K56802 Wokingham	39,544	1,164	33.97
J61900 Redbourn	4,680	147	31.84
K61200 Richings Park	1,699	78	21.78
M81100 Ringmer	2,939	86	34.17
M50800 Ringwood	13,387	461	29.04
M92600 Robertsbridge	1,987	59	33.68
L90700 Romney	9,406	298	31.56
L51400 Romsey	17,386	483	36.00
L82200 Royal Tunbridge Wells	60,095	1,601	37.54
J71500 Roydon (Epping Forest)	1,553	54	28.76
I42300 Royston	14,570	380	38.34
L72500 Rudgwick	1,641	66	24.86
M62400 Ryde	22,806	590	38.65
L90800 Rye	4,195	130	32.27
I42400 Saffron Walden	14,313	340	42.10
J62200 St Albans/Hatfield	114,710	3,235	35.46
J62202 Hatfield	32,281	1,099	29.37
J62201 St Albans	82,429	2,136	38.59
K63300 St Margarets	3,434	79	43.47
K92000 St. Margaret's at Cliffe	2,151	99	21.73
J92000 St. Osyth	2,047	67	30.55
M63000 Sandown/Shanklin	19,716	557	35.40
K90900 Sandwich	4,398	150	29.32
I32000 Sandy	10,887	282	38.61
M81900 Seaford	21,851	610	35.82
M62500 Seaview	2,286	107	21.36
K60600 Seer Green	2,843	140	20.31
M72000 Selsey	9,725	336	28.94
L60700 Send/West Clandon	6,453	314	20.55
L80500 Sevenoaks	26,699	1,123	23.77
K81200 Sheerness	11,654	304	38.34
J62600 Shenley	4,053	89	45.54
K91600 Shepherdswell	1,542	59	26.14
L42800 Shipton Bellinger	1,521	37	41.11
J30500 Shipton-under-Wychwood	2,480	95	26.11
I32200 Shortsdown	1,745	73	23.90
K40100 Shrivenham	4,574	201	22.76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I51800 Sible Hedingham	3,192	100	31.92
I33700 Silsoe	1,729	61	28.34
J81300 Silver End	3,741	76	49.22
K85200 Sittingbourne/Kemsley	41,613	895	46.49
K85202 Kemsley	1,639	33	49.67
K85201 Sittingbourne	39,974	862	46.37
K61000 Slough Urban Area	141,848	3,057	46.40
K61004 Colnbrook	5,408	138	39.19
K61003 Farnham Royal	6,052	254	23.83
K61001 Slough	126,276	2,491	50.69
K61002 Stoke Poges	4,112	174	23.63
L71800 Smallfield	3,804	143	26.60
K82300 Snodland	9,329	193	48.34
K51100 Sonning Common	4,736	161	29.42
M66600 Southampton Urban Area	304,400	7,280	41.81
M66603 Bishopstoke	17,282	353	48.96
M66601 Eastleigh	52,894	1,871	28.27
M66602 Southampton	234,224	5,056	46.33
K80400 Southend Urban Area	269,415	6,685	40.30
K80402 Benfleet	48,539	1,532	31.68
K80403 Hockley	13,616	355	38.35
K80401 Rayleigh	30,629	801	38.24
K80404 Rochford	16,374	469	34.91
K80405 Southend-on-Sea	160,257	3,528	45.42
J82400 Southminster	3,776	84	44.95
K71200 South Ockendon	17,675	326	54.22
L73000 Southwater	8,298	181	45.85
L52900 South Wonston	2,172	65	33.42
J82500 South Woodham Ferrers	16,629	304	54.70
K52200 Spencers Wood	3,314	100	33.14
K81400 Standford Hill	1,658	86	19.28
J60900 Standon	3,354	77	43.56
K40200 Stanford in the Vale	1,824	56	32.57
K80600 Stanford Le Hope/ Corringham	30,102	526	57.23
J70400 Stansted Mountfitchet	5,311	135	39.34
L82000 Staplehurst	5,103	125	40.82
J50100 Steeple Claydon	2,262	52	43.50
J60800 Stevenage	81,482	2,183	37.33
K43100 Steventon	1,502	53	28.34
J50300 Stewkley	1,731	55	31.47
M81200 Steyning/Upper Beeding	9,501	254	37.41
K70500 Stock	1,545	70	22.07
J52500 Stokenchurch	3,949	103	38.34
J51100 Stone (Aylesbury Vale)	1,902	53	35.89
J40600 Stonesfield	1,538	46	33.43
M80500 Storrington	7,727	367	21.05
I33500 Stotfold	6,109	133	45.93
K94500 Sturry/Broad Oak	5,507	132	41.72
K94501 Sturry	4,737	111	42.68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K71900 Sutton-at-Hone/South Darent	4,233	76	55.70
K40500 Sutton Courtenay	2,413	88	27.42
K71800 Swanley/Hextable	20,986	421	49.85
L51800 Swanmore	2,530	76	33.29
M51200 Sway	2,294	115	19.95
K42300 Tadley	15,642	459	34.08
J70800 Takeley	1,819	67	27.15
K63200 Tanfield	1,623	23	70.57
M71100 Tangmere/Boxgrove	3,066	75	40.88
L90400 Tenterden	6,977	223	31.29
K82100 Teynham	2,725	58	46.98
J51800 Thame	10,886	262	41.55
K90200 Thanet	119,144	2,668	44.66
K90202 Broadstairs	22,712	723	31.41
K90201 Margate	58,465	1,195	48.92
K90203 Ramsgate	37,967	751	50.56
J70100 Thaxted	2,066	56	36.89
K51800 Theale	2,771	91	30.45
K81700 The Medway Towns Urban Area	231,659	5,097	45.45
K81703 Chatham	73,468	1,578	46.56
K81704 Gillingham	98,403	2,152	45.73
K81702 Rochester	27,125	629	43.12
K81701 Strood	32,663	738	44.26
K70100 Theydon Bois	3,756	118	31.83
J81700 Tiptree	8,305	257	32.32
J60600 Toddington	4,195	101	41.53
J82000 Tollesbury	2,680	72	37.22
L81500 Tonbridge	35,833	930	38.53
J51500 Tring	11,835	276	42.88
K51700 Twyford (Wokingham)	7,035	183	38.44
M80400 Uckfield	15,374	449	34.24
L50700 Upper Clatford/Abbotts Ann	2,066	88	23.48
M63200 Ventnor	6,257	242	25.86
J56400 Waddesdon	1,865	39	47.82
L83000 Wadhurst	3,686	167	22.07
M71200 Walberton	1,739	83	20.95
K50600 Wallingford	8,019	254	31.57
J52600 Walter's Ash/Naphill	3,869	136	28.45
M66400 Waltham Chase	2,392	67	35.70
K40600 Wantage/Grove	17,913	406	44.12
K51400 Wargrave	2,876	89	32.31
L81000 Wateringbury	2,320	62	37.42
K50100 Watlington (South Oxfordshire)	2,139	72	29.71
J61300 Watton-at-Stone	2,272	51	44.55
J61700 Welwyn Urban Area	57,512	1,854	31.02
J61702 Harmer Green/Tewin	3,300	223	14.80
J61701 Welwyn/Codicote	10,700	444	24.10
J61703 Welwyn Garden City	43,512	1,187	36.66

Urban Settlement	2001 인구	Area (ha)	2001 인구밀도 (인/ha)
J51400 Wendover	7,385	238	31.03
J80500 West Bergholt	3,164	93	34.02
M70700 West Chilton Common	3,036	253	12.00
L71300 Westcott nr Dorking	1,869	74	25.26
M71400 Westergate/Barnham/Yapton	11,622	446	26.06
J51300 Weston Turville	2,267	70	32.39
L71100 Westerham	2,982	77	38.73
M91600 Westfield	1,509	52	29.02
M91300 Westham	2,061	61	33.79
K72600 West Kingsdown	4,209	126	33.40
K82400 West Malling	2,144	71	30.20
J81900 West Mersea	6,792	248	27.39
J63500 Westoning	2,001	45	44.47
L41400 West Wellow	2,070	130	15.92
J61600 Wheathampstead	3,997	103	38.81
J41500 Wheatley	5,453	165	33.05
L50600 Whitchurch (Basingstoke and Deane)	4,343	132	32.90
K90100 Whitstable/Herne Bay	64,942	1,675	38.77
K90102 Herne Bay	34,747	802	43.33
K90101 Whitstable	30,195	873	34.59
K83700 Wickford/Ramsden Bellhouse	31,481	806	39.06
K83701 Wickford	30,751	723	42.53
M66100 Wickham	1,915	109	17.57
J81800 Wickham Bishops/Great Totham	3,569	152	23.48
I32400 Wilshamstead	1,969	58	33.95
L51100 Winchester	41,420	1,115	37.15
K61400 Windsor/Eton	30,568	692	44.17
J50600 Wing	2,706	60	45.10
K56200 Winkfield Row	1,777	53	33.53
J50200 Winslow	4,519	112	40.35
J81600 Witham	22,631	553	40.92
J46000 Witney/Ducklington	24,338	567	42.92
J46002 Ducklington	1,573	39	40.33
J46001 Witney	22,765	528	43.12
J83700 Wivenhoe/Rowhedge	8,812	187	47.12
J83701 Rowhedge	1,591	41	38.80
J83702 Wivenhoe	7,221	147	49.12
I22900 Woburn Sands	4,963	202	24.57
L70200 Woldingham	1,610	229	7.03
K51000 Woodcote	2,715	90	30.17
J40700 Woodstock	2,389	69	34.62
L60600 Wood Street	1,718	77	22.31
I32300 Wootton (Bedford)	4,472	106	42.19
M62300 Wootton (Isle of Wight)	4,370	204	21.42
J71800 Writtle	4,646	105	44.25
M65000 Wroxall	1,885	54	34.91
K91800 Wye	2,066	58	35.62
J41100 Yarnton	2,523	82	30.77

## 부록 4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 현황

〈표 68〉 도시계획구역 현황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전 국	16,523.91	1,961.62	252.43	731.21	12,197.70	1,380.94
서울특별시	605.96	301.37	23.92	27.94	252.73	0.00
서울.종로	32.29	17.23	3.73	0.00	11.34	0.00
서울.중	15.49	11.86	3.63	0.00	0.00	0.00
서울.서초	39.04	9.25	1.37	0.00	28.41	0.00
서울.성북	22.33	14.67	0.90	0.00	6.75	0.00
서울.도봉	22.17	11.17	0.33	1.85	8.83	0.00
서울.송파	23.55	10.19	1.25	0.00	12.11	0.00
서울.강남	30.43	11.46	2.25	0.00	16.71	0.00
서울.성동	14.19	6.28	0.12	3.22	4.58	0.00
서울.강동	23.20	10.73	0.56	0.00	11.91	0.00
서울.노원	34.86	11.55	0.57	0.00	22.74	0.00
서울.은평	29.99	14.01	0.37	0.00	15.62	0.00
서울.서대문	18.07	15.93	0.21	0.00	1.93	0.00
서울.마포	23.87	11.49	0.57	0.00	11.81	0.00
서울.양천	20.92	15.11	0.85	0.25	4.71	0.00
서울.강서	44.75	17.71	0.50	1.77	24.77	0.00
서울.구로	22.51	9.17	0.41	6.89	6.03	0.00
서울.금천	22.99	15.48	0.18	4.51	2.82	0.00
서울.관악	38.80	20.80	0.35	0.00	17.65	0.00
서울.영등포	30.28	11.96	2.44	9.39	6.49	0.00
서울.동작	6.90	5.97	0.22	0.00	0.70	0.00
서울.동대문	11.98	10.92	0.94	0.00	0.12	0.00
서울.중랑	21.21	12.99	0.19	0.02	8.01	0.00
서울.강북	21.68	7.17	0.32	0.00	14.19	0.00
서울.용산	17.36	6.87	1.48	0.00	9.01	0.00
서울.광진	17.11	11.41	0.18	0.04	5.48	0.00
부산광역시	951.04	110.49	20.51	44.09	603.94	172.01
부산.강서	242.04	2.39	0.63	13.15	169.13	56.74
부산.금정	65.16	8.15	0.64	1.05	55.31	0.00
부산.기장	221.39	6.60	0.58	0.40	206.98	6.83
부산.남	42.51	9.76	1.26	4.40	12.41	14.68
부산.동	11.59	2.42	2.07	1.96	3.03	2.11
부산.동래	16.64	9.61	1.05	0.18	5.80	0.00
부산.부산진	29.67	11.09	5.02	0.00	13.56	0.00
부산.북	38.29	9.39	0.60	0.01	28.30	0.00
부산.사상	35.84	6.31	0.44	8.54	20.55	0.00
부산.사하	73.28	9.59	0.53	10.29	26.30	26.57
부산.서	29.36	4.21	0.94	1.05	8.11	15.04
부산.수영	16.63	6.58	0.67	0.12	3.72	5.54
부산.연제	12.08	7.18	0.76	0.06	4.09	0.00
부산.영도	56.17	4.68	0.75	1.83	7.67	41.23
부산.중	4.47	0.90	1.54	0.30	0.24	1.50
부산.해운대	55.91	11.63	3.06	0.73	38.74	1.77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대구광역시	804.58	98.82	16.63	29.43	659.70	0.00
인천광역시	720.89	81.81	13.10	46.12	381.41	198.44
인천.계양	45.56	5.08	0.58	3.99	35.91	0.00
인천.남	26.57	13.26	2.92	8.48	1.91	0.00
인천.남동	70.97	15.58	1.43	8.13	30.45	15.38
인천.동	11.66	2.15	0.56	2.96	1.11	4.88
인천.부평	31.98	12.63	1.85	5.25	12.25	0.00
인천.서	113.62	11.72	0.71	8.60	68.78	23.81
인천.연수	118.93	16.34	2.21	0.24	19.63	80.51
인천.중	274.70	3.12	2.65	8.40	196.78	63.75
강화.강화	7.58	1.14	0.10	0.08	6.21	0.06
인천.교동	2.84	0.21	0.04	0.00	2.59	0.00
강화.온수	4.72	0.28	0.04	0.00	4.40	0.00
강화.내가	1.71	0.30	0.02	0.00	1.39	0.00
옹진.영흥	10.05	0.00	0.00	0.00	0.00	10.05
광주광역시	744.22	63.02	8.49	19.54	653.17	0.00
광주.광산	200.04	12.08	1.77	12.43	173.76	0.00
광주.동	60.48	7.27	1.84	0.00	51.37	0.00
광주.서	57.85	14.12	1.98	2.05	39.70	0.00
광주.북	121.94	19.11	2.63	4.06	96.14	0.00
광주.화순	28.65	0.00	0.00	0.00	28.65	0.00
광주.나주	42.90	0.00	0.00	0.00	42.90	0.00
광주.담양	117.68	1.44	0.00	0.08	116.16	0.00
광주.장성	74.67	0.78	0.00	0.00	73.89	0.00
광주.남	40.01	8.22	0.27	0.92	30.60	0.00
대전광역시	555.69	64.03	7.67	14.82	469.17	0.00
대전.대덕	68.48	9.45	0.43	9.95	48.65	0.00
대전.동	120.37	12.59	1.05	0.23	106.51	0.00
대전.서구	72.88	17.79	2.05	0.13	52.91	0.00
대전.유성	177.00	11.90	0.00	0.00	0.00	0.00
대전.중구	56.39	12.30	0.00	0.00	11.87	0.00
공주.반포	11.87	0.00	0.00	0.00	11.87	0.00
금산.복수	10.61	0.00	0.00	0.00	10.61	0.00
연기.금남	38.08	0.00	0.00	0.00	38.08	0.00
울산광역시	751.22	52.83	6.18	61.21	546.98	84.02
울산.북구	116.61	8.33	0.81	8.12	99.35	0.00
울산.울주	406.63	16.79	0.85	20.38	368.61	0.00
울산.남구	71.41	12.99	2.48	26.51	29.42	0.00
울산.동구	35.58	5.35	0.81	6.19	23.22	0.00
울산.중구	36.98	9.37	1.23	0.00	26.37	0.00
울산.해면	84.02	0.00	0.00	0.00	0.00	84.02
경기도	2,839.16	275.57	34.83	52.98	2,039.94	435.85
수원	121.39	35.29	4.06	4.10	77.94	0.00
성남	141.72	19.74	4.42	1.60	115.96	0.00
고양	193.42	21.00	3.65	3.08	165.70	0.00
부천	51.57	19.74	2.92	4.03	24.89	0.00
안양	69.37	16.22	2.12	14.83	36.21	0.00
안산	131.84	20.88	2.50	1.36	107.10	0.00
용인.용인.	333.04	6.69	0.86	0.00	41.98	283.51
용인.백원	8.52	0.38	0.02	0.00	3.36	4.76
용인.남이	44.55	0.18	0.01	0.00	1.44	42.92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의정부	160.96	11.71	1.62	0.35	147.29	0.00
남양주	231.57	9.23	0.39	0.13	210.36	11.45
평택.청북	3.55	0.13	0.03	0.73	2.65	0.00
평택.안중	14.96	2.05	0.18	0.00	12.73	0.00
평택.팽성	3.18	1.32	0.17	0.00	1.69	0.00
평택.동부	61.62	10.43	2.11	2.78	46.31	0.00
광명	38.65	6.43	0.69	0.00	31.53	0.00
시흥	129.58	9.99	0.81	6.83	109.02	2.94
군포	36.38	6.50	0.63	2.63	26.62	0.00
화성.팔탄	1.66	0.13	0.01	0.03	1.49	0.00
화성.송산	1.52	0.30	0.03	0.03	1.16	0.00
화성.서신	1.24	0.20	0.01	0.04	0.99	0.00
하성.남양	7.41	0.29	0.02	0.03	7.08	0.00
화성.매송	98.53	2.16	0.03	0.12	96.22	0.00
화성.발안	32.66	1.00	0.13	2.55	28.98	0.00
화성.조암	6.11	0.45	0.03	0.04	1.82	3.77
화성.봉담	2.55	0.49	0.04	0.00	0.55	1.47
화성.태안	12.62	3.70	0.10	0.00	8.82	0.00
파주.축현	4.26	0.27	0.02	0.00	3.98	0.00
파주.법원	6.52	0.68	0.08	0.11	5.64	0.00
파주.파주	6.99	0.95	0.13	0.25	5.66	0.00
파주.문산	12.28	1.84	0.22	0.17	10.04	0.00
파주.금촌	9.92	2.92	0.22	0.00	6.78	0.00
파주.마지	8.00	0.31	0.03	0.00	7.66	0.00
파주.신산	5.21	0.48	0.03	0.17	4.53	0.00
파주.교하	5.49	0.38	0.00	0.00	5.11	0.00
이천.이천	13.31	2.19	0.39	0.71	7.00	3.03
이천.장호원	68.32	1.03	0.08	0.00	9.62	57.59
구리	34.17	4.76	0.57	0.00	28.84	0.00
김포.김포	4.36	2.42	0.11	0.25	1.59	0.00
김포.양곡	3.31	0.49	0.06	0.00	2.76	0.00
김포.고촌	21.12	0.44	0.06	0.00	20.63	0.00
김포.마송	3.24	0.41	0.05	0.00	2.78	0.00
김포.하성	5.20	0.24	0.04	0.00	1.91	3.01
김포.월곶	1.35	0.11	0.02	0.00	1.23	0.00
포천.소흘	3.18	0.38	0.04	0.01	2.74	0.00
포천.관인	1.70	0.35	0.03	0.00	1.32	0.00
포천.영북	2.81	0.57	0.06	0.00	2.18	0.00
포천.이동	3.78	0.33	0.04	0.00	3.41	0.00
포천.일동	1.95	0.47	0.05	0.00	1.43	0.00
포천.영중	4.07	0.37	0.02	0.18	3.51	0.00
포천.가산	1.55	0.37	0.04	0.08	1.07	0.00
포천.내촌	4.20	0.41	0.02	0.00	3.76	0.00
포천.포천	11.46	1.48	0.16	0.03	9.79	0.00
광주.곤지암	9.00	0.43	0.02	0.00	2.06	6.49
광주.경안	27.90	6.81	0.29	0.17	20.63	0.00
광주.퇴촌남종	135.36	0.41	0.01	0.00	134.09	0.85
안성.안성	20.06	2.75	0.30	1.38	15.62	0.00
안성.죽산	3.05	0.40	0.02	0.00	2.62	0.00
안성.원곡	2.62	0.23	0.02	0.10	2.27	0.00
안성.양성	2.11	0.16	0.02	0.00	1.93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하남	87.82	2.19	0.22	0.00	85.41	0.00
의왕	53.96	3.38	0.21	1.20	49.17	0.00
양주.회천	2.85	1.12	0.00	0.00	0.00	0.00
양주.광적	3.97	0.50	0.03	0.05	4.94	0.00
양주.남면	5.40	0.38	0.03	0.05	4.94	0.00
양주.백석	3.05	0.47	0.00	0.00	2.58	0.00
오산	42.76	4.47	0.71	1.23	22.25	14.08
여주.북내	1.49	0.15	0.01	0.00	1.33	0.00
여주.대신	2.60	0.28	0.02	0.02	2.28	0.00
여주.능서	1.48	0.15	0.01	0.00	1.32	0.00
여주.가남	2.65	0.23	0.02	0.10	2.30	0.00
여주.여주	14.72	1.67	0.16	0.58	12.31	0.00
양평.청운	6.92	0.32	0.03	0.01	6.55	0.00
양평.양서	26.46	0.46	0.02	0.00	25.98	0.00
양평.양평	6.37	0.98	0.12	0.07	5.20	0.00
양평.개군	1.56	0.19	0.02	0.00	1.35	0.00
양평.용문	4.26	0.67	0.08	0.00	3.52	0.00
양평.지제	1.60	0.25	0.02	0.00	1.33	0.00
양평.양동	1.91	0.16	0.01	0.00	1.73	0.00
동두천	30.66	4.96	1.19	0.37	24.14	0.00
과천	35.81	2.55	0.16	0.00	33.10	0.00
가평.가평	11.86	1.93	0.19	0.00	9.74	0.00
가평.현리	6.65	0.58	0.07	0.00	6.01	0.00
가평.설악	13.35	0.47	0.04	0.00	12.84	0.00
가평.목동	2.62	0.21	0.02	0.00	2.38	0.00
가평.청평	49.36	1.37	0.14	0.00	47.85	0.00
연천.군남	3.48	0.25	0.02	0.00	3.20	0.00
연천.전국	8.51	1.32	0.26	0.10	6.82	0.00
연천.연천	9.07	0.89	0.10	0.06	8.02	0.00
연천.신서	7.97	0.54	0.06	0.00	7.37	0.00
강원도	970.05	115.39	14.75	24.29	776.68	38.94
강릉.강릉	56.95	10.04	1.26	0.88	43.81	0.96
강릉.주문진	13.30	3.92	0.26	0.40	8.19	0.53
강릉.옥계	6.61	0.59	0.11	0.49	5.03	0.39
동해.동해	121.73	12.71	1.56	9.24	82.87	15.35
삼척.임원	1.85	0.23	0.06	0.05	1.51	0.00
삼척.호산	1.46	0.38	0.05	0.00	1.02	0.00
삼척.도계	8.03	1.40	0.17	0.37	6.08	0.00
삼척.근덕	8.09	0.65	0.07	0.03	6.90	0.44
삼척.삼척	49.48	5.79	0.55	2.71	39.40	1.04
속초.속초	30.81	5.03	1.88	0.66	17.71	5.53
원주.소초	1.44	0.24	0.04	0.19	0.97	0.00
원주.흥업	12.08	1.06	0.05	0.00	10.97	0.00
원주.귀래	4.45	0.28	0.03	0.05	4.09	0.00
원주.문막	7.79	0.90	0.10	1.12	2.21	3.47
원주.원주	52.36	13.34	1.31	1.94	27.19	8.59
춘천	332.22	19.97	1.42	1.45	309.36	0.00
태백	66.63	6.66	0.93	2.02	57.02	0.00
고성.거진	4.57	0.88	0.19	0.13	3.22	0.15
고성.간성	2.80	0.50	0.08	0.00	2.21	0.00
양구.양구	3.71	1.14	0.16	0.06	2.34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양양.물치	1.89	0.44	0.04	0.02	1.23	0.16
양양.인구	2.45	0.36	0.05	0.00	1.93	0.11
양양.양양	6.44	1.50	0.18	0.00	4.76	0.00
영월.주천	3.25	0.44	0.05	0.00	2.76	0.00
영월.쌍용	2.67	0.37	0.03	0.28	1.98	0.00
영월.상동	4.29	0.22	0.03	0.00	4.04	0.00
영월.영월	16.17	2.12	0.44	0.48	13.13	0.00
인제.인제	3.04	1.05	0.19	0.04	1.76	0.00
인제.기린	2.58	0.52	0.07	0.00	1.98	0.00
인제.서화	2.71	0.55	0.06	0.00	2.10	0.00
인제.신남	1.43	0.24	0.05	0.00	1.15	0.00
인제.원통	2.40	0.63	0.11	0.05	1.62	0.00
정선.고한	11.44	1.48	0.39	0.03	9.53	0.00
정선.신동	10.33	1.15	0.16	0.19	8.82	0.00
정선.여량	1.16	0.25	0.05	0.01	0.85	0.00
정선.북평	3.70	0.56	0.07	0.11	2.95	0.00
정선.임계	4.07	0.25	0.05	0.03	3.74	0.00
정선.증산	2.40	0.30	0.10	0.17	1.84	0.00
정선.정선	9.09	1.17	0.19	0.32	7.41	0.00
철원.육단	2.22	0.00	0.00	0.00	0.00	2.22
철원.문혜	1.27	0.47	0.05	0.00	0.74	0.00
철원.신수	2.27	0.30	0.03	0.00	1.94	0.00
철원.김화	7.39	1.00	0.18	0.00	6.21	0.00
철원.갈말	6.45	1.08	0.15	0.00	5.22	0.00
철원.철원	6.45	2.19	0.26	0.00	3.99	0.00
평창.횡계	3.79	0.95	0.13	0.00	2.70	0.00
평창.평창	2.34	0.57	0.00	0.00	0.00	0.00
평창.봉평	1.86	0.37	0.07	0.00	1.43	0.00
평창.대화	3.30	0.69	0.16	0.00	2.29	0.00
평창.진부	3.47	1.03	0.16	0.00	2.29	0.00
홍천.홍천	24.51	2.82	0.31	0.23	21.16	0.00
홍천.양덕원	3.24	0.30	0.04	0.05	2.85	0.00
홍천.서석	2.00	0.29	0.03	0.03	1.65	0.00
화천.산양	1.94	0.31	0.04	0.00	1.59	0.00
화천.오음	1.70	0.17	0.03	0.00	1.50	0.00
화천.사내	2.44	0.40	0.05	0.03	1.97	0.00
화천.화천	6.52	0.76	0.14	0.00	5.62	0.00
횡성.둔내	1.09	0.28	0.07	0.04	0.70	0.00
횡성.우항	2.39	0.44	0.06	0.22	1.68	0.00
횡성.횡성	5.58	1.63	0.24	0.20	3.51	0.00
충청북도	654.59	67.10	8.88	20.66	557.43	0.52
단양.단양	18.50	1.59	0.31	0.06	16.53	0.00
청주.청주	274.31	23.51	2.47	6.39	241.93	0.00
충주.신니	3.02	0.26	0.03	0.15	2.58	0.00
충주.양성	3.44	0.27	0.11	0.00	3.06	0.00
충주.엄정	5.09	0.50	0.12	0.00	4.46	0.00
충주.산척	3.13	0.38	0.03	0.00	2.72	0.00
충주.수안보	3.63	0.28	0.37	0.00	2.98	0.00
충주.충주	71.87	9.60	1.50	3.88	56.89	0.00
충주.주덕	4.51	0.66	0.08	0.06	3.71	0.00
제천.봉양	4.68	0.30	0.03	0.16	4.20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제천.수산	1.57	0.15	0.02	0.00	1.40	0.00
제천.제천	50.03	5.53	0.87	2.20	41.42	0.00
청원.내수	2.86	0.51	0.07	0.20	2.09	0.00
청원.옥산	2.02	0.32	0.04	0.00	1.67	0.00
청원.부용	1.82	0.61	0.09	0.32	0.80	0.00
청원.강내	4.76	0.45	0.04	0.00	4.26	0.00
청원.오창	1.50	0.39	0.04	0.00	1.07	0.00
청원.현도	27.40	0.30	0.03	0.00	27.07	0.00
청원.미원	1.27	0.47	0.06	0.00	0.74	0.00
보은.회북	2.19	0.36	0.06	0.00	1.78	0.00
보은.삼승	1.43	0.28	0.03	0.00	1.11	0.00
보은.마로	1.25	0.38	0.03	0.00	0.85	0.00
보은.내속	2.18	0.35	0.19	0.00	1.64	0.00
보은.보은	6.23	1.61	0.18	0.07	4.37	0.00
옥천.옥천	15.33	2.66	0.24	1.38	11.05	0.00
옥천.군서	22.10	0.00	0.00	0.00	22.10	0.00
옥천.군북	7.60	0.00	0.00	0.00	7.60	0.00
옥천.청산	4.28	0.57	0.10	0.00	3.62	0.00
옥천.이원	5.05	0.56	0.05	0.37	4.07	0.00
영동.영동	13.77	1.90	0.19	0.31	11.37	0.00
영동.추풍령	2.84	0.27	0.03	0.00	2.54	0.00
영동.황간	7.88	0.91	0.09	0.61	6.27	0.00
영동.용산	5.20	0.53	0.05	0.00	4.62	0.00
진천.광혜원	2.69	0.68	0.13	0.55	1.32	0.00
진천.이월	1.54	0.36	0.04	0.16	0.98	0.00
진천.덕산	2.98	0.55	0.07	0.00	2.36	0.00
진천.진천	9.88	1.45	0.24	0.14	8.05	0.00
괴산.청전	2.85	0.28	0.05	0.00	2.52	0.00
괴산.연풍	2.53	0.38	0.03	0.00	2.12	0.00
괴산.괴산	3.92	0.76	0.10	0.05	3.02	0.00
음성.금왕	6.09	0.89	0.14	0.61	4.45	0.00
음성.감곡	2.40	0.31	0.02	0.00	2.07	0.00
음성.음성	7.50	1.83	0.24	0.26	5.17	0.00
단양.매포	16.70	0.79	0.08	1.96	13.87	0.00
증평	12.78	2.34	0.21	0.78	8.93	0.52
충청남도	770.75	95.10	10.99	46.79	563.96	53.91
공주	38.85	4.51	0.45	0.49	33.40	0.00
공주.유구	2.60	0.90	0.09	0.18	1.43	0.00
논산	25.50	3.63	0.34	0.13	21.40	0.00
논산.연산	4.00	0.44	0.02	0.00	3.53	0.00
논산.강경	4.80	1.77	0.16	0.08	2.79	0.00
논산.연무	14.00	1.25	0.16	0.15	12.44	0.00
보령	19.40	3.98	0.58	0.24	14.60	0.00
보령.웅천	5.21	0.72	0.03	0.29	4.17	0.00
서산.해미	2.68	0.57	0.05	0.03	2.03	0.00
서산	37.09	6.09	0.52	0.94	29.55	0.00
서산.운산	1.87	0.32	0.03	0.00	1.52	0.00
서산.대산	151.57	4.64	0.38	16.24	76.41	53.91
아산.아산	27.28	4.68	1.02	0.44	21.13	0.00
아산.둔포	1.18	0.38	0.07	0.15	0.58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아산.도고	3.63	0.51	0.00	0.00	0.00	0.00
아산.배방	7.60	1.63	2.28	8.08	102.37	0.00
천안	133.00	20.26	2.28	8.08	102.37	0.00
천안.병천	1.34	0.26	0.05	0.00	1.04	0.00
천안.목천	1.26	0.36	0.05	0.00	0.85	0.00
계룡	53.61	3.04	0.30	0.22	50.06	0.00
금산.금산	13.79	2.96	0.32	0.13	10.38	0.00
금산.진산	1.29	0.17	0.02	0.00	1.10	0.00
금산.추부	2.79	0.62	0.04	0.00	2.13	0.00
당진.신평	5.20	0.84	0.04	0.00	4.32	0.00
당진.당진	13.53	3.10	0.18	0.21	10.04	0.00
당진.합덕	7.00	1.01	0.13	0.04	5.82	0.00
당진.면천	2.93	0.27	0.02	0.00	2.64	0.00
당진.송악	7.08	0.95	0.03	4.99	1.11	0.00
부여.홍산	2.81	0.41	0.04	0.00	2.36	0.00
부여.은산	1.65	0.29	0.02	0.00	1.33	0.00
부여.부여	39.75	2.46	0.47	0.29	36.53	0.00
서천.서천	3.20	1.24	0.09	0.12	1.75	0.00
서천.장항	25.22	3.55	1.12	11.48	9.07	0.00
서천.비인	2.41	0.27	0.01	0.00	2.13	0.00
서천.판교	0.86	0.14	0.03	0.00	0.70	0.00
서천.한산	1.57	0.31	0.03	0.00	1.23	0.00
연기.전의	1.27	0.34	0.03	0.00	0.90	0.00
연기.금남	1.48	0.33	0.03	0.00	1.12	0.00
연기.조치원	19.37	3.06	0.22	0.39	15.69	0.00
예산.예산	22.33	2.82	0.25	0.49	18.78	0.00
예산.덕산	2.85	0.40	0.06	0.00	2.39	0.00
예산.삼교	5.65	0.77	0.09	0.04	4.74	0.00
청양.정산	2.37	0.28	0.02	0.32	1.75	0.00
청양.청양	3.45	0.93	0.07	0.00	2.45	0.00
태안.안면	2.22	0.31	0.03	0.00	1.88	0.00
태안.태안	13.57	2.49	0.12	0.09	10.86	0.00
홍성.광천	9.40	1.55	0.16	0.09	7.60	0.00
홍성.홍성	15.58	2.84	0.26	0.12	12.37	0.00
홍성.갈산	1.73	0.21	0.02	0.00	1.50	0.00
홍성.결성	1.93	0.25	0.02	0.00	1.67	0.00
전라북도	876.07	112.36	14.71	48.76	617.57	82.67
전주	313.20	31.48	4.20	6.29	271.23	0.00
군산	200.79	15.63	3.01	27.40	78.13	76.62
군산.대야	5.61	1.53	0.16	0.11	3.82	0.00
군산.임피	1.08	0.34	0.04	0.00	0.70	0.00
익산	51.96	13.75	1.37	5.30	31.54	0.00
익산.함열	6.28	1.07	0.11	0.14	4.96	0.00
익산.춘포	1.51	0.43	0.04	0.00	1.04	0.00
익산.여산	1.97	0.45	0.04	0.00	1.48	0.00
익산.용안	3.17	0.56	0.04	0.00	2.57	0.00
익산.황등	4.25	0.69	0.09	0.42	3.05	0.00
정읍.칠보	2.92	0.54	0.03	0.00	2.34	0.00
정읍.입암	2.13	0.36	0.02	0.07	1.69	0.00
정읍.신태인	12.58	1.97	0.26	0.30	10.05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정읍.태인	2.78	0.79	0.05	0.12	1.81	0.00
정읍	25.24	6.05	0.88	1.00	17.31	0.00
남원.운봉	1.66	0.51	0.09	0.00	1.06	0.00
남원.인월	2.34	0.49	0.08	0.00	1.77	0.00
남원	25.87	5.41	0.81	0.42	19.23	0.00
김제.죽산	1.01	0.38	0.03	0.00	0.60	0.00
김제금산	2.08	0.51	0.04	0.12	1.41	0.00
김제.금구	7.20	0.62	0.07	0.00	6.51	0.00
김제	17.60	5.80	0.67	0.00	11.14	0.00
완주.고산	1.49	0.40	0.04	0.00	1.04	0.00
완주.봉동	27.64	1.73	0.18	5.58	20.15	0.00
완주.삼례	24.66	1.84	0.32	0.00	22.50	0.00
진안.진안	5.45	0.87	0.14	0.04	4.40	0.00
무주.안성	2.35	0.36	0.05	0.00	1.94	0.00
무주.무주	7.97	1.03	0.16	0.08	6.71	0.00
무주.설천	1.07	0.33	0.05	0.00	0.69	0.00
무주.무풍	0.95	0.20	0.02	0.00	0.73	0.00
장수.장수	2.96	0.57	0.12	0.03	2.24	0.00
장수.장계	2.52	0.64	0.07	0.04	1.77	0.00
임실.오수	6.38	0.77	0.14	0.37	5.10	0.00
임실.관촌	2.27	0.58	0.03	0.00	1.66	0.00
임실.임실	9.02	0.83	0.12	0.02	8.04	0.00
순창.순창	10.11	0.86	0.13	0.00	9.13	0.00
고창.공음	1.87	0.27	0.02	0.04	1.55	0.00
고창.대산	2.13	0.52	0.04	0.10	1.47	0.00
고창.무장	2.09	0.33	0.00	0.00	0.00	0.00
고창.부안	1.99	0.35	0.21	0.22	12.19	0.00
고창.고창	14.63	2.01	0.21	0.22	12.19	0.00
고창.성송	3.98	0.33	0.04	0.08	3.54	0.00
고창.흥덕	2.91	0.57	0.07	0.09	2.18	0.00
고창.해리	2.18	0.37	0.07	0.03	1.71	0.00
부안.줄포	4.44	0.77	0.06	0.09	3.52	0.00
부안.상서	2.84	0.60	0.02	0.00	2.22	0.00
부안.백산	5.41	0.77	0.04	0.00	4.60	0.00
부안.동진	3.01	0.46	0.03	0.00	2.52	0.00
부안.돈지	3.10	0.55	0.01	0.00	2.54	0.00
부안.계화	2.55	0.43	0.02	0.00	2.10	0.00
부안.부안	18.34	1.97	0.28	0.20	9.84	6.05
부안.창북	6.54	1.69	0.07	0.06	4.73	0.00
전라남도	1,309.84	142.09	18.76	130.20	908.20	110.59
목포	77.40	12.24	2.04	6.67	31.18	25.27
여천	280.88	14.34	0.92	47.70	175.02	42.90
여수	63.56	12.09	1.68	3.81	40.85	5.12
순천.순천	169.73	14.91	2.61	3.18	149.03	0.00
순천.승주	4.98	1.81	0.12	0.00	3.06	0.00
순천.낙안	11.24	0.67	0.05	0.00	10.52	0.00
순천.주암	10.30	1.35	0.06	0.00	8.89	0.00
순천.황전	3.10	0.29	0.04	0.00	2.77	0.00
나주.다시	2.18	0.42	0.03	0.27	1.47	0.00
나주.봉황	1.08	0.31	0.02	0.00	0.75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나주.공산	2.03	0.46	0.02	0.00	1.55	0.00
나주.나주	45.24	6.95	0.76	1.53	36.01	0.00
나주.남평	1.76	0.70	0.06	0.00	1.00	0.00
광양.광양	175.35	17.32	1.80	46.42	84.81	25.00
담양.창평	0.75	0.27	0.03	0.00	0.46	0.00
담양.담양	13.15	1.76	0.23	0.33	10.83	0.00
곡성.옥과	2.42	0.51	0.03	0.00	1.88	0.00
곡성.석곡	1.87	0.30	0.02	0.00	1.54	0.00
곡성.곡성	10.86	1.47	0.22	0.23	8.94	0.00
구례.구례	7.99	1.70	0.29	0.16	5.84	0.00
구례.마산	2.89	0.55	0.05	0.00	2.29	0.00
고흥.고흥	11.00	1.32	0.19	0.11	9.38	0.00
고흥.도양	9.56	1.28	0.22	0.04	7.20	0.81
고흥.풍양	2.94	0.18	0.04	0.00	2.73	0.00
고흥.포두	2.74	0.61	0.03	0.00	2.10	0.00
고흥.과역	2.00	0.29	0.02	0.00	1.69	0.00
보성.조성	3.62	0.32	0.08	0.00	3.23	0.00
보성.벌교	13.62	1.19	0.23	0.08	12.12	0.00
보성.보성	5.12	1.10	0.21	0.00	3.81	0.00
화순.남	5.20	0.43	0.04	0.00	4.73	0.00
화순.화순	29.94	2.63	0.36	0.87	26.08	0.00
화순.능주	2.33	0.53	0.05	0.17	1.57	0.00
화순.이양	2.76	0.21	0.05	0.11	2.39	0.00
화순.동북	2.63	0.30	0.02	0.00	2.31	0.00
화순.춘양	2.96	0.25	0.03	0.00	2.68	0.00
장흥.관산	2.28	0.45	0.04	0.00	1.79	0.00
장흥.장흥	30.76	1.86	0.36	0.23	28.31	0.00
장흥.대덕	3.30	0.85	0.06	0.00	2.39	0.00
강진.마량	4.47	0.92	0.12	0.05	2.33	1.06
강진.병영	4.77	0.55	0.04	0.00	4.19	0.00
강진.작천	2.55	0.26	0.01	0.00	2.28	0.00
강진.도암	2.70	0.18	0.04	0.03	2.45	0.00
강진.성전	2.44	0.45	0.06	0.00	1.93	0.00
강진.강진	14.70	2.47	0.43	0.55	11.25	0.00
해남.송지	1.56	0.27	0.03	0.00	1.25	0.00
해남.문내	4.00	0.39	0.04	0.00	3.57	0.00
해남.황산	5.30	0.29	0.03	0.00	4.98	0.00
해남.북평	1.65	0.29	0.02	0.05	1.28	0.00
해남.해남	11.36	2.73	0.27	0.19	8.17	0.00
해남.화산	3.01	0.27	0.03	0.00	2.71	0.00
영암.서영암	24.76	3.00	0.51	10.51	6.66	4.09
영암.학산	3.47	0.32	0.08	0.00	3.07	0.00
영암.신북	2.20	0.63	0.09	0.03	1.45	0.00
영암.영암	12.14	2.03	0.16	0.22	9.73	0.00
무안.망운	3.43	0.47	0.09	0.00	2.87	0.00
무안.청계	6.93	0.77	0.09	0.00	6.07	0.00
무안.무안	8.75	1.97	0.14	0.00	6.63	0.00
무안.남악	5.79	1.28	0.54	0.01	1.24	2.73
무안.일로	2.66	0.89	0.05	0.00	1.72	0.00
무안.해제	1.74	0.31	0.03	0.00	1.40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함평.월야	3.01	0.38	0.00	0.00	0.00	0.00
함평.해보	4.44	0.62	0.03	0.00	2.70	0.00
함평.나산	3.15	0.41	0.03	0.00	2.70	0.00
함평.함평	9.56	1.13	0.14	0.23	7.61	0.45
함평.학교	4.94	0.75	0.04	0.05	4.10	0.00
영광.백수	5.27	0.40	0.04	0.00	4.83	0.00
영광.영광	16.38	2.25	0.51	0.41	12.72	0.50
영광.범성	4.41	0.59	0.13	0.07	3.62	0.00
영광.홍농	18.11	1.06	0.06	3.50	13.49	0.00
장성.북하	1.50	0.30	0.01	0.00	1.18	0.00
장성.북이	1.55	0.25	0.03	0.00	1.27	0.00
장성.삼계	4.07	1.64	0.28	0.00	2.15	0.00
장성.장성	29.42	2.03	0.40	1.39	25.61	0.00
완도.군외	1.81	0.18	0.03	0.00	1.59	0.00
완도.노화	3.01	0.39	0.06	0.02	2.55	0.00
완도.금일	3.59	0.47	0.03	0.04	3.04	0.00
완도.완도	17.32	1.57	0.49	0.46	12.14	2.67
진도.진도	7.93	1.16	0.13	0.14	6.50	0.00
진도.고군	6.36	0.47	0.03	0.12	5.74	0.00
진도.의신	2.48	0.28	0.03	0.00	2.17	0.00
진도.지산	2.31	0.30	0.03	0.00	1.98	0.00
진도.임회	2.35	0.16	0.02	0.01	2.15	0.00
진도.녹진	1.25	0.13	0.08	0.00	1.04	0.00
신안.지도	3.72	0.20	0.06	0.05	3.41	0.00
경상북도	1,738.38	171.33	23.43	84.64	1,328.46	130.51
경산.대구	20.33	0.00	0.00	0.00	20.33	0.00
포항.포항	382.39	35.45	4.86	25.51	218.37	98.20
경주.외동	25.77	1.45	0.07	3.97	20.28	0.00
경주.안강	34.19	2.73	0.23	7.96	23.28	0.00
경주.양북	2.10	0.24	0.04	0.00	1.83	0.00
경주.건천	5.32	1.04	0.13	0.02	4.15	0.00
경주.감포	11.69	1.32	0.11	0.18	9.43	0.65
경주.산내	1.03	0.20	0.02	0.00	0.82	0.00
경주.강동	3.27	0.43	0.04	0.00	2.80	0.00
경주.서	1.48	0.41	0.04	0.19	0.85	0.00
경주.양남	8.65	0.83	0.07	3.85	3.67	0.22
경주.경주	311.33	11.43	1.85	1.36	296.69	0.00
김천.대항	2.90	0.29	0.05	0.02	2.54	0.00
김천.구미	8.43	0.00	0.00	0.00	8.43	0.00
김천.아포	3.55	1.67	0.17	0.00	1.71	0.00
김천.지례	3.40	0.28	0.03	0.00	3.09	0.00
김천.김천	38.17	8.60	1.10	2.85	25.62	0.00
안동.임동	3.00	0.23	0.03	0.02	2.72	0.00
안동.풍산	5.45	0.67	0.15	0.04	4.59	0.00
안동.일직	1.43	0.27	0.01	0.00	1.14	0.00
안동.예안	3.83	0.31	0.06	0.02	3.44	0.00
안동.북후	2.00	0.32	0.03	0.04	1.61	0.00
안동.길안	3.70	0.41	0.04	0.03	3.22	0.00
안동.안동	51.23	9.87	1.27	0.97	39.13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구미.구미	181.31	12.32	1.98	15.32	128.17	23.52
구미.선산	6.96	1.57	0.16	0.04	4.71	0.47
구미.고아	7.17	1.03	0.12	0.21	2.10	3.71
영주.부석	4.28	0.26	0.05	0.00	3.96	0.00
영주.순흥	1.98	0.26	0.04	0.00	1.69	0.00
영주.영주	30.00	5.68	0.94	1.82	21.56	0.00
영주.풍기	13.10	1.82	0.34	0.45	10.49	0.00
영천.신녕	4.29	0.81	0.12	0.06	3.30	0.00
영천.영천	48.72	7.02	0.78	3.34	37.57	0.00
상주.상주	35.07	4.56	0.86	0.41	29.24	0.00
상주.화서	1.05	0.23	0.03	0.02	0.77	0.00
상주.청리	1.88	0.44	0.03	0.02	1.39	0.00
상주.함창	4.02	1.38	0.15	0.14	2.35	0.00
상주.공성	1.43	0.57	0.03	0.01	0.82	0.00
문경.점촌	21.79	4.58	0.79	1.59	14.84	0.00
문경.문경	7.30	1.21	0.37	0.07	5.65	0.00
문경.가은	7.21	0.65	0.07	0.30	6.20	0.00
경산.경산	40.08	7.62	1.13	1.03	30.29	0.00
경산.진량	6.67	0.72	0.08	2.38	3.48	0.00
경산.하양	18.33	2.58	0.27	0.20	15.29	0.00
경산.자인	2.58	0.94	0.05	0.44	1.15	0.00
군위.군위	7.25	0.96	0.13	0.00	6.15	0.00
의성.안계	8.80	1.37	0.12	0.18	7.13	0.00
의성.봉양	1.78	0.24	0.07	0.17	1.30	0.00
의성.금성	6.60	0.53	0.07	0.20	5.80	0.00
의성.의성	15.40	1.67	0.27	0.35	13.11	0.00
청송.진보	4.45	0.82	0.00	0.00	0.00	0.00
청송.청송	1.76	0.53	0.06	0.02	2.40	0.00
영양.입암	2.75	0.27	0.06	0.02	2.40	0.00
영양.수비	1.45	0.36	0.02	0.00	1.07	0.00
영양.영양	7.25	0.67	0.20	0.05	6.33	0.00
영덕.영덕	2.97	1.07	0.11	0.02	1.77	0.00
영덕.영해	4.60	0.85	0.13	0.06	3.56	0.00
영덕.축산	1.00	0.36	0.03	0.05	0.46	0.10
영덕.강구	7.10	0.87	0.38	0.19	5.02	0.63
청도.풍각	2.46	0.32	0.03	0.01	2.10	0.00
청도.청도	18.69	1.83	0.28	0.19	16.39	0.00
고령.대구	21.54	1.04	0.00	0.00	20.50	0.00
고령.고령	7.38	1.44	0.14	0.21	5.58	0.00
성주.성주	3.70	1.24	0.12	0.02	2.32	0.00
성주.가천	3.00	0.31	0.03	0.01	2.65	0.00
성주.초전	2.00	0.21	0.04	0.02	1.73	0.00
칠곡.왜관	27.91	2.93	0.37	2.65	21.96	0.00
칠곡.구미	44.48	3.82	0.18	1.00	39.49	0.00
칠곡.약목	5.49	0.73	0.05	0.86	3.85	0.00
칠곡.대구	73.21	1.14	0.03	0.00	72.04	0.00
예천.용궁	1.51	0.36	0.05	0.03	1.07	0.00
예천.예천	9.54	2.51	0.36	0.29	6.38	0.00
예천.감천	1.36	0.37	0.03	0.00	0.97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봉화.춘양	2.85	0.65	0.07	0.04	2.09	0.00
봉화.봉화	6.45	1.09	0.14	0.06	5.17	0.00
울진.후포	6.35	1.06	0.15	0.30	4.02	0.82
울진.죽변	3.75	0.77	0.09	0.12	0.84	1.93
울진.온정	1.74	0.18	0.19	0.00	1.37	0.00
울진.근남	7.57	0.51	0.09	0.01	6.96	0.00
울진.북면	6.73	0.76	0.05	2.31	3.61	0.00
울진.평해	11.40	0.77	0.08	0.04	10.51	0.00
울진.울진	8.48	1.59	0.18	0.15	6.56	0.00
울릉.울릉	7.81	0.50	0.07	0.09	6.90	0.26
경상남도	1,825.74	167.58	23.97	75.97	1,500.07	58.15
창원	236.30	17.57	2.96	21.35	176.36	18.06
마산.마산	148.84	14.02	3.95	4.23	115.42	11.21
마산.진동	27.99	1.80	0.09	0.96	25.14	0.00
진주.진주	275.04	13.27	2.30	3.84	255.63	0.00
진주.일반성	3.37	0.49	0.06	0.00	2.82	0.00
진주.지수	2.32	0.25	0.02	0.00	2.06	0.00
진해	125.88	10.03	1.74	7.71	96.80	9.60
통영	56.45	9.64	1.19	2.57	39.91	3.14
사천.사천	6.38	1.55	0.24	0.11	4.47	0.00
사천.삼천포	63.41	4.51	0.91	4.78	51.11	2.10
사천.곤양	6.57	0.44	0.03	0.09	6.02	0.00
김해.김해	121.98	12.95	1.31	2.46	105.26	0.00
김해.진례	4.50	1.04	0.10	0.00	3.36	0.00
김해.주촌	30.71	2.79	0.00	1.40	26.52	0.00
김해.장유	29.05	4.42	1.60	1.77	21.26	0.00
김해.진영	30.21	2.78	0.25	1.59	25.58	0.00
밀양.삼랑진	11.60	1.04	0.09	0.57	9.90	0.00
밀양.하남	8.80	0.88	0.06	0.21	7.65	0.00
밀양.무안	2.20	0.39	0.05	0.00	1.76	0.00
밀양.밀양	34.86	6.31	0.65	0.55	27.25	0.10
거제.장승포	65.50	6.05	1.03	4.61	44.43	9.39
거제.신현	28.09	4.13	0.48	3.27	15.66	4.55
거제.거제	1.08	0.45	0.03	0.00	0.60	0.00
양산	302.46	22.74	1.99	11.57	266.17	0.00
의령.의령	11.65	1.22	0.14	0.36	9.93	0.00
의령.부림	3.90	0.67	0.08	0.53	2.62	0.00
함안.대산	1.54	0.38	0.03	0.00	1.13	0.00
함안.칠서	2.56	0.63	0.03	0.00	1.91	0.00
함안.칠원	0.74	0.42	0.03	0.03	0.26	0.00
함안.군북	8.23	0.61	0.06	0.10	7.46	0.00
함안.가야함안	9.69	1.62	0.18	0.06	7.83	0.00
창녕.창녕	12.81	2.00	0.13	0.13	10.55	0.00
창녕.남지	9.90	1.61	0.12	0.08	8.09	0.00
창녕.고압	2.02	0.30	0.03	0.00	1.69	0.00
창녕.영산	13.63	1.08	0.09	0.34	12.13	0.00
창녕.부곡	9.42	0.34	0.25	0.00	8.83	0.00
고성.고성	14.28	2.19	0.15	0.12	11.82	0.00
고성.배둔	0.71	0.30	0.03	0.00	0.38	0.00
남해.남해	11.95	1.17	0.16	0.00	10.62	0.00



도시명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하동.진교	1.47	0.41	0.06	0.00	1.01	0.00
하동.하동	5.72	1.16	0.15	0.00	4.41	0.00
산청.산청	3.90	0.79	0.00	0.00	0.00	0.00
산청.시천	2.30	0.32	0.06	0.00	1.73	0.00
산청.신안단성	2.48	0.70	0.06	0.00	1.73	0.00
함양.함양	13.93	1.52	0.25	0.16	12.01	0.00
함양.서상	1.27	0.26	0.02	0.00	0.99	0.00
함양.안의	3.38	0.54	0.03	0.00	2.81	0.00
거창.거창	27.49	3.78	0.31	0.38	23.02	0.00
거창.웅양	2.77	0.31	0.01	0.00	2.45	0.00
거창.가조	0.89	0.51	0.02	0.00	0.36	0.00
합천.합천	7.07	1.27	0.12	0.00	5.68	0.00
합천.아로	3.09	0.44	0.03	0.00	2.62	0.00
합천.삼가	3.30	0.63	0.05	0.00	2.61	0.00
합천.묘산	2.32	0.18	0.02	0.00	2.12	0.00
합천.초계	2.67	0.46	0.06	0.00	2.15	0.00
합천.가야	5.10	0.26	0.03	0.05	4.75	0.00
제주도	405.75	42.73	5.62	3.77	338.29	15.34
서귀포	106.28	10.81	1.17	0.40	92.19	1.70
제주	133.07	12.87	3.06	1.45	110.41	5.29
남제주.표선	6.07	1.10	0.09	0.05	4.60	0.23
남제주.성산	27.48	2.40	0.17	0.33	23.42	1.16
남제주.안덕	8.67	0.98	0.07	0.61	5.28	1.72
남제주.대정	25.09	2.86	0.28	0.24	21.09	0.61
남제주.남원	10.68	2.24	0.11	0.17	7.58	0.58
북제주.애월	12.26	2.24	0.04	0.06	9.51	0.40
북제주.한경	10.90	1.01	0.04	0.00	9.84	0.00
북제주.조천	11.23	1.49	0.20	0.02	9.45	0.08
북제주.구좌	17.91	2.13	0.10	0.08	14.75	0.86
북제주.한림	36.12	2.60	0.28	0.36	30.17	2.70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청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